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결산 개요	1
1. 세입·세출 결산	1
2. 총수입·총지출 결산	3
(1) 일반회계	3
가. 총수입	3
나. 총지출	4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
가. 총수입	9
나. 총지출	10
3. 예비비 지출	14
4. 재무결산	14
가. 재정상태 분석	14
나. 재정운영 분석	16
다. 순자산변동 분석	17
5. 성인지 결산	19
6.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20
7. 지방교부세 결산	21

Ⅱ. 검토의견	25
【총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분석】	25
1. 개념의 구분	25
2. 2023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28
3. 2023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분석	44
(1) 연례적 이·전용등 실시	44
(2) 이·전용등 실시 후 미집행 과다	51
(3) 연초 이·전용등 실시	56
(4) 이·전용등 번복 실시	57
【세 입】	63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및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63
가. 개 요	63
나.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장기 미수납 개선 필요	65
다.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와 집행잔액·발생이자 반환 간 회계 일치 필요	73
【세 출】	75
【의정관실】	75
1. 국경일 등 정부행사(2131-300)	75
가. 개 요	75
나. 행사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 필요	76
다. 관서운영경비 분할집행을 통한 행사대행 비용 지급 관행 개선 필요	82

【디지털정부혁신실】	89
2. 지식기반의 행정구축(정보화)(1932-505)	89
가. 개 요	89
나. 예산범위 내 사업추진 여부 검토 및 소요비용의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90
다.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 내역을 반영한 산출 근거 제시 필요	96
3. 전자정부지원(정보화)(2031-500)	99
가. 개 요	99
나. 실집행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주의 필요	101
다.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면밀한 검토 필요	109
【조직국】	114
4. 정부조직진단관리(1931-300)	114
가. 개 요	114
나. 민간위탁 방식 연구과제 결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 필요	115
【지방행정국】	123
5. 자원봉사활성화 지원(1141-302)	123
가. 개 요	123
나.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 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필요	124
6.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131
가. 개 요	131
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역을 변경하는 집행 행태(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임의적인 미추진, 미추진 사업 예산을 활용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추진) 주의 필요	134

7. 지방자치분권실(7011-257)	140
가. 개 요	140
나.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예산 집행 및 지급한도 제한 규정을 우회한 분할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141
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2431-304)	144
가. 개 요	144
나.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타당성 재조사 후 예정된 잔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 관리 필요, 타당성 재조 사 미통과 시 사업계획의 보완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속한 조치 필요	145
9.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2433-300)	151
가. 개 요	151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 성과지표 개선 필요	152
【자치분권국】	157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1131-302)	157
가. 개 요	157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집행실적 및 여유재원 운용 현황을 고려한 출연금 분할교부 필요	158
【균형발전지원국】	163
11. 특수상황지역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231-300)	163
가. 개 요	163
나.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을 제고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	164

12. 지역발전활성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231-303)	168
가. 개 요	168
나. 온천산업활성화 : 수입을 수반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170
다. 온천산업활성화 : ‘온천자원관측장비 유지관리’ 위탁사무 관리·감 독 강화 필요	174
13.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938-300)	179
가. 개 요	179
나.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 성과 제고 필요	181
다. ‘지역경제포럼’ 개최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188
14. 마을기업육성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131-301)	193
가. 개 요	193
나.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노력 필요	195
다. 잔여 예산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199
【지방재정경제실】	202
15. 지방재정 정보화(1332-500)	202
가. 개 요	202
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긴급입찰 지양 필요	203
다.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수의계약 요건 준수 필요	206
16.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209
가. 개 요	209

나. 장기간 미집행 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 위탁사업비의 환수 또는 조속한 집행 필요	210
17.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정책추진(1338-300)	212
가. 개 요	212
나.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213
18.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221
가. 개 요	221
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22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229
19.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1131-314)	229
가. 개 요	229
나. 안전검토수당 지급방식 개선 필요	23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36
2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1431-301)	236
가. 개 요	236
나. 리스이자 및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한 리스계약 확대 필요	237
【안전예방정책실】	242
2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	242
가. 개 요	242
나.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및 사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243
다.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247

22. 국민안전의식선진화(2632-301)	251
가. 개 요	251
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 개선 필요	252
23. 재난안전산업활성화(2631-303)	256
가. 개 요	256
나.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안전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57
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사업의 홍보 방안 마련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필요	260
24.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2632-305)	263
가. 개 요	263
나. 다른 사업과 사업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한 문제	264
【자연재난실】	268
25. 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	268
가. 개 요	268
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269
【사회재난실】	272
26.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2735-300)	272
가. 개 요	272
나. 연례적인 용역 입찰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 개선 필요	273
다. 연구용역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76

【비상대비정책국】	279
27.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2634-304)	279
가. 개 요	279
나. 지원민방위대원 확충 방안 마련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280
다.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이월 개선 필요	28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87
28. 재난안전교육원운영(2633-300)	287
가. 개 요	287
나. 세목 조정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	288

I.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기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없음.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686억 7,100만원이나 1,978억 2,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70억 7,000만원이 수납(수납률 74.3%)되었고 507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632억 1,000만원이나 1,819억 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323억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72.7%)되었고 496억원이 미수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4억 6,100만원이나 159억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7억 6,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2.8%)되었고 11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입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63,210	181,902	132,302	49,600	0	7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461	15,919	14,769	1,151	0	92.8
지역자율계정	1,931	11,590	11,444	145	0	98.7
지역지원계정	3,530	4,330	3,324	1,005	0	76.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합 계	68,671	197,821	147,070	50,751	0	74.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액은 80조 4,878억 2,900만원, 예산현액은 80조 6,075억 5,900만원이며, 이 중 72조 3,537억 5,400만원이 지출(집행률 89.8%)되었고 309억 1,700만원이 이월, 8조 2,228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음.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78조 8,432억 6,600만원, 예산현액은 78조 9,629억 3,000만원이며, 이 중 70조 7,118억 9,500만원이 지출(집행률 89.6%)되었고 307억 6,500만원이 이월, 8조 2,202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조 6,445억 6,300만원, 예산현액은 1조 6,446억 3,000만원이며, 이 중 1조 6,418억 5,9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152억원이 이월, 26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회계별·계정별 세출 결산(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78,843,266	78,962,930	70,711,895	30,765	8,220,270	89.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44,563	1,644,630	1,641,859	152	2,619	99.8
지역자율계정	225,653	225,653	225,653	-	-	100.0
지역지원계정	1,402,142	1,402,209	1,399,438	152	2,619	99.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445	11,445	11,445	-	-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5,323	5,323	5,323	-	-	100.0
합 계	80,487,829	80,607,559	72,353,754	30,917	8,222,888	8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총수입·총지출 결산

(1) 일반회계

가. 총수입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632억 1,000만원이나 1,819억 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323억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72.7%)되었고 496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관/항/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재산수입(11)	6,172	18,607	14,459	4,148	-	77.7
관유물대여료(51)	3,432	3,636	2,892	744	-	79.5
토지대여료(511)	521	118	86	31	-	73.4
건물대여료(512)	2,911	3,518	2,805	713	-	79.7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2,740	14,971	11,567	3,404	-	77.3
기타재산이자수입(546)	2,740	14,971	11,567	3,404	-	77.3
경상이전수입(12)	48,332	152,943	107,980	44,963	-	70.6
별금,물수금및과태료(56)	0	450	81	369	-	18.0
물수금및추징금(562)	-	48	-	48	-	-
징계부과금(564)	-	50	-	50	-	-
과징금(565)	-	352	81	270	-	23.01
변상금및위약금(57)	890	1,323	313	1,010	-	23.7
변상금(571)	-	8	-	8	-	-
위약금(572)	890	1,316	313	1,002	-	23.8
가산금(58)	-	3	1	1	-	58.4
가산금(581)	-	3	1	1	-	58.4
기타경상이전수입(59)	47,442	151,167	107,584	43,583	-	71.2
기타경상이전수입(596)	47,442	151,167	107,584	43,583	-	71.2
재화및용역판매수입(13)	949	1,722	1,233	489	-	71.6
면허료및수수료(65)	19	38	38	-	-	100.0
면허료및수수료(651)	19	38	38	-	-	100.0
잡수입(69)	930	1,684	1,195	489	-	71.0
기타잡수입(691)	930	1,684	1,195	489	-	71.0

관/항/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수입대체경비수입(14)	7,757	8,552	8,552	-	-	100.0
잡수입(69)	7,757	8,552	8,552	-	-	100.0
기타잡수입(691)	7,757	8,552	8,552	-	-	100.0
관유물매각대(15)	-	77	77	-	-	100.0
고정자산매각대(71)	-	77	77	-	-	100.0
기계기구매각대(712)	-	76	76	-	-	100.0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3)	-	1	1	-	-	100.0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73)	-	0.2	0.2	-	-	100.0
유동자산매각대(732)	-	0.2	0.2	-	-	100.0
합 계	63,210	181,902	132,302	49,600	-	72.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78조 8,432억 6,600만원, 예산현액은 78조 9,629억 3,000만원이며, 이 중 70조 7,118억 9,500만원이 지출(집행률 89.6%)되었고 307억 6,500만원이 이월, 8조 2,202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78,188,881	78,287,348	70,048,391	27,548	8,211,409	89.5
일반행정	929,647	971,173	931,854	13,941	25,377	96.0
기록물관리	46,533	46,541	45,037	17	1,487	96.8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293,683	297,291	281,192	11,306	4,793	94.6
정부의전	12,774	12,849	12,289	76	485	95.6
청사관리	215,482	223,089	211,837	2,520	8,732	95.0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행정안전행정지원	361,175	391,403	381,500	22	9,881	97.5
정부자원관리	717,461	772,782	748,509	12,729	11,544	96.9
인사관리	239	239	229	0	10	96.0
전자정부	674,835	730,314	708,392	11,567	10,356	97.0
정부혁신조직	42,387	42,228	39,887	1,162	1,179	94.5
지방행정·재정지원	76,541,773	76,543,393	68,368,028	878	8,174,487	89.3
이북5도	2,168	2,131	1,832	234	65	86.0
지방교부세	75,288,266	75,288,266	67,119,414	0	8,168,852	89.1
지방자치분권	55,157	55,226	52,272	519	2,435	94.7
지방자치인재개발	14,295	15,161	14,653	0	507	96.7
지방재정경제	26,201	26,201	24,588	25	1,588	93.8
지역발전	1,155,686	1,156,408	1,155,269	100	1,039	99.9
공공질서및안전	654,385	675,371	663,293	3,217	8,861	98.2
경찰	65,063	65,885	64,514	27	1,344	97.9
과학수사	65,063	65,885	64,514	27	1,344	97.9
재난관리	589,322	609,486	598,779	3,190	7,517	98.2
안전관리	116,778	118,365	116,477	218	1,670	98.4
재난관리	221,985	240,997	239,214	355	1,428	99.3
재난안전기술개발	104,151	104,197	103,142	0	1,056	99.0
재난안전정보화	146,408	145,927	139,947	2,616	3,363	95.9
사회복지	0	211	211	0	0	100.0
취약계층지원	0	211	211	0	0	100.0
일자리지원	0	211	211	0	0	100.0
합 계	78,843,266	78,962,930	70,711,895	30,765	8,220,270	89.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이월·불용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월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91억 1,300만원 중 42억 2,900만원(이월률 46.4%)을 이월하였고,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5억 4,4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이월률 43.0%)을 이월하였으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사업은 예산현액 70억 5,000만원 중 23억 9,000만원(이월률 33.9%)을 이월하였고,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30억 2,000만원 중 5억 1,900만원(이월률 17.2%)을 이월하였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21억 3,500만원 중 68억 8,000만원(이월률 16.3%)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6,920	9,113	4,672	4,229	212	46.4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581	544	272	234	38	43.0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7,961	7,050	4,659	2,390	0.1	33.9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681	3,020	2,449	519	52	17.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4,922	42,135	34,985	6,880	270	16.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4,600만 원을 전액(불용률 100.0%)을 불용하였고,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7,600만원 중 2,800만원(불용률 36.9%)을 불용하였으며,

‘재난협력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1억 9,200만원 중 5,500만원(불용률 28.7%)을 불용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12억 8,500만원 중 3억 5,300만원(불용률 27.4%)을 불용하였으며,

‘지방재정경제실(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800만원 중 6,900만원(불용률 26.7%)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6,140	2,446	-	-	2,446	100.0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총액)	76	76	48	-	28	36.9
재난협력실(총액)	192	192	137	-	55	28.7
자치분권위원회운영	1,616	1,285	932	-	353	27.4
지방재정경제실(총액)	258	258	189	-	69	26.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24억 4,600만원을 전액(미집행률 100.0%)을 미집행하였고,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5억 4,400만원 중 2억 7,200만원(미집행률 49.9%)을 미집행하였으며,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91억 1,300만원 중 44억 4,100만원(미집행률 48.7%)을 미집행하였고,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사업은 예산현액 7,600만원 중 2,800만원(미집행률 36.9%)을 미집행하였으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사업은 예산현액 70억 5,000만원 중 23억 9,000만원(미집행률 33.9%)을 미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6,140	2,446	-	-	2,446	2,446	100.0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581	544	272	234	38	272	49.9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6,920	9,113	4,672	4,229	212	4,441	48.7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총액)	76	76	48	-	28	28	36.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7,961	7,050	4,659	2,390	0.1	2,390	33.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총수입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은 예산액이 54억 6,100만원이나 159억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7억 6,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2.8%)되었고 11억 5,1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계정/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지역자율계정	1,931	11,590	11,444	145	-	98.7
자산수입(11)	21	985	954	31	-	96.8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21	985	954	31	-	96.8
기타재산이자수입(546)	21	985	954	31	-	96.8
경상이전수입(12)	1,910	10,604	10,490	114	-	98.9
기타경상이전수입(59)	1,910	10,604	10,490	114	-	98.9
기타경상이전수입(596)	1,910	10,604	10,490	114	-	98.9
지역지원계정	3,530	4,330	3,324	1,005	-	76.8
자산수입(11)	29	207	147	60	-	70.9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54)	29	207	147	60	-	70.9
기타재산이자수입(546)	29	207	147	60	-	70.9
경상이전수입(12)	3,501	4,123	3,178	945	-	77.1
벌금,몰수금및과태료(56)	-	240	-	240	-	-
과징금(565)	-	240	-	240	-	-
기타경상이전수입(59)	3,501	3,883	3,178	705	-	81.8
기타경상이전수입(596)	3,501	3,883	3,178	705	-	81.8
합 계	5,461	15,919	14,769	1,151	-	92.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총지출

① 총괄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은 예산액이 1조 6,445억 6,300만원, 예산현액은 1조 6,446억 3,000만원이며, 이 중 1조 6,418억 5,900만원이 지출(집행률 99.8%)되었고 1억 5,200만원이 이월, 26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프로그램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지방행정	711,241	711,308	708,871	37	2,400	99.7
정부자원관리	22,231	22,231	22,202	0	29	99.9
정부혁신조직	22,231	22,231	22,202	0	29	99.9
지방행정·재정지원	689,010	689,077	686,669	37	2,371	99.7
지방자치분권	27,271	27,271	27,271	0	0	100.0
지방재정경제	352,500	352,567	352,540	0	27	100.0
지역발전	309,239	309,239	306,858	37	2,344	99.2
공공질서및안전	717,839	717,839	717,701	0	138	100.0
재난관리	717,839	717,839	717,701	0	138	100.0
안전관리	708,579	708,579	708,441	0	138	100.0
재난안전기술개발	9,260	9,260	9,260	0	0	100.0
사회복지	215,483	215,483	215,287	115	81	99.9
취약계층지원	215,483	215,483	215,287	115	81	99.9
일자리지원	215,483	215,483	215,287	115	81	99.9
합계	1,644,563	1,644,630	1,641,859	152	2,619	99.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② 이월·불용

2023회계연도 이월이 있었던 사업은 총 2개 세부사업임.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2,800만원 중 3,700만원 (이월률 0.7%)을 이월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1,993억 5,3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이월률 0.1%)을 이월하였음.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지출 이월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이월률 (B/A)
지역발전활성화 (지역지원계정)	5,226	5,228	5,043	37	148	0.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지원계정)	199,353	199,353	199,167	115	71	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불용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63억 4,000만원 중 14억 9,400만원(불용률 23.6%)을 불용하였고,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2,800만원 중 1억 4,800만원(불용률 2.8%)을 불용하였으며,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16억 1,000만원 중 7억 200만원 (불용률 1.4%)을 불용하였고,

‘마을기업육성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69억 6,500만원 중 1,000만원 (불용률 0.1%)을 불용하였으며,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은 예산현액 222억 3,100만원 중 2,900만원(불용률 0.1%)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이월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지원계정)	6,342	6,340	4,846	0	1,494	23.6
지역발전활성화 (지역지원계정)	5,226	5,228	5,043	37	148	2.8
접경권발전지원 (지역지원계정)	51,610	51,610	50,908	0	702	1.4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지원계정)	6,965	6,965	6,955	0	10	0.1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지역지원계정)	22,231	22,231	22,202	0	29	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마지막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불용액 합계(미집행률)이 큰 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63억 4,000만원 중 14억 9,400만원(미집행률 23.6%)을 미집행하였고,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2억 2,800만원 중 1억 8,500만원 (미집행률 2.8%)을 미집행하였으며,

‘접경권발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16억 1,000만원 중 7억 200만원 (미집행률 1.4%)을 미집행하였고,

‘마을기업육성사업’ 사업은 예산현액 69억 6,500만원 중 1,000만원 (미집행률 0.1%)을 미집행하였으며,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은 예산현액 222억 3,100만원 중 2,900만원(미집행률 0.1%)을 미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지출 미집행률 상위 5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불용액 (C)	미집행액 (D=B+C)	미집행률 (D/A)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지역지원계정)	6,342	6,340	4,846	0	1,494	1,494	23.6
지역발전활성화 (지역지원계정)	5,226	5,228	5,043	37	148	185	3.5
접경권발전지원 (지역지원계정)	51,610	51,610	50,908	0	702	702	1.4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지원계정)	6,965	6,965	6,955	0	10	10	0.1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지역지원계정)	22,231	22,231	22,202	0	29	29	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예비비 지출

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에 예비비를 배정받지 않았음.

4.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2023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자산총액은 12조 1,569억 6,700만원으로, 전기 말 대비 2,871억 9,500만원(2.4%)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일반유형자산의 증가(3,458억 7,000만원), 무형자산의 증가(639억 2,900만원) 등에 있음.

부채총액은 1,54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5억 5,100만원(10.4%)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장기차입부채가 114억 8,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에 따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22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6억 4,400만원(2.3%)이 증가하였음.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자산(a)	12,156,967	11,869,772	287,195	2.4 %
· 유동자산	105,347	229,739	-124,392	-54.1 %
· 투자자산	9,325	8,138	1,187	14.6 %
· 일반유형자산	11,652,109	11,306,239	345,870	3.1 %
· 무형자산	385,119	321,190	63,929	19.9 %
· 기타비유동자산	5,066	4,466	600	13.4 %
II. 부채(b)	154,735	140,184	14,551	10.4 %
· 유동부채	57,050	52,751	4,299	8.1 %
· 장기차입부채	97,685	86,197	11,488	13.3 %
· 장기충당부채	-	1,236	-1,236	-100.0 %
순자산(a-b)	12,002,232	11,729,588	272,644	2.3 %

※ 2023(A) : 2023년 12월 31일자 잔액
2022(B) : 2022년 12월 31일자 잔액

자산의 종류	설 명
유동자산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투자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재정운영 분석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사업) 전체의 원가인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프로그램 순원가·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 비교환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를 계산한 후, 여기에 국세, 부담금 등 비교환수익을 차감한 것임.

[재정운영 결과 계산식]

-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 있는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
+	비배분비용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
-	비배분수익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 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
	재정운영 순원가	
-	비교환수익	국세, 부담금 등
	재정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원가)

2023년도 행정안전부의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 72조 4,148억 3,400만원 및 관리운영비 4,264억 6,000만원, 비배분비용 13억 6,100만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1,327억 8,500만원을 차감한 72조 7,098억 7,100만원이며, 비교환수익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와 동일한 72조 7,098억 7,100만원임.

[2023년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72,414,834	86,611,233	-14,196,399	-16.4
II. 관리운영비	426,460	424,335	2,125	0.5
III. 비배분비용	1,361	2,002	-641	-32.0
IV. 비배분수익	132,785	238,690	-105,905	-44.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72,709,871	86,798,880	-14,089,009	-16.2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72,709,871	86,798,880	-14,089,009	-16.2

※ 2023(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 순자산변동 분석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이전 및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기말순자산 계산식]

-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전기 既 보고된 순자산 금액에 오류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 재정운영표상 사업원가
+	재원의조달	국세·부담금 등 비교환수익, 국고수입
+	재원의이전	중앙관서간의 무상이전거래, 국고이전지출
+	조정항목	순자산의 증가·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재원의 조달·이전 비해당 거래
	기말순자산	

행정안전부의 순자산은 2023년 말 기준 12조 22억 3,200만원이며, 2023년 기초순자산은 11조 7,295억 8,800만원, 재정운영결과는 72조 7,098억 7,1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73조 346억 5,300만원, 조정항목은 - 521억 3,800만원임.

[2023년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일반회계+특별회계)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A)	2022(B)	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I. 기초순자산	11,729,588	11,341,417	388,171	3.4
II. 재정운영결과	72,709,871	86,798,880	-14,089,009	-16.2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73,034,653	86,945,293	-13,910,640	-16.0
IV. 조정항목	-52,138	241,757	-293,895	-121.6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2,002,232	11,729,588	272,644	2.3

※ 2023(A)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B)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 성인지 결산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은 여성 지방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지원, 재난상황에 여성의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5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134억 3,500만원이고 집행액은 132억 4,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임.

[2023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사업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회 계	세부사업명	2023년			2022년 지출액 (c)	전년대비 증감 (d=b-c)	전년대비 증감률 (d/c)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일반회계 소계(A)		4,418	4,224	95.6	3,185	1,039	32.6
일반 회 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 여성리더양성·심화 과정운영 ¹⁾²⁾	577	577	100.0	-	577	-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²⁾	478	452	94.6	-	452	-
	(3)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2,875	2,839	98.7	2,853	△14	△0.5
	(4)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²⁾	488	356	73.0	332	25	7.4
특별회계 소계(B)		9,017	9,017	100.0	3,395	5,622	165.6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5) 지역사회 활성화 기 반조성						
	- 지역사회 활성화 공 간조성 ²⁾	9,017	9,017	100.0	3,395	5,622	165.6
성별영향평가사업소계		10,560	10,402	98.5	3,727	6,676	179.1
직접목적사업소계		577	577	100.0	-	577	-
합 계(A+B)		13,435	13,241	98.6	6,580	6,661	101.2

1) 직접목적 사업

2) 성별영향평가 사업

6.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는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

7. 지방교부세 결산

지방교부세란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1)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같은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구분]

(단위: 백만원, %)

구 분		목 적	재 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 ^{주)} 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자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3회계연도 지방교부세는 총 75조 2,882억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89.1%인 67조 1,194억 1,400만원이 교부(집행)되었음. 이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수입에 결손이 발생하여 그에 연동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각각 예산대비 89.2%(예산 66조 6,445억 5,200만원 중 59조 4,757억원), 82.5%(5조 7,133억원 중 4조 7,133억원)만 교부되었기 때문임.²⁾

[2023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보통교부세(1631-300)		66,644,552	59,475,700	-	7,168,852	89.2
특별 교부 세	지역현안특별교부세 (1632-300)	824,469	824,469	-	-	100.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32-301)	206,117	206,117	-	-	100.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644-300)	1,030,586	1,030,586	-	-	100.0
부동산교부세(1633-300)		5,713,300	4,713,300	-	1,000,000	82.5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869,242	869,242	-	-	100.0
합계		75,288,266	67,119,414	-	8,168,852	89.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나머지 금액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정산함.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이 중 보통교부세 미교부의 경우, 2013년 1조 130억 3,200만원(예산 대비 2.9%)이 미교부된 후 10년만에 다시 발생한 것임.

[2013~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	미교부액	교부율
2013	35,535,947	34,522,915	1,013,032	97.1
2014	35,698,180	35,698,180	0	100.0
2015	32,926,185	32,926,185	0	100.0
2016	35,023,661	35,023,661	0	100.0
2017	39,222,628	39,222,628	0	100.0
2018	42,469,616	42,469,616	0	100.0
2019	47,602,635	47,602,635	0	100.0
2020	44,896,524	44,896,524	0	100.0
2021	50,252,142	50,252,142	0	100.0
2022	65,517,054	65,517,054	0	100.0
2023	66,644,552	59,475,700	7,168,852	89.2

주) 2014년 이전에 모든 유형의 지방교부세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 → 2013~2014년은 모든 지방교부세를 합산한 수치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동산교부세 미교부의 경우, 2022년에도 2조 691억 4,800만원(예산 대비 24.0%)이 미교부되어 2년 연속으로 발생한 것임.

[2012~2023년 부동산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	미교부액	교부율
2022	8,620,400	6,551,252	2,069,148	76.0
2023	5,713,300	4,713,300	1,000,000	82.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보통교부세 미교부가 발생한 2013년 및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액 대비 각각 96.0%, 85.9%만 수납되는 결손이 발생하였음.

[2013~2023년 국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예산액	수납액	수납율
2013	210.4	201.9	96.0
2014	216.5	205.5	94.9
2015	215.7	217.9	101.0
2016	232.7	242.6	104.2
2017	251.1	265.4	105.7
2018	268.1	293.6	109.5
2019	294.8	293.5	99.5
2020	279.7	285.5	102.1
2021	314.3	344.1	109.5
2022	396.6	395.9	99.8
2023	400.5	344.1	85.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도 2022~2023년 수입이 예산액 대비 각각 78.9%, 80.5%만 수납되는 결손이 발생하였음.

[2022~2023년 종합부동산세 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예산액	수납액	수납율
2022	8.6	6.8	78.9
2023	5.7	4.6	80.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II. 검토의견

【총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분석】

1. 개념의 구분

예산의 ‘이용(移用)’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및 장·관·항(분야·부문·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³⁾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승인 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자체 이용) 이용을 할 수 있음⁵⁾.

3)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2023년도 예산 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아동수당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산의 ‘전용(專用)’은 행정과목 중 가장 상위 범주인 세항(단위사업)·목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승인 전용),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음⁶⁾.

예산의 ‘내역변경’과 ‘세목조정’은 각각 행정과목 중 세세항(세부사업)과 세목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국가재정법」 등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재량하에 실시할 수 있으나, 일부 예산 유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협의절차를 두고 있음⁷⁾.

5) 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47조제2항은 정부 조직변경 시에도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실무상으로 예산을 이체(장·관·항, 목·세목 등을 그대로 유지한채 소관만 변경)만할뿐 이용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6)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7)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2.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일용임금 근로자를 상용임금(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에 따라 일용임금(110-04목)에서 상용임금(110-03목)으로 **세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6.

“주요사업비 내 유류비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타 비목으로 전용 시(**세목조정** 포함)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산의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이하 “이·전용등”)은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⁸⁾’의 예외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등을 할 때에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사유·변동내역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2023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집행 결과, 총 104개 세부사업 240억 1,400만원 규모의 이·전용등이 실시되었음. 2023년도 행정안전부 전체 예산은 31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3.2%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서 이·전용등이 실시된 것임.

구체적으로 예산의 이용은 총 5개 세부사업 1억 9,000만원, 전용은 39개 세부사업 180억 3,300만원, 내역변경은 6개 세부사업 6억 3,000만원, 세목조정은 88개 세부사업 51억 6,100만원 규모임.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요약]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수	금액
이용	5	190
전용	39	18,033
내역변경	6	630
세목조정	88	5,161
합계	104	24,014

주 1) 증액 사업 기준으로 집계

2) 이·전용등이 중복 실시된 사업이 있어 세부사업수 합계는 단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예산의 이·전용등 전체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023회계연도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재난대책비(보조)	330-03	이용	156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20-01	10.9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복구
			250			행정정보공동이용	260-01		
			700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310-04		
			10,000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310-02		
			3,300			한국전쟁전후민간인회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490-00		
			903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310-01		
			2,000			재난안전통신망구축운영(정보화)	210-02		
			210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430-01	10.10	
			300			정부혁신추진 및확산	260-01		
			100				260-02		
			5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330-01		
			계				18,419		
	청사기본경비	210-02	이용	300	-	-	정부청사노후시설 등정비	420-03	
220-02		세목조정	5	-	-	청사기본경비	220-01	10.11	재난방지대책 벤치마킹 국외여비 부족분 총당
계			305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210-02	이용	76	-	-	지진대비인프라구축	330-03	9.21	공공요금 인상 소요 총당
	210-01	세목조정	18	-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210-07	10.13	당직실 운영비 등 지급
			3				210-04	12.22	채용업무 관련 비용 부족분 총당
			104				210-08	4.11	공공요금 인상 소요 총당
	210-2	소계	125	-	1				
	계		201	-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02	이용	156	-	-	지진대비인프라구축	330-03	9.21	공공요금 인상 소요 총당
	210-02	세목조정	20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10-15	9.1	공공요금 인상 소요 총당
			2					12.6	
	소계		22	-	-				
계		178	-	-					
이북5도기본경비	210-02	이용	27	-	1	이북5도시설개보수	210-09	12.7	공공요금 인상 소요 총당
			10				210-15		
	소계		37	-	1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210-02	세목 조정	30	-	-	이북5도시설개보수	210-01	8.18	공공요금 인상 소요 충당	
			11				210-01	10.4		
			2				210-09	11.16		
			8				210-01	11.28		
	210-08		2	-	-		210-07	10.19	공용차량 유류비 부족 분 충당	
			3				210-09	10.30		
			2				210-09	11.16		
			0.5				210-04	12.19		
			1.5				210-09			
	210-14		25	-	1		210-01	5.11	고국방문단 초청행사 부족분 충당	
	220-01		3	-	1		220-02	11.16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소계		132.5	-	2					
	계		125	-	3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320-09	전용	53	-	1	자치분권위원회운영	110-03	3.8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	
	220-01		36	-	-		210-01	11.27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소계		89	-	1					
	220-01	세목 조정	18	-	-	자치분권위원회운영	220-02	12.10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10-14		30	-	6		210-01	12.12	지자체간 협력 홍보동 영상 제작	
	소계		48	-	6					
	계	137	-	7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210-14	전용	211	-	2	자치분권위원회운영	210-01	11.22	자원봉사 행사 실시	
			7				210-02			
			26				210-05			
			21				210-16			
			38				250-02			
			40				260-01			
			80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210-01			
			19				210-02			
			52				210-05			
			70			지자체경쟁력 지원	210-01			
			352				210-14			
			60			지방분권 균형발 전 홍보지원	210-01			
	계		976	-	2					
도로명 및 건물 번호활용	260-02	전용	300	99	7	도로명 및 건물번 호활용	210-01	2.7	세목 오류 수정	
	220-01	세목 조정	2	-	-	도로명 및 건물번 호활용	220-02	12.6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 에 따른 부족분 충당	
	계	302	99	7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개선	210-01	전용	5	-	5	지자체 재정분석및 재정제도개선	220-01	12.20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 단 위크숍 행사비 부족 분 충당	
		세목 조정	4	-	-		210-07	11.30		
	계	9	-	5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이북5도청사시설 개보수	420-03	전용	44	234	15	이북5도청사시설 개보수	430-01	9.14	자재구매 주체 변경(발 주청→공사업체)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정보화)	210-02	전용	30	-	-	행정정보공동이용	210-15	12.11	모바일신분증 종류·발급 량 확대에 따른 공공요 금 부족분 충당	
			70				260-01			
	계			100	-	-				
국가정보자원관리 원운영(정보화)	250-02	전용	8	-	1	국가정보자원관리 원운영(정보화)	210-15	7.4	신설 대구센터 운영비 부족분 충당	
	210-02		436	-	-	법정부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 축	430-01	10.27	공공요금 인상 소요 충당	
			758							
			1,314							
	소계		2,516	-	1					
	210-07	세목 조정	33	-	3	국가정보자원관리 원운영(정보화)	210-15	6.30	신설 대구센터 운영비 부족분 충당	
			2	210-15	11.24		본원 임차료 부족분 충당			
	90		-	85	210-15		9.18	대구센터 개청식 비용 지출		
	17				210-15		12.4	대구센터 원가산정 용 역비 지출		
	210-16		4	-	1		210-15	6.30	신설 대구센터 운영비 부족분 충당	
	소계			147	-	89				
	계			2,663	-	90				
청사시설유지보수	210-02	전용	2,015	-	-	정부청사노후시설 등정비	260-01	8.18	공공요금 인상 소요 충당	
			2,200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10-03			
			1,000			정부서울청사 창 성동별관재건축	420-03			
			2000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10-03	12.13		
			1500			정부서울청사 창 성동별관재건축	420-03			
	260-01		33	50	62	청사시설유지보수	210-07	10.30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부족분 충당	
	소계		8,748							
	210-02	내역 변경	500	-	-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15	12.13	공공요금 인상 소요 충당	
	210-09	세목 조정	60	-	136	청사시설유지보수	210-01	8.10	호우피해 복구 등	
			303				210-02			
	소계		363	-	136					
	계			9,611	50	198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60-01	전용	398	-	54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10-01	2.10	세목 오류 수정
	210-14		40	-	3	국가기록물정리	210-01	7.13	기록물 전시확대 추진
	210-02		160	-	26		210-14	11.24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9		30	-	3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10-01	12.13	전기설비 긴급 보수
	소계		628	-	86				
	210-02	세목조정	24	-	-	기록관보존시설관리	210-14	11.20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6		210-15						
	소계	30	-	-					
	계	658	-	86					
대통령기록관리	260-01	전용	60	-	2	대통령기록관리	210-14	3.20	세목 오류 수정
	320-09		100	-	-		110-03	12.13	퇴직금 부족분 충당
	소계		160	-	2				
	210-02	세목조정	55	-	-	대통령기록관리	210-01	11.28	공공요금 인상 소요 충당
			20				210-09		
			10				210-14		
	소계	85	-	-					
	계	245	-	2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220-01	전용	4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및운영	220-01	12.21	유해봉환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210-09	세목조정	2	-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210-01	1.7	사무실 집기 수리
			4				210-15	4.3	피해진상관리시스템 통계자료 개선
	소계	6	-	-					
	계	10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320-01	전용	220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310-04	4.13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파업확대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 부족분 충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0-01	전용	59	-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330-01	11.27	5.18관련자 보상 재개에 사무비용 충당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20-04	전용	395	476	121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490-00	8.30	감리비 부족분 충당
	420-04	세목조정	174	-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20-03	8.30	감리비 부족분 충당 조달수수료 추가소요 충당
	420-05		48	17	-				
	320-05		32	-	-				
	소계		254	17	-				
	계	649	493	121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250-02	전용	1	-	-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210-01	10.27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
	110-02		63	-	2			11.15	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
	소계		64	-	2				
	210-14	세목조정	13	-	-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210-07	11.9	담당자 워크숍 실시
	계	79	-	2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10-02	전용	605	-	23	인건비(국과수)	110-01	7.21	공공요금 인상 소요 충당	
			698				110-01	공공요금 인상 소요 충당		
			210-06	28	-		3	110-01	일숙직비 부족분 충당	
			220-01	31	-		18	110-01	11.15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 에 따른 부족분 충당
			250-02	12	-		1	110-01	직책수행경비 단가 인 상에 따른 부족분 충당	
				4				110-05		
			소계	1,378	-		45			
	210-01		36	-	12		210-02	11.18	달력·부상품 등 구입비 지출	
			2.6				210-02	12.27	사무용품구매	
			12.2				210-02	12.28	사무용품구매	
			5				210-08	12.28	사무용품구매	
			1.33				210-08	12.28	사무용품구매	
		210-02	0.16	-	-		210-09	10.24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03	1.13	-	-		210-01	9.6	신규 민방위복 구매비	
			0.45				210-01	10.5	지급	
		210-05	3	-	5		210-08	5.25	업무량 증가에 따른 특 근매식비 부족분 충당	
			0.2				210-01	8.23	을지연습 식비 부족분 충당	
			0.46				210-11	9.4		
			10.2				210-02	11.23	업무량 증가에 따른 특 근매식비 부족분 충당	
			3				210-01	12.18	업무량 증가에 따른 특 근매식비 부족분 충당	
		210-06	1.53	-	-		210-01	10.31	일숙직비 부족분 충당	
			0.25				210-01	12.29	일숙직비 부족분 충당	
		210-07	1.5	-	1		210-01	4.5	본원 68주년 기념행사 물품 임차료	
			1.5				210-01	5.25	기관운영감사 관련 임 차료 부족분 충당	
			1.75				210-01	9.6	무인경비시스템 임차료 부족분 충당	
			1.2				210-08	12.28	공유재산 대부로 부족 분 충당	
		210-09	1.22	-	7		210-08	12.19	차량소모품 구입	
	3.18		210-01			12.21	시설관리물품 구매			
	15.4		210-02			12.27	시설수리비 지출			
	3.5		210-08			12.28	시설교체비 지출			
	210-11	2	-	2	210-01	1.20	시설관리물품 구매			
		1			210-09	4.18	시설관리물품 구매			
		0.35			210-01	5.17	시설관리물품 구매			
		1			210-08	5.25	환경미화물품 구매			
		1			210-01	7.13	환경미화물품 구매			
		0.005			210-03	11.14	시설관리물품 구매			
		0.1			210-07	11.14				
		1.66			210-01	11.16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0.07				210-01	11.21	시설관리·환경미화물품 구매	
			3				210-01	12.5	시설관리·환경미화물품 구매	
			0.28				210-01	12.21	시설관리·환경미화물품 구매	
			4				210-02	12.29	시설수리비 지출	
	210-16		0.69	-	2		210-02	12.29	채용위원 수당 부족분 충당	
	220-01		4.35	-	-		220-02	12.20	업무량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0.81	-	-					220-03
	소계			127	-		29			
	계			1,505	-	74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	220-02	전용	34	-	5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	210-01	11.30	불꽃축제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충당
재난안전교육원 운영	220-02	전용	12	-	-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10-04	3.3	재난안전중견리더과정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210-09	세목 조정	60	-	8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10-15	6.14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충당	
			37				210-01	11.13		
			5				210-01	12.15		
	210-02		53	-	2		210-01	11.13	공공요금 인상 소요 충당	
	220-01		3	-	-		220-2	12.15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1	-	-					220-7
	소계			159	-	10				
계			171	-	10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220-01	전용	4	-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210-02	12.18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220-01	세목 조정	2	-	-		220-02	12.18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14	-	-			210-01	4.11	신규 민방위복 구매비 지급
	6		-	-	7.27					
	소계			22	-	-				
계			26	-	-					
국가핵심기반 관리	220-01	전용	10	-	4	국가핵심기반 관리	210-14	12.13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220-01	전용	4	-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210-02	12.12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60-01	전용	199	519	52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10-15	1.27	DB 구축 소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마련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110-02	전용	2	-	-	인건비(본부)	110-02	12.14	인건비 부족분 충당	
	110-01	내역 변경	67	-	2	인건비(청사)	110-01			
	계			69	-	2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인건비(대통령기록관)	110-02	전용	50	-	13	인건비(본부)	110-02	12.13	전문임기제 보수 부족분 충당
	110-01	세목조정	3	-	-	인건비(대통령기록관)	110-05	12.27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충당
	계		53	-	13				
기관운영(총액)	110-04	전용	1,172	-	427	인건비(본부)	110-01	6.7	청년인턴 인건비·고용부담금 마련
	320-09		125	-	87				
	250-02		13	-	2	기관운영(총액)	210-05	12.14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
	소계		1310						
기관운영	210-08	전용	13	-	1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12.7	공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충당
	220-01		51	-	1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소계		64	-	2				
	210-07	세목조정	52	-	-	기관운영	210-01	2.23	중앙동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
			4	-	-		210-02	9.18	각종 장비 임차료 지급
			1	-	-		210-08	10.16	각종 장비 임차료 지급
			2	-	-		210-01	12.27	공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충당
	소계		59	-	-				
	계		123	-	2				
기획조정실	220-01	전용	78	-	5	기획조정실	210-01	10.23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국내여비 소요 증가
	210-02	세목조정	5	-	9		210-01	2.21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210-14		10	-	-		210-01	9.5	청년의날 버스 운영 용역비 부족분 충당
	210-07		6	-	5		210-01	9.8	국외출장 차량 임차료 지급
	소계		21	-	14				
	계		99	-	19				
전자정부국	220-01	전용	10			전자정부국	210-07	12.20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5				210-01		
	220-02		13				210-01	10.30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소계		28						
	210-09	세목조정	11			전자정부국	210-01	11.9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공사비 지출
	계		39						
지방자치분권실	220-02	전용	34	-	7	기획조정실	210-01	8.23	집중호우·태풍 대비 지역책임관 파견을 위한 여비
			34	-	7	지방자치분권실			
			34	-	7	재난협력실			
			34	-	7	재난관리실			
			34	-	7	지방재정경제실	210-07		
	소계		168	-	7				
	210-01	세목조정	20	-	-	지방재정경제실	210-07	12.19	시도 공무원 간담회 실시
	계		188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지방재정경제실	220-02	전용	53	-	7	지방재정경제실	210-07	10.19	보조금 현장점검 국내여비
			9				210-01	12.19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12				210-02	12.19	지방재정전략회의 규모 확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소계		74	-	7				
	210-14	세목조정	20	-	-	지방재정경제실	210-01	9.11	지방재정전략회의 규모 확대에 따른 일반용역비 부족분 충당
	계		95	-	7				
안전감찰관실기본경비	220-01	전용	3	-	-	안전감찰관실기본경비	210-01	12.13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재외주재관지원	220-02	전용	107	-	1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12.14	재외주재관 귀·부임 법정경비 부족분 충당
청사기본경비(총액)	320-09	전용	55	-	2	인건비(청사)	110-01	12.11	청원경찰, 전문임기제 4대보험 부족분 충당
	310-03		6	-	-	청사기본경비(총액)	250-02	12.21	예산성과급 부족분 충당
	계		61	-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총액)	250-02	전용	2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총액)	210-04	12.15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210-14	전용	1	-	1	성과관리 및 행정효율성 제고	220-01	11.27	대국민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 개최
			2			고객만족관리 및 이미지 제고			
			17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소계		20	-	1				
	210-14	세목조정	10	-	-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210-01	11.27	
	계		30	-	1				
세종청사 이전 지원	210-07	전용	14	-	-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12.7	회의장 장비 임차료·설치비 마련
	210-09		15	-	1				
	소계		29	-	1				
	210-15	세목조정	23	-	-	세종청사 이전 지원	210-07	1.20	사무집기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
	210-09		10	-	-			12.28	별관 등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
	소계		33	-	-				
	계		662	-	1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260-01	전용	42	-	-	행정한류네트워크 구축운영	210-01	6.12	유엔공공행정포럼 개최를 위한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 실시
	210-14	세목조정	4	-	1			8.18	홍보동영상 품질제고를 위한 제작 예산 확대
	계		46	-	1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지역발전활성화	220-01	전용	2	-	1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220-01	12.19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210-07	세목 조정	3	-	-	지역발전활성화	210-01	7.10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 행사장 임차료 지급
	210-01		1	-	-		210-07	12.6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20-01		3	-	-		220-02	12.6	고향사랑의날 행사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소계		30	-	-				
	계		32	-	1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260-01	전용	42	-	4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210-01	7.18	2023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맞춤형 심화 컨설팅 실시
	210-07	세목 조정	20	-	12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210-01	5.11	주민자치회 권역별 설명회 회의장 임차료 지급
	220-02		1	-	0.2		220-01	5.30	한일내정관계 회의 국외출장 추진
	소계		107	-	12				
	계		149	-	16				
범정부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210-07	내역 변경	8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210-15	12.29	장비 임차료 부족분 충당
대변인실	220-01	내역 변경	15	-	-	의정관실	220-01	12.18	정책홍보 소요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경찰국기본경비	210-01	내역 변경	35	-	-	기획조정실	210-01	8.22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비
	210-07	세목 조정	1	-	-	경찰국기본경비	210-01 210-02	12.19	임차료 부족분 충당
	계		36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250-02	내역 변경	4	-	-	청사기본경비(총액)	250-02	12.13	직책수행경비 부족분 충당
	210-16	세목 조정	4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210-12	10.13	기타운영비 부족분 충당
	계		8	-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210-07	세목 조정	2	-	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210-01	12.4	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부족분 충당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210-02	세목 조정	5	-	2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210-01	10.20	공공요금 인상 소요 충당
	210-01		2	-	1		210-02	11.8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계		8	-	3				
지자체경쟁력지원	220-02	세목 조정	13	-	-	지자체경쟁력지원	220-01	4.11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국제교류 재개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생활공감정책추진	210-07	세목 조정	6	-	2	생활공감정책추진	210-01	6.28	운영위원회 개최장소 임차료 부족분 충당
	210-14		3	-	2			8.28	부처 연찬회 비용 부족분 충당
	계		9	-	4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지역경제활성화	220-01	세목 조정	6	-	-	지역경제활성화	220-02	12.13	공모사업 현장심사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210-14	세목 조정	45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210-01	7.25	청사이전 10주년 기념행사 실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220-02	세목 조정	27	-	0.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220-01	8.1	국외위탁과정 추가운영 등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13				210-02		
	210-01		14	-	4		210-14	11.21	강사수당·교육운영 경비 부족분 충당
			10				210-16		
	계		64	-	4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210-07	세목 조정	1	-	-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210-01	11.12	이북도민 체육대회 실시
			6	-	-			12.13	임차료 부족분 충당
	계		7	-	-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210-01	세목 조정	4	-	-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210-02	11.2	이북도민 체육대회 실시
			7	-	-		210-05		
	210-14		3	-	-		210-07	12.14	
	계		14	-	-				
공무원단체건강전육성	210-01	세목 조정	15	-	2	공무원단체건강전육성	210-14	1.18	신규 콘텐츠 개발 용역
행정생산성향상지원	210-14	세목 조정	13	-	2	행정생산성향상지원	210-01	12.13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홍보동영상 제작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210-14	세목 조정	107	-	9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210-01	3.28	제7회 아태심포지엄 행사용역 계약
			10	-			210-05		
			17	-			210-07		
	계		134	-	9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210-14	세목 조정	55	-	-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210-01	8.30	민원봉사대상 행사용역비 지급
			30	-	-		210-07		
	계		85	-	-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14	세목 조정	15	36	4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210-01	8.22	청년의날 부스 운영용역비 지급
			20					8.31	조직문화 워크숍 실시
	계		36	36	4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10-16	세목 조정	2	-	-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10-05	10.1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부족분 충당
			24	-	-		210-01	12.22	정부24 SMS 발송비 부족분 충당
	계		26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210-01	세목 조정	120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210-14	1.11	세목 오류 수정
	210-02		70	-	7			11.3	건물 관리비 부족분 충당
			20					11.16	회의 증가에 따른 회의장 임차료 부족분 충당
	210-07		65	-	1				
	210-12		91	-	4			8.30	사무공간 유지보수 사무기기 및 가구임차
	계		366	1	12				
국경일등정부행사	210-14	세목 조정	78	-	-	국경일등정부행사	210-01	7.20	일반용역비 부족분 충당
			28	-	-		210-07		
	계		106	-	-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정부포상	210-14	세목 조정	48 58	76	1	정부포상	210-01	1.16 10.10	일반용역비 부족분 충당	
	계	106	76				1			
	정부청사노후시설 등정비	420-03	세목 조정	54	-	1,819	정부청사노후시설 등정비	420-04	8.3	세목 오류 수정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02	세목 조정	81	-	1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01	7.26	장애인 고용보험금 납부 공무직 특수건강검진 용역 수행	
	210-14		20	-	32		210-01			
	계	101	-	33						
국가기록물정리	210-14	세목 조정	41 20	-	179	국가기록물정리	210-01 210-07	7.17	국내외 특별순회전시 실시	
	계	61	-				179			
	기록물보존복원	210-14	세목 조정	3	-	17	기록물보존복원	210-01	10.30	마이크로필름 이송사업 실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정보화)	210-07	세목 조정	5	-	1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정보화)	210-15	12.8	기록물관리시스템 리스료 변동에 따른 부족분 충당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	210-14	세목 조정	2	-	1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10-01	4.17	인력선발 시험 보안용 역비 부족분 충당	
	220-02		3	-	1		220-03	10.12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계	5	-	2						
부마민주항쟁명예 회복지원	210-01	세목 조정	10	-	5	부마민주항쟁명예 회복지원	210-07	11.30	위원회 개최비용 부족 분 충당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1	세목 조정	67.6 5	-	11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2.7	소모품 구입	
	210-03		34.6				-	4	210-14	12.28
	210-07		6.8	-	4		210-01	6.16	개인보호구 구입	
			5.8				210-01	6.16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램 버스임차료 지출	
	210-09		48.5 99 2.6 21 15 0.8 0.03 5.1	-	14		210-01	11.21	시험장 임차료 부족분 충당	
			210-01				5.2	기초감정장비 교정비		
			210-01				6.23	시설교정비 지출		
			210-11				11.1	시스템 설치비 부족분 충당		
			210-07				11.20	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충당		
			210-14				11.20			
			210-11				11.27	시설 설치비 부족분 충당		
			210-01				12.27	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충당		
	210-14		12.28	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충당						
	210-11		25 0.07	-	3		210-01	12.20	재료비 부족분 충당	
			210-03				12.21	재료비 부족분 충당		
	210-14		2 19.3 2	-	14		210-07	4.11	감정 세탁물 위탁 용역 비 부족분 충당	
			210-01				6.1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램 용역비 지출		
			210-09				9.15	감정 세탁물 위탁 용역 비 부족분 충당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420-02		2.57	-	3		420-03	4.12	전기차 충전설비 설계비 부족분 충당
	계		363	-	53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세목조정	35	-	-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지역안전개선컨설팅	220-01	세목조정	5	-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220-02	12.12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210-01	세목조정	30	-	14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210-16	10.25	현장종사자 격려품 지급
			1					12.19	현장종사자 격려품 지급 조달수수료
	계		31	-	14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10-07	세목조정	1	-	-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10-01	3.17	워크숍 개최장소 임차료 부족분 충당
	220-01		11	-	2		220-02	12.13	국내 출장소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 충당
	계		12	-	2				
동원자원관리	210-14	세목조정	44	-	2	동원자원관리	210-01	5.8	공직자 안보교육 영상 제작
			20					9.26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계		64	-	2				
비상대비담당자선발	210-01	세목조정	4	-	1	비상대비담당자선발	210-16	1.10	수당 지급
			5				210-07	1.10	물품구매
			4.4				210-07	3.10	물품구매
			0.4				210-14	3.10	물품구매
			0.3				210-07	11.21	물품구매
			13.3				210-16	12.11	물품구매
			0.1				210-04	12.11	물품구매
	210-14		2	-	-	210-07	1.10	보안용역 계약	
	계		29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10-01	세목조정	12	-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10-07	11.10	차량방재역량강화 교육 수요 확대 대응
			10				210-05	11.29	부서 운영비 부족분 충당
	계		22	-	13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10-01	세목조정	20	-	14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10-14	4.20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홍보동영상 제작
풍수해보험	210-02	세목조정	2	-	1	풍수해보험	210-01	9.18	문자발송 및 상담전화 요금 지급
	210-14		6	-	-			5.2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실시
			7	-	-			10.30	지자체공무원 워크숍 실시
	계		15	-	1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210-02	세목조정	25	-	-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210-09	12.12	공동대응 상대기관 출동시 문자서비스 실시
	210-07		4	-	1				신고접수자 역량강화 교육장 임차료 지급
	계		29	-	1				
인건비(이북)	110-02	세목조정	25	-	1	인건비(이북)	110-01	12.11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 채용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정부혁신조직실 (총액)	210-16	세목 조정	2	-	-	정부혁신조직실 (총액)	210-05	2.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타운영비 부족분 충당							
의정관실	210-01	세목 조정	10	-	1	의정관실	210-07	11.20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3					12.22								
	계			13	-	1										
감사관실	210-01	세목	9	-	-	감사관실	210-08	11.3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210-07	조정	2	-	-		210-02		임차료 부족분 충당							
	계			11	-		-									
정부혁신조직실	210-01	세목 조정	1	-	1	정부혁신조직실	210-02	12.2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인사기획관실	210-07	세목 조정	6	-	-	인사기획관실	210-01	12.26	정기 인사감사를 위한 임차료 부족분 충당							
안전정책실기본 경비	210-01	세목 조정	0.5	-	1	안전정책실기본경비	210-08	11.23	사무용품비 지급							
			7				210-02	12.12	공공요금 잔액 세목조정							
	210-03		5	-	-		210-01	7.24	신규 민방위복 구매비 지급							
			1				210-01	9.20								
							210-07									
	210-07		3	-	-		210-08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기기 임차료 지급							
			4				210-01	3.10								
			0.6				210-01	3.23								
			0.4				210-01	4.21	신규직원 교육 차량 임 차료 지급							
			210-09													
			3				210-01	6.8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기기 임차료 지급							
			5				210-01	6.9								
			1				210-03	10.24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실 공사비 지급							
			1				210-02	11.23	신규직원 교육 차량 임 차료 지급							
			4				210-02	12.15	공공요금 잔액 세목조정							
			210-09				4	-	-		210-01	3.23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 워크 공사비 지급			
							3				210-02	10.17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실 공사비 지급			
	210-07															
	220-01		2	-	1		210-08		집중호우 긴급대응 국 내여비 지급							
			2				220-02	7.24								
			1				220-02	11.23		국외여비 잔액 국내여 비로 다시 세목조정						
	220-02		4	-	-		220-02	12.7								
			4				220-01	4.10	국외출장비 지급							
			2				220-01	4.18								
			6				220-01	4.21								
			3				220-01	6.8								
			10				220-01	6.16								
			1				220-01	8.16								
	1		220-01	8.23												
	계			75	-		2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재난관리실기본 경비	210-01	세목 조정	1	-	4	재난관리실기본경비	210-03	10.24	기후위기 TF 운영비 충당				
			2				210-07						
			1.1				210-02						
			0.4				210-03						
			0.4				210-07						
	210-02		5	-	2		210-01	8.2	전화요금 부족분 충당				
	210-03		2	-	-		210-01	8.16	신규 민방위복 구매비 지급				
			0.7				210-01	9.18					
			0.6				210-01	10.5					
			0.85				210-01	11.21					
	210-08		2	-	-		210-01	6.7	재난현장 점검 공용차량 임차료 부족분 충당				
			0.5				210-07	10.24					
			0.6				210-02	11.28					
	계		17	-	6								
재난협력실기본 경비	220-02	세목 조정	12	-	-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20-01	1.31	국외출장 실시				
	210-03		3				-	-	210-01	11.6	신규 민방위복 구매비 지급		
	210-07		30				-	2	210-01	11.6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사무실 임차료 지급		
	220-01		3				-	4	220-02	12.19	재난대응 출장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계	47	-	6									
비상대비정책국 기본경비	210-07	세목 조정	10	-	5	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10-01	3.8	임차료 부족분 충당				
			2				210-02	11.2					
계		12											
기관운영및예산 지원관리	210-01	세목 조정	3	-	19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10-09	11.17	세종청사 중앙동 사무공간 조성				
	210-09		100				-	-			6.22		
			104							210-01	9.14		
			12								9.19		
			220-03						22	장기교육훈련 경비 집행			
	1		220-02				8.29						
	계	242	-	19									
이북5도기본경비 (총액)	210-12	세목 조정	1	-	-	이북5도기본경비 (총액)	210-05	12.12	공무직 단체보험료 부족분 충당				
	210-16		0.5				-	-	210-05	12.19	관련단체 격려비용 부족분 충당		
			0.2						210-06				
	계	2	-	-									
재난안전연구원 기본경비(총액)(R&D)	210-14	세목 조정	20	-	-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210-01	8.27	연말정산 재정산 등 용역비 부족분 충당				
	210-08		1				-	-	210-05	11.2	유류비 부족분 충당		
	210-16		3							-	-	11.2	부서운영비 부족분 충당
	210-01		4									-	-
	계	28	-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220-02	세목 조정	8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220-01	10.11	현지연수 등을 위한 구외여비 부족분 충당				
고객만족관리및 이미지제고	210-08	세목 조정	5	-	-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210-07	1.16	임차차량 유류비 부족분 충당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국민안전방송운영 및재난정책홍보	210-07	세목 조정	2	-	1	국민안전방송운영 및재난정책홍보	210-01	7.18	안전한TV 서버임차료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부족분 총당
	210-01		1	-	-		210-02	12.20	안전한TV 스튜디오 가 상배경 제작
			1	-	-		210-07		
	계		4	-	1				
중앙안전상황실 운영	210-01	세목 조정	60	-	-	중앙안전상황실운영	210-02	11.2	소모품 구입
	210-03		7	-	-		210-02	8.17	신규 민방위복 구매비
			4	-	-		210-02	12.26	지급
	210-07		1	-	-		210-02	12.26	기기 임차료 부족분 총당
	210-15		425	-	61		210-09	1.3	세목 오류 수정
	계		498						
지역균형발전추진 지원	220-01	세목 조정	1	-	-	지역균형발전추진 지원	220-02	12.7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 에 따른 부족분 총당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	210-01	세목 조정	2	-	-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	210-07	12.21	사전설계검토회의 민간 위원 수당 부족분 총당
마을기업육성사업	210-14	세목 조정	20	-	-	마을기업육성사업	210-01	1.9	마을기업 쇼핑몰 관측 용역
			40	-	-			7.31	
	계		60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2023회계연도 이·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분석

(1) 연례적 이·전용등 실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든 재정적·행정적 변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이·전용등은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전용등이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 또는 부서의 재정집행이 철저하지 못함을 의미할 수 있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또한 연례적으로 이·전용등이 실시된 것은 예산규모 산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자주 실시되었다면 과소편성, 이·전용 등을 통한 감액이 자주 실시되었다면 과다편성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예산안 심의 시 환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최근 5년(2019~2023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총 69개 사업임. 구체적으로 5회(매년) 이·전용등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40개 사업, 4회는 29개 사업임.

[2019~2023회계연도 4회 이상 이·전용등 사업별 증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3	2022	2021	2020	2019
5회	일반회계	감사관실	11	7	11	7	12
	일반회계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5	6	136	26	11
	일반회계	과학수사감정지원	363	122	165	162	72
	일반회계	국가기록물정리	61	54	325	134	25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663	3,582	1,245	1,056	71
	일반회계	국경일등정부행사	106	278	107	1,264	3,722
	일반회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1,633	839	489	157	386
	일반회계	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4	29	38	16	19
	일반회계	기관운영	135	455	62	119	15
	일반회계	기관운영(총액)	1,310	171	198	183	176
	일반회계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42	15	55	337	289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5	8	61	247	186
	일반회계	기록관보존시설관리	658	14	5	304	460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119	71	187	71	163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	245	132	150	207	136
	일반회계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302	80	125	70	40
	일반회계	동원자원관리	64	170	123	87	102
	일반회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10	22	11	559	173
	일반회계	비상대비담당자선발	29	3	4	3	5
	일반회계	세종청사 이전 지원	62	1,160	397	150	177
	일반회계	안전정책실기본경비	75	21	31	71	36
	일반회계	의정관실	13	31	34	10	14
	일반회계	이북5도기본경비	167	195	84	126	41
	일반회계	자치분권위원회운영	137	113	79	99	87
	일반회계	재난관리실기본경비	17	20	2	2	26
	일반회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173	25	22	11	83
	일반회계	재외주재관지원	107	2	5	5	1
	일반회계	정부포상	106	109	84	195	200
	일반회계	정부혁신조직실	1	6	17	23	71
	일반회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2	13	106	30	16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실	188	5	209	18	38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177	32	81	32	74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207	18	30	1	31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8	18	8	2	4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64	690	74	43	99
	일반회계	지방재정경제실	95	202	15	109	20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6	40	44	87	26
	일반회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01	51	420	873	284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9,631	2,140	1,332	1,320	334
	일반회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6	51	111	25	28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3	2022	2021	2020	2019
4회	일반회계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31	23	76	1,603	0
	일반회계	인사기획관실	6	125	146	6	0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18,419	62,652	5,877	39,375	0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28	17	2	6	0
	일반회계	재난협력실기본경비	47	32	48	35	0
	일반회계	중앙안전상황실운영	498	602	22	45	0
	지특회계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1	8	10	8	0
	일반회계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85	85	85	0	1
	일반회계	이북5도기본경비(총액)	2	3	4	0	50
	일반회계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59	4,062	150	0	1
	일반회계	풍수해보험	15	251	969	0	8
	일반회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2	8	0	67	35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45	21	0	1	1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5	9	0	15	15
	일반회계	청사기본경비	311	42	0	83	118
	일반회계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29	0	161	9	22
	일반회계	전자정부국	39	0	38	25	53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13	0	69	64	47
	일반회계	청사기본경비(총액)	61	0	114	151	77
	일반회계	행정생산성향상지원	13	0	10	29	9
	일반회계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46	0	14	53	30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0	151	68	262	9
	일반회계	기록원기본경비	0	25	91	1	55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0	1	2	7	7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운영	0	12	6	45	42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0	249	1,164	10,402	1,665
	일반회계	정책기획위원회운영	0	77	8	1,570	567
	일반회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0	310	440	291	624
	일반회계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0	7	17	16	1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역변경·세목조정은 제외하고 최근 5년(2019~2023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을 통한 증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6개 사업임. 이 중 5회(매년) 증액된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기관운영(총액) 등 2개 사업, 4회 증액된 것은 재난대책비(보조),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자치분권위원회운영, 청사시설유지보수 등 4개 사업임.

[2019~2023회계연도 4회 이상 이·전용등 사업별 증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3	2022	2021	2020	2019
5회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663	3,582	1,245	1,056	71
	일반회계	기관운영(총액)	1,310	171	198	183	176
4회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18,419	62,652	5,877	39,375	-
	일반회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1,378	786	372	-	261
	일반회계	자치분권위원회운영	89	38	33	-	41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8,748	2,140	-	770	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최근 5년(2019~2023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전용등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81개 사업임. 이 중 5회(매년) 이·전용등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은 47개 사업, 4회는 34개 사업임.

[2019~2023회계연도 4회 이상 이·전용등 사업별 감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3	2022	2021	2020	2019
5회	일반회계	감사관실	-11	-7	-11	-7	-12
	일반회계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8	-6	-136	-26	-11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151	-806	-68	-622	-9
	일반회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4	-14	-40	-74	-160
	일반회계	과학수사감정지원	-363	-122	-250	-381	-72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164	-3,582	-1,332	-7,769	-71
	일반회계	국경일등정부행사	-106	-278	-107	-1,264	-3,522
	일반회계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55	-53	-123	-328	-129
	일반회계	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6	-29	-38	-8	-19
	일반회계	기관운영	-70	-303	-62	-119	-163
	일반회계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42	-15	-55	-337	-289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35	-8	-61	-363	-186
	일반회계	기록관보존시설관리	-428	-14	-330	-1,069	-460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187	-62	-187	-61	-187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920	-800	-61	-200	-776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	-245	-132	-150	-689	-136
	일반회계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302	-80	-125	-339	-40
	일반회계	동원자원관리	-64	-170	-123	-87	-115
	일반회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913	-22	-11	-359	-173
	일반회계	비상대비담당자선발	-29	-3	-4	-3	-5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56	-1	-2	-923	-7
	일반회계	세종청사 이전 지원	-33	-160	-397	-310	-177
	일반회계	안전정책실기본경비	-75	-21	-31	-71	-36
	일반회계	의정관실	-28	-40	-34	-75	-75
	일반회계	이북5도기본경비	-130	-195	-84	-126	-41
	일반회계	인건비(국과수)	-1,378	-1,345	-1,872	-2,294	-257
	일반회계	인건비(본부)	-1,349	-775	-2,728	-5,160	-26
	일반회계	자치분권위원회운영	-480	-113	-79	-186	-87
	일반회계	재난관리실기본경비	-50	-20	-2	-103	-26
	일반회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173	-25	-22	-262	-83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2,000	-6,749	-1,164	-12,002	-1,665
	일반회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2,500	-1,000	-121	-480	-24
	일반회계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374	-481	-150	-3,540	-1
	일반회계	정부포상	-106	-109	-84	-474	-400
	일반회계	정부혁신조직실	-1	-6	-17	-33	-28
	일반회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2	-13	-56	-30	-16
	일반회계	지방자치분권실	-54	-5	-209	-18	-38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2	-32	-81	-95	-74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130	-18	-30	-97	-31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4	-8	-8	-2	-4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3	2022	2021	2020	2019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64	-690	-74	-43	-99
	일반회계	지방재정경제실	-129	-202	-15	-195	-20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6	-40	-44	-87	-26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435	-320	-69	-201	-47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53	-1,615	-102	-120	-2,250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416	-2,762	-1,332	-1,062	-334
	일반회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6	-51	-111	-25	-28
4회	일반회계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중사자치원	-31	-23	-76	-1,603	-
	일반회계	인사기획관실	-6	-125	-146	-6	-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28	-17	-2	-1	-
	일반회계	재난협력실기본경비	-81	-32	-48	-35	-
	일반회계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210	-3,227	-2,619	-814	-
	일반회계	중앙안전상황실운영	-715	-602	-22	-283	-
	지특회계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1	-8	-10	-8	-
	일반회계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85	-85	-85	-	-1
	일반회계	이북5도기본경비(총액)	-2	-3	-4	-	-19
	일반회계	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134	-45	-	-47	-76
	일반회계	국가기록물정리	-261	-54	-	-260	-25
	일반회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10	-6	-	-12	-5
	일반회계	기관운영(총액)	-13	-7	-	-57	-5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4	-4	-	-633	-72
	일반회계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4	-48	-	-374	-6
	일반회계	인건비(이북)	-25	-10	-	-307	-31
	일반회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2	-8	-	-67	-35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45	-21	-	-43	-1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5	-9	-	-41	-15
	일반회계	청사기본경비	-11	-42	-	-650	-118
	일반회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4,801	-4,754	-	-2,355	-284
	일반회계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29	-	-161	-79	-22
	일반회계	전자정부국	-39	-	-38	-25	-11
	일반회계	행정생산성향상지원	-13	-	-10	-29	-9
	일반회계	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46	-	-14	-1,491	-30
	일반회계	기록원기본경비	-	-25	-91	-1	-55
	일반회계	기록원기본경비(총액)	-	-10	-3	-18	-15
	일반회계	기록정보서비스	-	-47	-10	-28	-24
	일반회계	인건비(기록)	-	-600	-202	-546	-253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운영	-	-12	-6	-45	-42
	일반회계	재외주재관지원	-	-2	-5	-5	-1
	일반회계	정책기획위원회운영	-	-2,065	-8	-2,553	-567
	일반회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	-310	-440	-519	-624
	일반회계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	-7	-17	-36	-1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역변경·세목조정은 제외하고 최근 5년(2019~2023회계연도)간 4회 이상 이용·전용을 통한 감액이 있었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9개 사업임. 이 중 5회(매년) 감액된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인건비(국과수), 인건비(본부), 자치분권위원회운영, 지진대비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 4회 감액된 것은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청사시설유지보수 등 3개 사업임.

[2019~2023회계연도 4회 이상 이·전용등 사업별 감액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	세부사업	2023	2022	2021	2020	2019
5회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8	-1,540	-1,332	-7,763	-60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920	-800	-61	-200	-30
	일반회계	인건비(국과수)	-1,378	-1,345	-1,872	-2,294	-257
	일반회계	인건비(본부)	-1,349	-775	-2,727	-5,160	-24
	일반회계	자치분권위원회운영	-432	-38	-33	-87	-41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32	-1,565	-102	-120	-2,250
4회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151	-655	-18	-360	-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2,000	-6,500	-	-12,002	-615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33	-424	-	-512	-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이·전용등 실시 후 미집행 과다

이·전용등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의 예외로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함. 이에 이·전용등을 통해 예산현액을 증액한 후 이를 미집행(이월·불용)하는 것은 이·전용등의 규모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것임.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중 이·전용 등 실시 후 20% 이상을 미집행(이월·불용)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총 24개 세부사업 32개 세목에서 22억 5,000만원을 이·전용 등 받았으나 2억 8,400만원을 이월하고 10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구체적으로 전용 받은 후 20% 이상을 미집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총 7개 세부사업 9개 세목에서 15억 1,600만원을 전용받았으나 2억 8,400만원을 이월하고 6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고, 세목조정 받은 후 20% 이상을 미집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총 18개 세부사업 23개 세목에서 7억 3,400만원을 세목조정 받았으나 3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이·전용등 실시후 20% 이상 미집행 사업]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이·전용등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이북5도청사시설 개보수	420-03	전용	44	234	15	이북5도청사시설 개보수	430-01	9.14	자재구매 주체 변경(발주 청→공사업체)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지원	210-01	전용	59	-	6	민주화운동기념사 업지원	330-01	11.27	5.18관련자 보상 재개에 사무비용 충당
국과수기본경비 (총액)	220-01	전용	31	-	18	인건비(국과수)	110-01	11.15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 검단운영	220-02	전용	34	-	5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 단운영	210-01	11.30	불꽃축제 점검에 따른 국 내여비 충당
국가핵심기반 관리	220-01	전용	10	-	4	국가핵심기반 관리	210-14	12.13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기관운영(총액)	110-04	전용	1,172	-	427	인건비(본부)	110-01	6.7	청년인턴 인건비·고용부담 금 마련
	320-09		125	-	87				
청사시설유지보수	260-01	전용	33	50	62	청사시설유지보수	210-07	10.30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부 족분 충당
	210-09	세목 조정	60	-	136		210-01	8.10	호우피해 복구 등
			303				210-02		
자치분권위원회운영	210-14	세목 조정	30	-	6	자치분권위원회운영	210-01	12.12	지자체간 협력 홍보동영 상 제작
국가정보자원관리 원운영(정보화)	250-02	전용	8	-	8	국가정보자원관리 원운영(정보화)	210-15	7.4	신설 대구센터 운영비 부 족분 충당
	210-07	세목 조정	33	-	9	국가정보자원관리 원운영(정보화)	210-15	6.30	신설 대구센터 운영비 부 족분 충당
			2				210-15	11.24	본원 임차료 부족분 충당
	210-14	세목 조정	90	-	85	국가정보자원관리 원운영(정보화)	210-15	9.18	대구센터 개청식 비용 지 출
			17				210-15	12.4	대구센터 원가산정 용역 비 지출
	210-16	세목 조정	4	-	1	국가정보자원관리 원운영(정보화)	210-15	6.30	신설 대구센터 운영비 부 족분 충당
지역공동체 기반조 성 및 역량강화	210-07	세목 조정	20	-	12	지역공동체 기반조 성 및 역량강화	210-01	5.11	주민자치회 권역별 설명회 회의장 임차료 지급
주민등록번호변 경위원회 운영	210-07	세목 조정	2	-	1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 운영	210-01	12.4	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부 족분 충당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14	세목 조정	20	-	32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01	7.26	공무직 특수건강검진 용 역 수행
기록물보존복원	210-14	세목 조정	3	-	17	기록물보존복원	210-01	10.30	마이크로필름 이송사업 실시
기록관리정책및 교육	210-14	세목 조정	2	-	1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10-01	4.17	인력선발 시험 보안용역 비 부족분 충당
	220-02		3	-	1		220-03	10.12	국외여비 부족분 충당
부마민주항쟁명 예회복지원	210-01	세목 조정	10	-	5	부마민주항쟁명예 회복지원	210-07	11.30	위원회 개최비용 부족분 충당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7	세목 조정	6.8	-	4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1	6.16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버스임차료 지출
			5.8					11.21	시험장 임차료 부족분 충당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이·전용등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210-14		2				210-07	4.11	감정 세탁물 위탁 용역비 부족분 충당
			19.3	-	14		210-01	6.1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용역비 지출
			2				210-09	9.15	감정 세탁물 위탁 용역비 부족분 충당
	420-02		2.57	-	3		420-03	4.12	전기차 충전설비 설계비 부족분 충당
안전사고대책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	210-01	세목 조정	30		14	안전사고대책및 재난현장종사자지원	210-16	10.25	현장종사자 격려품 지급
			1					12.19	현장종사자 격려품 지급 조달수수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10-01	세목 조정	12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10-07	11.10	자율방재역량강화 교육 수요 확대 대응
			10				210-05	11.29	부서 운영비 부족분 충당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210-01	세목 조정	20		14	지진대비인프라구축	210-14	4.20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홍보동영상 제작
정부혁신조직실	210-01	세목 조정	1		1	정부혁신조직실	210-02	12.2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재난관리실기본경비	210-02	세목 조정	5		2	재난관리실기본경비	210-01	8.2	전화요금 부족분 충당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20-01	세목 조정	3		4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20-02	12.19	재난대응 출장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10-07	세목 조정	10		5	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10-01	3.8	임차료 부족분 충당
			2				210-02	11.2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10-01	세목 조정	3		19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10-09	11.17	세종청사 중앙동 사무공간 조성
합계			2,203	284	1,013				
			전용	1,508	284	624			
			세목 조정	695	-	389			

주) 이월·불용은 이·전용등을 한 예산이 아닌 해당 세목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이·전용등의 시기가 회계연도 종료일에 가까울수록 연내 집행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용이할 것이라는 점에서, 연말에 이·전용등을 한 후 20% 이상을 미집행한 사업은 집행기관의 귀책사유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에 11월 이후 이·전용등을 한 후 20% 이상을 미집행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총 15개 세부사업(전용 4개, 세목조정 11개)의 사례가 있었음.

[2023회계연도 11월 이후 이·전용등 실시후 20% 이상 미집행 사업]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이·전용등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0-01	전용	59	-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330-01	11.27	5.18관련자 보상 재개에 사무비용 충당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20-01	전용	31	-	18	인건비(국과수)	110-01	11.15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	220-02	전용	34	-	5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	210-01	11.30	불꽃축제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충당
국가핵심기반 관리	220-01	전용	10	-	4	국가핵심기반 관리	210-14	12.13	국내여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자치분권위원회운영	210-14	세목 조정	30	-	6	자치분권위원회운영	210-01	12.12	지자체간 협력 홍보동영상 제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10-07	세목 조정	2	-	9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11.24	본원 임차료 부족분 충당
	210-14	세목 조정	17	-	85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10-15	12.4	대구센터 원가산정 용역비 지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210-07	세목 조정	2	-	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210-01	12.4	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부족분 충당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10-01	세목 조정	10	-	5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10-07	11.30	위원회 개최비용 부족분 충당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7	세목 조정	5.8	-	4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1	11.21	시험장 임차료 부족분 충당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중사자지원	210-01	세목 조정	1	-	14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중사자지원	210-16	12.19	현장중사자 격려품 지급 조달수수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10-01	세목 조정	12	-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10-07	11.10	자율방재역량강화 교육 수요 확대 대응
			10				210-05	11.29	부서 운영비 부족분 충당
정부혁신조직실	210-01	세목 조정	1	-	1	정부혁신조직실	210-02	12.2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20-01	세목 조정	3	-	4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20-02	12.19	재난대응 출장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10-07	세목 조정	2	-	5	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10-02	11.2	임차료 부족분 충당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10-01	세목 조정	3	-	19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10-09	11.17	세종청사 중앙동 사무공간 조성
합계			231	-	190				
			전용	134	-	33			
			세목 조정	97	-	157			

주) 이월·불용은 이·전용등을 한 예산이 아닌 해당 세목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미집행 금액이 이·전용등을 받은 금액 이상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전용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총 9개 세부사업(전용 2개, 세목조정 7개)의 사례가 있었음. 참고로, 이 중에서도 정부혁신조직실, 재난협력실기본경비, 자치분권위원회운영,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등 4개 세부사업은 11월 이후 이·전용등을 받았음에도 이·전용등 금액 이상을 미집행한 사례임

[2023회계연도 미집행 금액이 이·전용등 금액 이상인 사업]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이월	불용	감액(~에서)		날짜	이·전용등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정부혁신조직실	210-01	세목조정	1	-	1	정부혁신조직실	210-02	12.26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20-01	세목조정	3	-	4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20-02	12.19	재난대응 출장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자치분권위원회운영	210-14	세목조정	30	-	6	자치분권위원회운영	210-01	12.12	지자체간 협력 홍보동영상 제작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10-01	세목조정	3	-	19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210-09	11.17	세종청사 중앙동 사무공간 조성
청사시설유지보수	260-01	전용	33	50	62	청사시설유지보수	210-07	10.30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부족분 충당
기록물보존복원	210-14	세목조정	3	-	17	기록물보존복원	210-01	10.30	마이크로필름 이송사업 실시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420-03	전용	44	234	15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430-01	9.14	자재구매 주체 변경(발주청→공사업체)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14	세목조정	20	-	32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10-01	7.26	공무직 특수건강검진 용역 수행
과학수사감정지원	420-02	세목조정	2.57	-	3	과학수사감정지원	420-03	4.12	전기차 충전설비 설계비 부족분 충당
합계			140	284	159				
			전용	77	284	77			
			세목조정	63	-	8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3) 연초 이·전용등 실시

통상 연초는 예산안의 국회 심의·확정 시점과 가깝다는 점에서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이·전용등의 소요도 크지 않을 것임. 이에 연초에 이·전용등이 실시된 사업은 당초 예산안 편성이 신중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음.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중 3월 이전에 이·전용등을 실시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국과수기본경비(총액), 재난협력실 기본경비, 과학수사감정지원, 자치분권위원회운영, 대통령기록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이 있었음.

[2023회계연도 이·전용등 실시후 20% 이상 미집행 사업]

(단위: 백만원)

증액(~으로)		유형	금액	감액(~에서)		날짜	사유
세부사업	세목			세부사업	세목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11	세목 조정	2	국과수기본경비(총액)	210-01	1.20	시설관리물품 구매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20-02	세목 조정	12	재난협력실기본경비	220-01	1.31	국외출장 실시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1	세목 조정	67.6	과학수사감정지원	210-09	2.7	소모품 구입
자치분권위원회운영	320-09	전용	53	자치분권위원회운영	110-03	3.8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고용 부담금) 부족분 충당
대통령기록관리	260-01	전용	60	대통령기록관리	210-14	3.20	세목 오류 수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4) 이·전용등 번복 실시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예산 집행과정에서 특정 세부사업·세목으로부터 이·전용등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하여주거나, 다른 세부사업·세목으로 이·전용등을 한 후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다시 이·전용등 받는 사례(이하 “이·전용등 번복”)도 발생하였음. 이는 해당 세부사업·세목 예산의 향후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이·전용등을 실시한 것을 의미함.

과학수사감정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총 6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① 일반수용비(210-01)의 경우 2월 7일 6,760만 원을 세목조정 받았으나, 이후 5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억 3,900만 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주었고, 불과 하루만인 12월 28일 다시 500만 원을 세목조정받았음.

② 피복비(210-03)의 경우 6월 16일 3,460만 원을 세목조정받은 후 연말인 12월 21일 7만 원을 다시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주었음.

③ 임차료(210-07)의 경우 4월 11일 200만 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준 후, 6월 16일 680만원, 11월 21일 580만 원을 다시 세목조정 받았음.

④ 시설관리유지비(210-09)의 경우 9월 15일 20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준 후,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500만원을 다시 세목조정받았음.

⑤ 재료비(210-11)의 경우 11월 1일과 11월 27일에 각각 260만원과 8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준 후, 12월 20일과 12월 21일에 각각 2,500만원과 7만원을 다시 세목조정받았음.

⑥ 일반용역비(210-14)의 경우 4월 11일과 9월 15일 각각 200만원을 다른 세목에서 조정받은 후, 11월 20일과 12월 28일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을 다시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주었음.

[2023회계연도 과학수사감정지원 사업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일반수용비(210-01)	2.7	세목조정	67.6	소모품 구입	-	-
	5.2	-	-	-	세목조정	48.5
	6.1	-	-	-	세목조정	19.3
	6.16	-	-	-	세목조정	34.6
	6.16	-	-	-	세목조정	6.8
	6.23	-	-	-	세목조정	99
	11.21	-	-	-	세목조정	5.8
	12.20	-	-	-	세목조정	25
	12.27	-	-	-	세목조정	0.03
	12.28	세목조정	5	소모품 구입	-	-
피복비(210-03)	6.16	세목조정	34.6	개인보호구 구입	-	-
	12.21	-	-	-	세목조정	0.07
임차료(210-07)	4.11	-	-	-	세목조정	2
	6.16	세목조정	6.8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버스임차료 지출	-	-
	11.21	세목조정	5.8	시험장 임차료 부족분 충당	-	-
시설관리유지비(210-09)	9.15	-	-	-	세목조정	2
	11.1	세목조정	2.6	시스템 설치비 부족분 충당	-	-
	11.20	세목조정	21	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충당	-	-
	11.20	세목조정	15		-	-
	11.27	세목조정	0.8	시설 설치비 부족분 충당	-	-
	12.28	세목조정	5.1	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충당	-	-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재료비(210-11)	11.1	-	-	-	세목조정	2.6
	11.27	-	-	-	세목조정	0.8
	12.20	세목조정	25	재료비 부족분 총당	-	-
	12.21	세목조정	0.07		-	-
일반용역비(210-14)	4.11	세목조정	2	감정 세탁물 위탁 용역비 부족분 총당	-	-
	9.15	세목조정	2		-	-
	11.20	-	-	-	세목조정	15
	12.28	-	-	-	세목조정	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관리실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경우 총 3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① 일반수용비(210-01)의 경우 6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1,03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준 후, 10월 24일 100만원을
세목조정받고, 11월 21일 다시 85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준
후 일주일만인 11월 28일 110만원을 다시 세목조정받았음.

② 공공요금및제세(210-02)의 경우 8월 2일 500만원을 세목조정
받은 후, 11월 21일과 11월 28일 각각 110만원과 6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주었음.

③ 피복비(210-03)의 경우 8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330만원을 세목조정받은 후, 10월 24일 100만원을 다른 세목
으로 조정해주고, 11월 21일 다시 85만원을 세목조정받았음.

[2023회계연도 재난관리실 기본경비 사업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일반수용비(210-01)	6.7	-	-	-	세목조정	2
	8.2	-	-	-	세목조정	5
	8.16	-	-	-	세목조정	2
	9.18	-	-	-	세목조정	0.7
	10.5	-	-	-	세목조정	0.6
	10.24	세목조정	1	기후위기 TF 운영비 충당	-	-
	11.21	-	-	-	세목조정	0.85
	11.28	세목조정	1.1	기후위기 TF 운영비 충당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2	세목조정	5	전화요금 부족분 충당	-	-
	11.28	-	-	-	세목조정	1.1
	11.28	-	-	-	세목조정	0.6
피복비(210-03)	8.16	세목조정	2	신규 민방위복 구매비 지급	-	-
	9.18	세목조정	0.7		-	-
	10.5	세목조정	0.6		-	-
	10.24	-	-	-	세목조정	1
	11.21	세목조정	0.85	신규 민방위복 구매비 지급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재난협력실기본경비 세부사업의 경우 총 2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① 국내여비(220-01)의 경우 1월 31일 300만원을 세목조정받은 후, 12월 19일 다시 1,20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주었음.

② 국외업무여비(220-02)의 경우 1월 31일 30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준 후, 12월 19일 다시 1,200만원을 세목조정받았음.

참고로, 이 사업은 국내여비(220-01)와 국외업무여비(220-02)를 서로 세목조정을 주고 받은 것임.

[2023회계연도 재난협력실기본경비 사업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국내여비(220-01)	1.31	세목조정	3	재난대응 출장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	-
	12.19	-	-	-	세목조정	12
국외업무여비(220-02)	1.31	-	-	-	세목조정	3
	12.19	세목조정	12	국외출장 실시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세부사업의 경우에도 총 2개 세목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① 일반수용비(210-01)의 경우 6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2억 2,60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준 후, 11월 17일 다시 300만원을 세목조정받았음.

②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경우 6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2억 2,600만원을 세목조정받은 후, 11월 17일 다시 300만원을 다른 세목으로 조정해주었음.

참고로, 이 사업도 일반수용비(210-01)와 시설장비유지비(210-09)를 서로 세목조정을 주고 받은 것임.

[2023회계연도 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사업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일반수용비(210-01)	6.22	-	-	-	세목조정	100
	9.14	-	-	-	세목조정	104
	9.19	-	-	-	세목조정	12
	11.17	세목조정	3	세종청사 중앙동 사무공간 조성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22	세목조정	100	세종청사 중앙동 사무공간 조성	-	-
	9.14	세목조정	104		-	-
	9.19	세목조정	12		-	-
	11.17	-	-	-	세목조정	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분권실 세부사업의 경우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이·전용등의 번복 실시가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8월 23일 3,400만원을 다른 목으로 전용해준 후, 12월 19일 다시 2,000만원을 세목조정받았음.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분권실 사업 이·전용등 번복 실시 사례]

(단위: 백만원)

세목	날짜	증액			감액	
		유형	금액	사유	유형	금액
일반수용비(210-01)	8.23	-	-	-	전용	34
	12.19	세목조정	20	시도 공무원 간담회 실시	-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및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2023회계연도 기준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금액은 총 430억 900만원(612건)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444억 200만원의 97.0%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단체보조금 발생이자 미반환 금액은 총 33억 9,000만원(670건)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34억 9,500만원의 97.0%를 차지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및 미반환금 상계 등의 제재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보조금 미반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환받을 필요가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349-306)은 2022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해당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하여 수납받았음. 행정안전부는 회계 이관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교부와 집행잔액·발생이자 반환 간에 회계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으로 구성된 수입과목임.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에 편성·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은 총 528억 5,300만원이나 1,656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12억 5,200만원을 수납받고 444억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A)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일반회계	47,442	-	47,442	151,167	107,584	43,583	-	267,121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1,910	-	1,910	10,604	10,490	114	-	1,833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3,501	-	3,501	3,883	3,178	705	-	8,510
합계	52,853	-	52,853	165,654	121,252	44,402	-	277,464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각종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 수입과목임.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부 기타재산이자수입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에 편성·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은 총 27억 9,000만원 이나 161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6억 6,800만원을 수납받고 34억 9,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A)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일반회계	2,740	-	2,740	14,971	11,567	3,404	-	15,086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21	-	21	985	954	31	-	28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29	-	29	207	147	60	-	970
합계	2,790	-	2,790	16,163	12,668	3,495	-	16,084

나.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장기 미수납 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이하 “자치단체보조금”)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임.⁹⁾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¹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¹¹⁾에 따라 정산되며, 특히 같은 지침 제26조제4항¹²⁾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 반환되어야 함.

9)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202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1,511억 6,7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222억 7,900만원(80.9%)이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 202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149억 7,100만원 중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발생이자가 92억 600만원(61.5%)임.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반환 절차]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시 기
보조금 예산 신청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중앙관서의 장)	전년도 4월
↓		
보조금 예산 요구→편성→승인	행정안전부(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 → 국회	전년도 5월~12월
↓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중앙관서의 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당해연도 1월~
↓		
보조금 교부·집행	행정안전부(중앙관서의 장) → 시·도 (→ 시·군·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19조	당해연도 1월~
↓		
보조금 집행실적 (결산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중앙관서의 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익년도 ~2월
↓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중앙관서의 장) → 시·도 (→ 시·군·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반환금 확정 및 반환고지서 발부	익년도 2월~
↓		
반환금 예산 편성·승인 (통상 추정예산)	시·도 (또는 시·군·구)	익년도 중
↓		
반환금 납부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중앙관서의 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익년도 12월말까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

□ 그러나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중 상당액은 수납 기한 내에 반환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미반환 금액이 행정안전부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기준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금액은 총 430억 900만원(612건)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444억 200만원의 97.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이 중 324억 3,200만원(224건)은 최초 수납기한이 2022년 이전으로서 1년 이상 반환이 지연된 것이며, 2억 9,200만원(11건)의 미반환 금액은 2014년부터 9년 이상 반환이 지연된 것임.

[2023회계연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최초 수납기한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	건수	2	-	-	-	-	1	-	4	6	31	44
	액수	2	-	-	-	-	81	-	57	22,757	485	23,383
B	건수	1	-	-	2	-	-	-	4	44	55	106
	액수	56	-	-	32	-	-	-	10	3,961	1,249	5,307
C	건수	-	-	-	-	-	-	-	4	5	28	37
	액수	-	-	-	-	-	-	-	54	663	2,719	3,435
D	건수	-	1	2	3	5	-	-	12	4	26	91
	액수	-	5	131	783	62	-	-	157	90	1,358	2,585
E	건수	1	-	-	-	-	-	-	25	37	28	91
	액수	16	-	-	-	-	-	-	336	630	748	1,729
F	건수	1	1	-	1	-	-	-	-	4	69	76
	액수	2	17	-	203	-	-	-	-	197	1,053	1,473
G	건수	1	-	-	1	-	1	-	-	7	18	28
	액수	30	-	-	369	-	18	-	-	156	808	1,381
H	건수	-	-	-	1	-	-	-	6	8	56	71
	액수	-	-	-	0.01	-	-	-	17	96	1,090	1,202
I	건수	3	-	-	-	-	-	-	-	-	18	21
	액수	164	-	-	-	-	-	-	-	-	851	1,015
J	건수	1	-	1	-	-	-	-	2	10	11	25
	액수	15	-	6	-	-	-	-	23	91	664	798
K	건수	-	-	-	4	-	-	-	1	2	16	23
	액수	-	-	-	8	-	-	-	9	22	243	282
L	건수	-	-	-	-	-	-	-	2	-	13	15
	액수	-	-	-	-	-	-	-	43	-	115	158

구분		최초 수납기한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M	건수	1	-	-	-	-	-	-	-	1	8	10
	액수	8	-	-	-	-	-	-	-	46	94	147
N	건수	-	-	-	-	-	-	-	-	-	2	2
	액수	-	-	-	-	-	-	-	-	-	50	50
O	건수	-	-	-	-	-	-	-	-	-	5	5
	액수	-	-	-	-	-	-	-	-	-	39	39
P	건수	-	-	-	-	-	-	-	-	1	3	4
	액수	-	-	-	-	-	-	-	-	1	19	19
Q	건수	-	-	-	-	-	-	-	-	-	1	1
	액수	-	-	-	-	-	-	-	-	-	4	4
합계	건수	11	2	3	12	5	2	-	60	129	388	612
	액수	292	22	136	1,395	62	99	-	705	28,710	11,588	43,009

주 1) 최초수납기한이 2024년 이후인 경우는 제외하고 집계 / 기초자치단체 미반환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집계

2) 상기 표의 연도는 해당 집행잔액의 귀속 회계연도가 아니라 해당 집행잔액의 수납기한임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 2023회계연도 기준 자치단체보조금 발생이자 미반환 금액은 총 33억 9,000만원(670건)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미수납액 34억 9,500만원의 97.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이 중 27억 100만원 (220건)은 최초 수납기한이 2022년 이전으로서 1년 이상 반환이 지연된 것이며, 40만원(1건)의 미반환 금액은 2014년부터 9년 이상 반환이 지연된 것임.

[2023회계연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발생이자 미반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최초 수납기한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	건수	-	-	-	-	-	-	-	6	7	41	54
	액수	-	-	-	-	-	-	-	3	2,514	197	2,714
2	건수	-	-	1	-	-	-	-	7	46	62	116
	액수	-	-	0.3	-	-	-	-	1	55	53	109
3	건수	-	-	-	-	-	-	-	19	38	30	87
	액수	-	-	-	-	-	-	-	19	7	62	89
4	건수	-	-	-	-	-	-	1	5	2	35	43
	액수	-	-	-	-	-	-	0.03	2	13	72	87
5	건수	-	-	-	1	-	-	-	10	9	61	81
	액수	-	-	-	0.1	-	-	-	8	8	71	87
6	건수	-	-	-	2	6	-	-	12	5	24	49
	액수	-	-	-	2	1	-	-	5	4	55	66
7	건수	-	-	-	1	-	-	-	-	4	16	21
	액수	-	-	-	33	-	-	-	-	5	14	51
8	건수	-	-	-	-	-	-	-	-	-	6	6
	액수	-	-	-	-	-	-	-	-	-	49	49
9	건수	-	-	-	-	-	-	-	-	-	28	28
	액수	-	-	-	-	-	-	-	-	-	39	39
10	건수	1	-	-	1	-	2	1	-	7	77	89
	액수	0.4	-	-	1	-	1	0.003	-	1	32	35
11	건수	-	-	-	4	-	-	-	3	4	26	37
	액수	-	-	-	12	-	-	-	1	1	18	31
12	건수	-	-	-	-	-	-	-	3	8	13	24
	액수	-	-	-	-	-	-	-	1	3	9	13
13	건수	-	-	-	-	-	-	-	2	-	13	15
	액수	-	-	-	-	-	-	-	1	-	7	8
14	건수	-	-	-	-	-	-	-	-	1	8	9
	액수	-	-	-	-	-	-	-	-	0.4	4	5
15	건수	-	-	-	-	-	-	1	-	-	4	5
	액수	-	-	-	-	-	-	0.0009	-	-	4	4
16	건수	-	-	-	-	-	-	-	-	-	4	4
	액수	-	-	-	-	-	-	-	-	-	3	3
17	건수	-	-	-	-	-	-	-	-	-	2	2
	액수	-	-	-	-	-	-	-	-	-	0.3	0.3
합계	건수	1	-	1	9	6	2	3	67	131	450	670
	액수	0.4	-	0.3	47	1	1	0.006	40	2,611	689	3,390

주 1) 최초수납기한이 2024년 이후인 경우는 제외하고 집계 / 기초자치단체 미반환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집계

2) 상기 표의 연도는 해당 발생이자의 귀속 회계연도가 아니라 해당 발생이자의 수납기한임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반납을 독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세출예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반납금액과 미수납 현황을 연계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고,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납을 독려중”이라는 이유로 “조치완료”되었다고 국회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였음.¹³⁾

□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¹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종류의 사무·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미반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 없이도 이미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미반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상황임.

13) 대한민국정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과」, 2024.5., p.831.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미반환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3131-303), 재해위험지역정비(2635-300/2638-302),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1349-306),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2634-304), 자원봉사활성화지원(1141-302) 등 2024년 현재까지 계속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미반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상황임.

[2023회계연도 기준 재정사업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현황(일부)]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최초 수납기한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건수	-	-	-	-	-	-	-	52	117	268	437
	액수	-	-	-	-	-	-	-	612	3,293	7,005	10,910
재해위험지역 정비	건수	3	1	-	8	-	-	-	-	-	-	12
	액수	160	5	-	1,353	-	-	-	-	-	-	1,517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건수	-	-	-	-	-	-	-	-	-	15	15
	액수	-	-	-	-	-	-	-	-	-	2,847	2,847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건수	8	1	2	-	-	-	-	-	-	6	17
	액수	133	17	24	-	-	-	-	-	-	18	191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건수	-	-	-	-	-	-	-	1	-	17	18
	액수	-	-	-	-	-	-	-	34	-	313	347

주) 최초수납기한이 2024년 이후인 경우는 제외하고 집계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회계연도 기준 재정사업별 보조금 발생이자 미반환 현황(일부)]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최초 수납기한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건수	-	-	-	-	-	-	-	2	-	15	17
	액수	-	-	-	-	-	-	-	17	-	333	35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건수	-	-	-	-	-	-	1	55	107	307	470
	액수	-	-	-	-	-	-	0.03	19	63	198	281
재해위험지역 정비	건수	1	-	1	7	1	-	-	-	-	-	10
	액수	0.4	-	0.3	47	0.06	-	-	-	-	-	48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건수	-	-	-	-	-	-	-	2	-	28	30
	액수	-	-	-	-	-	-	-	1	-	28	29

주) 최초수납기한이 2024년 이후인 경우는 제외하고 집계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제재수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보조금 장기 미반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환받을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와 집행잔액·발생이자 반환 간 회계 일치 필요

□ 행정안전부 소관 자치단체보조 사업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은 2022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해당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회계가 이관된 후에도 동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하고 이를 수납받았음.

□ 이와 같이 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하고 집행잔액·발생이자는 일반회계로 반환받는 것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¹⁵⁾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설치 목적¹⁶⁾의 실현을 제약할 수 있음.

15)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3131-303)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해당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계 이관사업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와 집행잔액·발생이자 반환 간에 회계 불일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세 출】

【의정관실】

1. 국경일 등 정부행사(2131-300)

- 의정관은 휴일에 개최되는 정부의전행사에 근무한 직원에게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행사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된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지침이 아니며, ‘정부의전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현행 시간외근로수당, 대체휴무 등의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사수당의 필요성, 지급 대상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민 방한 환영행사에서 행사장 설치 등 행사운영 경비를 여러 건의 지출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한 바, 이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관서운영경비 제도 운용 시 제한금액 이상의 지출을 분할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경일 등 정부행사’ 사업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하고 국민방한 공식 환영식 및 대통령·국무총리 해외 순방 공항 환·송영 행사 등 정부의전행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5억 8,400만원 중 14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500만원을 불용¹⁷⁾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경일 등 정부행사	1,584	-	-	-	1,584	1,449	-	135	1,805

17) 불용사유 : 국민방한 공식환영식 등 정부 의전행사 미집행 잔액

나. 행사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는 국경일 행사와 국민방한 및 대통령 해외순방 환송·환영 행사 등 정부의전행사를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전행사 행사수당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정부의전행사가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근무직원들의 근로 보상 차원에서 행사 근무자에게 행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023년도 행사수당 지급내역]

구 분			집 행 액	지급대상	지급기준
국민방한 및 대통령 해외순방 환송·환영 행사	신년 국립묘지참배 행사		400천 원	행사담당 근무자	1인당 50,000원 지급
	국민 환영행사		550천 원		
	공항행사		3,050천 원		
	합 계		4,000천 원		
국경일 경축행사	3·1절 기념식 행사	행사요원 118명	5,900천 원	<행사요원> ① 행사담당 근무자, ② 행사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등	
	광복절 경축식 행사	행사요원 157명	7,850천 원		
	한글날 경축식 행사	행사요원 77명	3,850천 원		
	개천절 경축식 행사	행사요원 115명	5,750천 원		
	합 계		23,350천 원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의전행사 행사수당 집행지침」 (행정안전부)

1. 목적

휴일에 개최되는 정부의전행사(국경일 행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 해외방문 공항 환송·영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과 근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사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2. 집행대상

- ① 국경일 행사 근무자
- ② 대통령 및 국무총리 해외방문 공항 환송·영 행사 근무자
- ③ 신년 국립묘지참배 행사 근무자
- ④ 기타 의정담당관이 인정하는 행사 근무자

3. 집행금액

1회 1인당 50,000원을 지급함

4. 예산과목

국경일 등 정부행사-운영비-일반수용비(2000-2031-300-210-01)

5. 시행일

2012. 2. 4일 이후 행사부터 적용함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의 행사수당 지급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첫째,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지침’의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¹⁸⁾에 따라 발령하고 관리되고 있으나, 「정

1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5조(훈령·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업무편람을 작성·활용하는 경우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의전행사 행사수당 집행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된 것이 아닌 내부결재 공문으로, 이에 근거한 행사 수당 지급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정부의전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휴일 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행사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간외근무수당¹⁹⁾을 대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행사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이번에 신설(2024.7.30.)된 지방자치단체 행사 차출 경비는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²⁰⁾하고 있고, 공무원의 당직비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음.

1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

[별표 7의1]

- ① 경비성격 : 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행사 차출 경비)
- ② 기 준 액 : 반일(4시간 이하) 근무시 6만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시간외 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및 대체 휴무 부여(8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와 병행 불가
 - ※ 국가 정책적 사무를 위해 지방공무원이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적용
- ③ 지급경비는 사무관리비(201-01)로 편성

- 둘째, 행사수당의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①정부의전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②국경일 경축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①정부의전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정부의전행사 준비는 통상 심야·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져 출퇴근 시간 지정이 어려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행행사는 대부분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짐에 따라 근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사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①정부의전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정부의전행사가 **본연의 업무 수행**이며, 공행행사 등 외부행사 시 출장비(교통비, 일비, 식비 등)를 지원받고 있으며,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심야·새벽 등에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4.7.22.)」에 따라 출장중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휴일 또는 심야·새벽 등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현행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²¹⁾ 등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2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다만, ‘②국경일 경축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등’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024.7.22.)」에 따르면 휴일의 교육참가, 행사동원 시의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명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휴일에 국경일 행사에 동원되는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은 시간외근무명령이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근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사에 동원된 직원에게는 행사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행사수당과 유사하게 휴일에 시험감독으로 동원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²²⁾에 따라 시험관리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내부결재 공문에 근거한 부적절한 행사수당의 지급을 시정하고, 국경일 행사에 동원되는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는 행사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참고로,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음(2024.3.26.). 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현행 일4시간·월57시간)하고,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관서운영경비 분할집행을 통한 행사대행 비용 지급 관행 개선 필요

- 행정안전부는 국민 방한 환영식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장 설치 (환영식 무대단상 및 촬영단상 등) 등 행사 운영의 일부를 외부 대행하였으며, 행사대행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목) 비목에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음.
- 그런데 행사대행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여러 건의 지출로 나누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바, 이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음.

[환영식 행사경비 집행 내역]

세부사업명	세목	지급일	지급업체	건명	지급액	비고
국경일등 정부행사	일반 수용비 (210-01)	'23.05.12	에OO OO	환영식 우천대비 비닐막 설치	2,200,000원	국민 환영식
				환영식 로드합판 제작	3,850,000원	
				환영식 행사장 설치	4,950,000원	
				환영식 행사장 철거	4,180,000원	
				환영식 카메라 촬영단상 시공	4,290,000원	
				합 계	19,470,000원	
		'23.11.21	에OO OO	환영식 로드합판 설치	3,102,000원	국민 환영식
				환영식 무대 단상 설치	3,597,000원	
				환영식 행사장 철거	4,642,000원	
				환영식 촬영단 설치	4,840,000원	
				합 계	16,181,000원	

□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 서류를 검토하여 지출관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다만,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해당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함)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4조에서 예외적으로 간이한 지출 절차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²³⁾ 이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에 해당될 경우, 재무관 및 지출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직접 해당 지출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

23)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서운영경비의 해당 범위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²⁴⁾에 따라 건당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한됨. 이처럼 관서운영경비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경미한 지출이 아닌 건에 대해서도 관서운영경비 제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한 재무관과 지출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예산지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월 12일 및 11월 21일 일반수용비(210-01)로 지출된 행사대행 비용의 경우,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날짜에 500만원 미만의 금액이 여러 건 지급되었는데, 해당 행사대행 비용은 한 업체를 통해 이루어졌고 국민방한 환영식 행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각의 집행을 별건의 지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즉, 재무관의 지출행위를 거쳐야 할 계약을 건당 5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결제한 것으로, 이는 관서운영경비 제도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이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4)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 또한, 행정안전부는 해당 행사대행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 비
목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
되는 기본 행정사무비, 물품구입비 등을 위한 비목임을 고려할 때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
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일반용역비
(210-14)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사대행에 대해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대행함에 따른 제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민방한 환영식 행사장 설치 및 철거 등 행사대행 비용은 행사
운영의 일부를 외부에 대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일반용역비
(210-14)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고금 관리법」상 관서운영경비 제도 운용
시 제한금액 이상의 지출을 분할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고, 향후 행사대행 비용 예산은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
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
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
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
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 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
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
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 삭제
5.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 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도
인건비(110)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여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안보비(27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정보보안비(28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디지털정부혁신실】

2. 지식기반의 행정구축(정보화)(1932-505)

-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는 연례적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타 내역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범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온-나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사업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선정한 우수과제의 표절 여부 심사를 내역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내역과 달리 정책연구관리 안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운영 및 이용안내 또는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에 집행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에 차이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온-나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은 민간·학계와의 지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범정부 지식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며, 정책연구 성과점검 등을 통하여 정책연구과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억 4,400만원 중 3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²⁵⁾하였음.

25) 불용 사유: 일반연구비 낙찰 차액 및 공공요금·임차료 집행 잔액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344	-	-	-	344	334	-	10	72
지식행정 활성화	45	-	-	-	45	40	-	5	43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관리	31	-	-	-	31	31	-	-	29
단순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한 효율적 행정구축	268	-	-	-	268	263	-	5	-

나. 예산범위 내 사업추진 여부 검토 및 소요비용의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은 지식행정 활성화, 온-나라 정책연구용역 관리(이하 “정책연구성과점검”이라 함²⁶⁾), 단순반복업무자동화를 통한 효율적 행정구축(이하, “RPA²⁷⁾”라 함)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내역사업들의 일반수용비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각 내역사업의 예산이 타 내역사업에

26) 행정안전부 설명자료는 동 내역사업을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 관리 또는 온-나라 정책연구용역 관리로 혼용하고 있으나,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PRISM)에 대한 관리는 2022년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관되었으며, 그 이후 동 내역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에 대한 성과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7) Robotic Process Automation(RPA): 인간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Software로 자동화하는 기술

집행된 사례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정책연구성과점검과 RPA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의 각각 50%, 68.1%를 타 내역사업에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정책연구성과점검 사업 일반수용비의 40.1%를 타 내역사업에 집행하였음.

[일반수용비의 내역사업 간 집행 현황 비교(2022-2023년)]

(단위: 천 원, %)

내역사업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산액	원 내역사업 집행액	타 내역사업 집행액	예산액	원 내역사업 집행액	타 내역사업 집행액
지식행정 활성화	32,534	31,067	1,200	27,200	26,978	—
		(95.5)	(3.7)		(99.2)	
정책연구 성과점검	30,480	15,155	15,251	29,900	17,783	11,993
		(49.7)	(50.0)		(59.5)	(40.1)
RPA	18,000	3,460	12,259	18,000	17,818	—
		(19.2)	(68.1)		(99.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 각 내역사업에서 타 내역사업으로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지식대상²⁸⁾ 개최와 관련한 상장 제작, 시상식 행사장 설치 및 운영, 수상 사례집 제작 등에 집행하고 있음.

28) 제1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24.5.)

- 목적: 지식행정·지식경영 등 지식관리를 통해 정부혁신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기관을 발굴·시상하고, 그 성과를 확산
- 주최·후원: 행정안전부 주최, 매일경제 후원
- 대상: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시도·시군구·교육청)의 지식행정 성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의 지식경영 성과
- 시상규모: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3점, 장관상 8점, 매일경제회장상 7점
※ 응모기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규모는 변동 가능
- 상금: 대통령상 각 150만원, 총리상 각 100만원, 장관상 각 50만원 / 총1,000만원
- 시상식: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2024년 세계지식포럼 행사기간 중 개최
※ 2024 세계지식포럼: 2024.9.9.~11. 개최 예정

[일반수용비의 타 내역사업 집행액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지급연월	건명	지급액	비고
2022년	2022-04	2022년 중앙부처 RPA 과제 공모전 발표심사 평가수당 지급	1,200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 예산
		소계	1,200	→ RPA 사업 집행
	2022-12	2022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상장 제작	4,840	정책연구성과점검 사업 예산 → <u>지식행정 활성화 사업</u> <u>집행</u>
	2022-12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 행사장 설치물 제작비용 지급	4,917	
	2022-12	대한민국 지식대상 사례집 제작비 지급	4,994	
	2022-12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 진행비 지급	500	
		소계	15,251	
	2022-12	대한민국 지식대상 기념품 등 구입비 지급	4,968	RPA 사업 예산 → <u>지식행정 활성화 사업</u> <u>집행</u>
	2022-12	지식대상 시상식 무대 운영비 지급	2,420	
	2022-12	지식대상 소개 및 시상식 진행 영상 제작비 지급	3,971	
	2022-12	2022년 지식행정 및 정책연구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모바일 문화상품권 구입	900	
		소계	12,259	
2023년	2023-10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 행사장 소요비용 지급	3,740	정책연구성과점검 사업 예산 → <u>지식행정 활성화 사업</u> <u>집행</u>
	2023-11	2023 세계지식포럼 등록비 지급	3,600	
	2023-12	2023년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사례집 제작비 지급	4,653	
		소계	11,99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관련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및 집행액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약 2,500만원을 편성하여 약 5,500만원(편성액의 2.2배)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약 2,200만원을 편성하여 약 3,700만원(편성액의 1.7배)을 집행하였는바,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고려하면 예산 편성 시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관련 일반수용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 성	집 행
2022 년도	■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시상 및 발표 세션 운영: 24,560 -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15,560 ·대한민국 지식대상 실무협의회 운영 : 1,000 ·웹 배너(5종) 제작: 1,000 ·서면심사 자료 인쇄: 3,000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수당: 3,360 ·최종심사 수당: 1,200 ·지식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2,000 ·상장 및 상패 제작: 4,000 -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 및 발표 세션 운영: 9,000 ·지식포럼 자료집, 리플릿(300부) 인쇄 : 4,000 ·기념품 제작: 2,000 ·지식대상 시상식 무대설치, 현수막 및 행사진행 등: 3,000	■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시상 및 발표 세션 운영: 54,603 ·배너 제작: 660 ·리플릿 제작: 4,871 ·기념품 구입: 4,968 ·지식행정 우수 사례집 발간: 4,994 ·상장 및 상패 제작: 4,840 ·시상식 무대설치, 행사진행 등: 14,118 ·심사수당 지급: 3,945 ·심사자료 인쇄: 457 ·영상 제작: 4,950 ·2022 세계지식포럼 등록: 10,800
2023 년도	■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시상 및 발표 세션 운영: 22,000 -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11,000 ·심사수당: 5,000 ·우수사례집 제작 및 인쇄: 3,000 ·상장 및 상패 제작: 3,000	■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시상 및 발표 세션 운영: 37,019 ·배너 제작: 1,048 ·리플릿 제작: 1,254 ·기념품 구입: 1,771 ·지식행정 우수 사례집 발간: 4,877

구분	편 성	집 행
	-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 및 발표 세션 운영: 11,000 · 지식포럼 자료집, 리플릿 인쇄 : 3,000 · 기념품 제작: 2,000 · 지식대상 시상식 무대설치, 현수막 및 행사진행 등: 2,000 · 특강 강사료 및 다과: 4,000	· 상장 및 상패 제작: 4,954 · 시상식 무대설치, 행사진행 등: 6,220 · 심사수당 지급: 6,095 · 2022 세계지식포럼 등록: 10,8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 2023년에는 배너·기념품·리플릿 제작과 시상식 무대 설치 및 행사 진행 비용을 줄이는 등 2022년에 비해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의 68%에 해당하는 약 1,500만원을 더 집행하였고, 초과된 비용 중 대부분을 타 내역사업인 정책연구성과점검 사업에서 충당하였음. 또한 2024년에도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관련 일반수용비는 2023년과 유사한 수준²⁹⁾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를 위한 집행 규모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정책연구성과점검 사업에서 집행³⁰⁾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국회에서의 심사 기준이 되는 항목은 세부 사업 단위이고³¹⁾,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도 세부사업 기준으로

29)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약 2,600만원으로 400만원 증가하였는데, 2023년도에 비해 자료집 및 리플릿 인쇄비가 200만원 감소하였고, 특강 강사료가 20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동안 매년 집행하였으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세계지식포럼 등록비를 800만원 반영하였음

30) 3개 내역사업 중 단순반복업무자동화를 통한 효율적 행정구축(RPA) 사업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중앙 부처 대상 공모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여 자동화된 업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2024년부터는 종료된 사업임.

31) 박기영, 《한국재정》, 법우사, 2018, p.355. 참고

- 주요 사업들이 세항(단위사업)과 세세항(세부사업)에 편성되고 있는 결과, 실제 국회에서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은 세부사업 단위이다.

예산 각 비목의 명세를 기재³²⁾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사업의 하위 단위인 내역 사업 간의 탄력적인 예산 운용은 불가피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는 매년 추진³³⁾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 이전 연도의 사업 추진 사례를 통해 소요 비용 예상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범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32) 2023년도 행정안전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중 지식기반의 행정구축 사업(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명세 (단위: 천원)

[505]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344,000
[210]운영비		80,000
[210-01]일반수용비		75,000
1.지식행정담당자워크숍및포럼개최		2,000
가.자료집인쇄,기념품구입,강사료,음료및다과등	1회*2,000,000원=	2,000
2.온-나라지식활성화		3,000
가.우수지식인및커뮤니티보상	10명*200,000원=	2,000
나.우수업무편람등지식행정관련공모전	5명*200,000원=	1,000
3.지식행정·경영우수사례발굴·선정(지식대상)		11,200
가.지식대상심사수당	1회*5,000,000원=	5,000
나.우수사례응모자료및사례집인쇄	500권*6,000원=	3,000
다.상장및상패제작	16개*20,000원+16개*180,000원=	3,200
4.대한민국지식대상시상및세션(세계지식포럼)운영		11,000
가.지식대상자료집,리플릿인쇄비	500부*6,000원=	3,000
나.특강및기념식강사료,음료및다과	1회*5,000,000원=	5,000
다.행사기념품제작	200개*10,000원=	2,000
라.지식대상시상식무대설치,현수막및행사진행등	1회*1,000,000원=	1,000
5.중앙행정기관정책연구성과점검비		29,900
가.중앙행정기관정책연구성과점검비	1,300건*23%*100,000원=	29,900
6.단순반복업무 자동화(RPA) 범정부 확산		18,000
가. RPA 관련 전문가 자문 등	250,000원*6회*6명=	9,000
나. RPA 관련 교육 등	1,500,000원*6회=	9,000
7.계수조정	-100,000원=	△100

33)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2012년에 시작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 9월에 제13회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 2012년(제1회)~2019년(제8회): 행정안전부-매일경제 공동 주최
 - 2020년(제9회)~현재: 행정안전부 주최, 매일경제 후원

다.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 내역을 반영한 산출 근거 제시 필요

- 지식기반의 행정구축의 내역사업인 ‘정책연구성과점검³⁴⁾’ 사업은 정책연구 성과점검 및 우수 정책연구 선정 등³⁵⁾을 통해 정책연구 품질을 제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록을 통해 정책연구과정의 전자적 관리 및 연구결과의 공동이용³⁶⁾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³⁷⁾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의 성과점검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각각 3,000만원과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성과점검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정책연구성과점검	31	-	-	-	31	31	-	-	29
일반수용비	30	-	-	-	30	30	-	-	28
국내여비	1	-	-	-	1	1	-	-	1

34) 동 내역사업의 원래 명칭은 ‘온-나라 정책연구용역 관리’이며, 앞 주제의 검토보고에서 ‘정책연구성과점검’으로 약칭하였음.

3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등에 대한 기관별 자체 점검 후 행정안전부의 종합점검을 거쳐 그 결과를 각 기관과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고 있음.

3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7) PRISM의 주요 기능(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s://www.prism.go.kr>)

- 연구정보의 제공: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
- 연구정보의 관리: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

□ 정책연구성과점검 사업의 2023년도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선정한 우수과제의 표절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약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약 1,800만원은 정책연구 관리절차 등 안내, 우수 정책연구 대상 모바일 상품권 구입,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운영 및 이용안내 등에 사용하고, 약 1,200만원은 타 내역 사업인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의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관련 비용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에 차이가 있음.

[정책연구성과점검 사업의 일반수용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천원)

편 성	집 행
■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30,480 -1,300개(전년도 공개과제) × 23%(기관 선정 우수과제, 심사대상) × 100천원(표절검사비) = 30,480	■ 정책연구 성과점검 등: 17,784 -정책연구관리 추진 절차 안내영상 제작: 4,950 -정책연구 업무편람 제작: 4,417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 안내물 제작: 1,540 -우수 정책연구 대상 모바일상품권 구입: 4,950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웹 보안 인증서 갱신비용 : 165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도메인 이름 연장 비용 : 129 -지식행정 및 정책연구관리 유공 표창장 제작 : 133 -소모품 구입: 1,500 ■ 대한민국 지식대상 개최, 시상 및 발표 세션 운영: 11,993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 행사: 3,740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사례집 제작: 4,653 -2023 세계지식포럼 등록비: 3,6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재구성

- 동 사업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예산 약 3,000만원 중 표절 여부 검사에는 각각 약 400만원을 집행하고³⁸⁾, 나머지 예산은 우수 정책연구 선정위원 심사수당,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제작에 사용하는 등 2023년도와 집행 내역이 유사한데, 2024년 예산 또한 2023년과 동일한 내역으로 편성³⁹⁾되어 있어, 실제 집행 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관리 및 공동이용을 지원하고,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⁴⁰⁾, 동 사업에서 영상 또는 편람 제작 등을 통해 정책연구관리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동 규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연례적으로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성과점점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38)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내역에 집행이 없었으나, 2024년에는 그 이전 연도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표절 여부 심사를 수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39) $1,300\text{개}(\text{전년도 공개과제}) \times 21.5\%(\text{기관 선정 우수과제, 심사대상}) \times 100\text{천원}(\text{표절검사비}) = 28,000\text{천원}$

4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와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3. 전자정부지원(정보화)(2031-500)

- 2023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은 7개 과제 중 2개 과제의 예산을 전액 2024년도로 이월하였음. 예산을 대규모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 기준으 이루어지는 결산에서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없는바, 행정안전부는 예산 전액 또는 대부분의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제 사업 집행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023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중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1차 사업’은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주관기관이 사업 추진 어려움을 사유로 취소를 요청하여 불용한 것이기는 하나,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되어, 동 과제 추진에 있어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가. 개 요

□ ‘전자정부지원(정보화)’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이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기반 조성, 다수 정보시스템의 융·복합, 국정과제 추진 또는 긴급한 사회현안 해결 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사업⁴¹⁾으로,

41)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493억 9,100만원 중 473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을 불용⁴²⁾하였음.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15. (생략)

「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기반 조성사업
 2.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3. 국정과제 추진 또는 긴급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4조,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삭제
 - 3.~6. (생략)
- 42) 불용 사유: 주관기관 요청에 따른 사업 취소
※사업 취소 요청 사유 -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관련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및 법제처(정부 제출 추진 법률안) 심사 보류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자정부지원(정보화)	49,391	-	-	-	49,391	47,391	-	2,000	12,589
전자정부지원 사업추진	47,091	-	-	-	47,091	45,091	-	2,000	12,014
전자정부지원 사업 기반조성	2,300	-	-	-	2,300	2,300	-	-	575

나. 실적행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주의 필요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과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반조성’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은 행정기관등이 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된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⁴³⁾⁴⁴⁾,

43)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4조,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삭 제>

3.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집행잔액"이란 사업대상 및 범위의 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사업 발주를 통해 발생하는 낙찰차액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반조성’은 행정기관등의 사업제안이나 수요 조사 또는 공모 및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통한 지원 대상과제 선정, 지원 대상과제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및 전문기관의 검토·조정을 통한 사업계획 확정, 주관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제출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검토·보완,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지원 과제별 추진실태 및 성과 점검 등 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운영·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집행되는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3년도 출연금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정부지원 사업 전체의 실집행률은 54.9%(493억 9,100만원 중 271억 100만원 실집행)이고, 내역사업별로는 ‘전자정부지원 사업 추진’이 54.7%(470억 9,100만원 중 257억 5,500만원 실집행),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반조성’은 58.5%(23억원 중 13억 4,600만원 실집행)임.

을 의미한다.

- 44) 예를 들면, 2023년 지원 대상과제(7개)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주관기관)에서 ‘소상공인 비대면 기반 정책 지원 플랫폼(지원 대상과제)’을 구축하도록 하는 과제가 있었으며,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해당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였음.

[2023회계연도 전자정부지원(정보화)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행정안전부 집행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실집행			
	예산액 (A)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실집행액 (B)	실집행 비율 (B/A)	이월액
전자정부지원(정보화)	49,391	47,391	2,000	47,391	27,101	<u>54.9</u>	20,290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47,091	45,091	2,000	45,091	25,755	<u>54.7</u>	19,336
-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반조성	2,300	2,300	-	2,300	1,346	<u>58.5</u>	954

※자료: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4.9%로 저조한 것은 ‘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의 7개 과제⁴⁵⁾ 중 ‘클라우드기반 범정부지능형통합 콜센터시스템 구축 2차 사업⁴⁶⁾’과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사업⁴⁷⁾’에 편성된 예산 151억 7,300만원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기 때문임⁴⁸⁾.

□ 구체적으로 ‘클라우드기반 범정부지능형통합콜센터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은 2022년도 사업으로 추진된 1차 사업의 예산(93억 6,800만원)을

- 45) 1.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차 2.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3. 소상공인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2차 4.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4차
5.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구축 2차
6.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 3차 7.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46)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시스템을 표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공동활용하고 지능형 자동상담 및 상담도움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대국민 상담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사업임.
- 47) 급증하는 다양한 전자기록의 생산·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저장소 통합체계 구축 및 표준시스템 구축·보급, 클라우드 전환 등 전면 개편을 통하여 공공부문 기록관리의 효율성과 연속성 확보려는 사업임.
- 48)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의 실집행이 저조함에 따라 동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기반조성’도 실집행이 저조하였음.

전액 2023년도로 이월하여 2023년 11월에 마무리하였고, 1차 사업의 지연에 따라 2023년도의 2차 사업 예산(114억 2,800만원)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사업’ 또한 2022년도 사업으로 추진된 3차 사업의 예산(30억 5,000만원) 중 70.2%(21억 4,000만원)를 2023년도로 이월하여 2023년 9월에 마무리하였고, 3차 사업의 지연에 따라 2023년도의 4차 사업 예산(37억 4,500만원)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2024년도로 이월하였음.

[전자정부지원사업 집행 부진 과제의 실집행 및 사업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회계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업계획	
						당초	변경
클라우드기반 범정부 지능형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1차	2022년	9,368	-	9,368	2022년 연내 완료	2023.4.12. ~2023.11.8.
	2차	2023년	11,428	-	11,428	2023년 연내 완료	2024.4.3. ~2024.10.30.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3차	2022년	3,050	910	2,140	2022년 연내 완료	2023.2.28. ~ 2023.9.26.
	4차	2023년	3,745	-	3,745	2023년 연내 완료	2024.2.13. ~2024.9.10.

※자료: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지원사업과제제안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대상과제를 선정⁴⁹⁾하는데, 2023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49)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조(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① 장관은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선정 기준을 정한 뒤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사업의 경우 제4호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검토는 2021년 12월과 2022년 3월에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2022년 1월 및 2022년 4월에 동 과제들을 포함한 2023년도 지원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⁵⁰⁾하였는바, 지원 대상사업 검토 및 선정 시기에는 동 과제들의 2022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임.

□ 다만, 지원 대상과제 선정 이후에도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각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확인⁵¹⁾할 수 있는바, 2022년 8월~9월에 있었던 실태점검 당시 클라우드기반 범정부지능형통합콜센터시스템 구축 1차 사업과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3차 사업은 발주되지 않아 점검 대상에서 제외⁵²⁾되었으며,

-
1. 사업 목적 및 지원 필요성
 2. 업무 현황,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3. 사업 내용 및 서비스대상
 4. 성과지표 및 정의서
 5. 연차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그 밖에 사업 특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 적합 여부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성
3.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예산규모 적정성
4. 국정과제, 신기술의 발달, 전자정부 주요 정책 등을 고려한 우선 추진 필요성
5.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결과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이행 현황
6. 그 밖에 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및 제32조에 따른 전년도 성과점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0) ‘클라우드기반 범정부지능형통합콜센터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은 2021년 12월,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사업’은 2022년 3월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쳤고, 각각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에 지원 대상사업 선정 사실이 통보되었음. (‘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요과제 내·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1)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9조(추진실태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안 실태, 하도급실태, 보안성 검토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 계획과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진실태 점검 결과와 주관기관의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 계획이 이행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52) 2022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실태점검은 2022.8.29.~2022.9.2.에 실시하였으며, 동 추진실태점검에서는 22년 추진 중이었던 11개 사업 중 미발주된 2개 사업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22년 12월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의 협약 변경 시에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고⁵³⁾, 2023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조정 등 절차⁵⁴⁾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지능형통합콜센터시스템 구축 2차 사업과 기록 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사업을 연내 집행하기 어렵고 예산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이월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53) 동 과제들에 대해서는 2022.12.6. 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이 2023.9.30.까지로 변경되었고,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지능형통합콜센터시스템 구축 1차 사업은 2023.8.28. 협약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이 2023.11.15.로 다시 변경되었음.

54)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2. 사업내용 및 상세 요구사항
3.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
4. 소요예산

5.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
6.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1. 상세 요구사항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운영계획의 적정성
3.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의 적정성
4.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결과 대비 추진현황 변경사항
5.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전문기관의 검토·조정결과를 확인하여 사업내용 및 지원 예산 규모,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검토·조정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조정 경과]

과제명	과제 선정	계획서 요약본 제출	사전 검토	계획서 제출	전문가 검토	사업조정 위원회	계획서 보완제출	계획서 확정
재외공관 클라우드 2차	22.1.7.	22.10.14.	22.10.18.	22.11.10.	22.11.30.	22.12.23.	23.3.27.	23.3.29.
정부24 3차	22.1.7.	22.10.14.	22.10.18.	22.11.10.	22.11.30.	23.5.16.	23.6.29.	23.7.4.
소상공인 2차	22.1.7.	22.10.14.	22.10.18.	22.11.10.	22.11.30.	22.12.23.	23.4.7.	23.4.10.
전자정부 클라우드 4차	22.1.7.	22.10.14.	22.10.18.	22.11.15.	22.11.30.	23.5.16.	23.8.23.	23.8.24.
지능형 통합콜센터 2차	22.1.7.	22.10.14	(1차사업 연계로 제외)	<u>23.11.7.</u>	<u>23.11.17.</u>	<u>23.11.27.</u>	<u>23.12.8.</u>	<u>23.12.8.</u>
기록관리 고도화 4차	22.4.13.	22.10.14.	(3차사업 연계로 제외)	<u>23.10.13.</u>	<u>23.10.20.</u>	<u>23.11.3.</u>	<u>23.11.22.</u>	<u>23.11.22.</u>

※자료: 행정안전부

*주: 재외공관 클라우드 2차 - 재외공관 클라우드 기반의 해외정보 범정부 활용체계 구축 2차
 정부24 3차 -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 3차
 소상공인 2차 - 소상공인 비대면 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2차
 전자정부 클라우드 4차 -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4차
 지능형 통합콜센터 2차 -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2차
 기록관리 고도화 4차 -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출연사업으로서, 출연사업은 사업 추진 시 중앙관서-출연기관-주관기관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기간이 길고, 집행상의 재량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는 만큼 과제기간을 기계적으로 회계연도와 맞추도록 할 경우 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음⁵⁵⁾.

55) 박기영, 《한국재정》, 법우사, 2018, p.829. 참고

□ 다만, 사업계획 확정이 하반기 또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면서 예산 불용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결산에서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없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⁵⁶⁾, 출연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전액 또는 대부분의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제 사업 집행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⁵⁷⁾.

56) 박기영, 《한국재정》, 법우사, 2018, p.829. 참고

57) 참고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은 2023년도 사업에서 이월된 범정부지능형통합콜센터시스템 구축 2차 사업 및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4차 사업의 2개 과제와 2024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2개 과제를 추진한 후 종료될 예정임.

다. 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면밀한 검토 필요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4조⁵⁸⁾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법 시행령⁵⁹⁾에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 기준(선정 대상 사업의 범위·성격)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⁶⁰⁾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은 지원 대상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사업 목적, 지원 필요성, 업무 현황, 개선 방향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전문기관에

58) 「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기반 조성사업
2.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3. 국정과제 추진 또는 긴급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60)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해야 하고, 전문기관은 지원 대상사업 적합 여부, 다른 정보화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와 전년도 성과점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함⁶¹⁾).

□ 2023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21년 11월 및 2022년 3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행정기관등에서 제출한 지원사업과제제안서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2022년 1월 및 4월에 2023년도 지원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주관 기관에 통보하였으나, 2023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7개 과제 중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1차 사업⁶²⁾’은 이와 같은 지원 대상 과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선정 과정이 관련

61)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조(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① 장관은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선정 기준을 정한 뒤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사업의 경우 제4호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사업 목적 및 지원 필요성
2. 업무 현황,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3. 사업 내용 및 서비스대상
4. 성과지표 및 정의서
5. 연차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그 밖에 사업 특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 적합 여부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성
3.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예산규모 적정성
4. 국정과제, 신기술의 발달, 전자정부 주요 정책 등을 고려한 우선 추진 필요성
5.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결과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이행 현황
6. 그 밖에 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및 제32조에 따른 전년도 성과점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2)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점 등록, 경보발령, 수령/조치/보고 모니터링 등 사이버안전 전반에 관한 위험등록부터 조치완료 환류까지 프로세스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하는 사업임.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동 과제에는 2023년도에 예산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였는데, 동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022년 2월 이후 보류되었고⁶³⁾, 2022년 11월에 입법 예고⁶⁴⁾한 정부 법률안의 제출도 추진이 중단되면서, 주관기관⁶⁵⁾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전자정부지원 사업 선정을 취소⁶⁶⁾하였기 때문임.

63)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01220호, 2020.6.30. 조태용의원 대표발의)

- 2020.9.22.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2022.2.4. 국회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 2024.5.29. 임기 만료폐기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13145호, 2021.11.4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 2021.11.15. 국회정보위원회 법안소위 직접 회부 / 2022.2.4. 국회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 2024.5.29. 임기만료폐기

64)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제정(안) 입법예고(법제처 홈페이지-법제업무정보-입법예고)

- 공고번호: 제2022-5호

- 예고기간: 2022.11.8.~2022.12.19.

- 소관부처: 국가정보원

65)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5.~6. (생략)

66)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4조(사업의 취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선정 또는 확정된 사업의 취소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약정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2. 정보화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3. 주관기관의 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 및 입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업 취소 건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취소 경과]

사업취소 요청	⇒	사업취소 검토	⇒	사업취소 건의	⇒	사업취소 건의 검토	⇒	사업취소 건의 검토결과 통보
주관기관 → 전문기관		전문기관 사업조정위원회		전문기관 → 행안부		행안부		행안부 → 주관기관, 전문기관
2023.6.13.		2023.6.26.		2023.6.29.		2023.6.30.		2023.6.3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행정안전부는 동 과제의 추진이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고, 정부에서도 별도의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며, 범국가적인 사이버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요건⁶⁷⁾에도 부합하는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2006년부터 사이버안보 계획의 수립, 사이버안보센터 설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사이버위기 경보발령, 사고조사, 실태점검 및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들⁶⁸⁾⁶⁹⁾이 의결되지 못하였고⁷⁰⁾,

6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기반 조성사업
2.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3. 국정과제 추진 또는 긴급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④ (생략)

68)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884호, 공성진의원 대표발의, 2006.12.28.)

정부 제출 추진 법률안도 당초 2022년 12월에서 2023년 6월로 제출 계획이 변경⁷¹⁾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안의 2023년 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동 과제의 추진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한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안번호 제1801619호, 공성진의원 대표발의, 2008.10.28.)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4286호,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3.3.26.)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4459, 서상기의원 대표발의, 2013.4.9.)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15185호,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2015.5.19.)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15777호,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2015.6.24.)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18583호, 서상기의원 대표발의, 2016.2.22.)

국가 사이버안전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0032호,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2016.05.30.)

국가사이버안전보법안(의안번호 제2004955호, 정부 제출, 2017.1.3.)

사이버안전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01220호, 조태용의원 대표발의, 2020.6.30.)

국가사이버안전보법안(의안번호 제2113145호,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2021.11.04.)

69)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모두 공통적인 것은 아니며, 명칭 및 특정 내용 유무 등의 차이는 있음.

70) 동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은 이유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정보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회의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국회의안전정보시스템에 일부가 게재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제정 찬성 입장에서는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관리 등을 위한 법제가 시급히 요구되고, 국가정보원이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국가정보원은 국내에서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에 있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과도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 국가정보원의 활동이 민간의 영역에까지 개입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민간과 공공 간의 정보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음.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4459, 서상기의원 대표발의, 2013.4.9.) 및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4286호,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13.3.26.) 검토보고서, 국회정보위원회, 2017.2., 12p., 국가 사이버안전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0032호,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2016.05.30.) 및 국가사이버안전보법안(의안번호 제2004955호, 정부 제출, 2017.1.3.) 검토보고서, 국회정보위원회, 2017.2., 11-12p. 참고]

71) 2022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대한민국정부 2022.8.), 35p, 2023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대한민국정부, 2023.1.), 12p.

【조직국】

4. 정부조직진단관리(1931-300)

-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함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동 연구들은 내용상 정책연구용역과 유사하고,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기 전인 2018~2020년에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들도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 바 있음.

행정안전부는 향후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동이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조직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정부조직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조직담당관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3억 3,800만원 중 12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을 불용⁷²⁾하였음.

72) 불용 사유: 정책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임차료 및 국내 여비 집행 잔액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정부조직진단관리	1,338	-	-	-	1,338	1,264	-	74	681
조직제도·기능 발전방안 연 구	358	-	-	-	358	290	-	68	240
정부조직·인력 진단 컨설팅	906	-	-	-	906	905		1	374
행정관리 역 량강화 지원	44	-	-	-	44	41		3	41
현장중심·소통 기반 조직관 리 추진	30	-	-	-	30	28	-	2	26

나. 민간위탁 방식 연구과제 결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 필요

- ☐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부조직·인력 진단 컨설팅 (이하 “조직진단·컨설팅”이라 함)’은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을 판단하고,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조직진단⁷³⁾과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임.

7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2조(조직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할 수 있다.

②~⑨ (생략)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식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방식에는 입찰을 거쳐 선정된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방식과 조직관리 전문 연구기관⁷⁴⁾ 지정된 한국행정연구원⁷⁵⁾을 통한 위탁 수행 방식이 있음.

7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2조(조직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정원의 재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조직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2. 조직·정원관리 관련 법령·제도의 조사 및 연구
3. 외국정부의 조직·정원관리 관련 동향 조사·분석
4.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활성화 지원
5. 제4항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진단에 필요한 사항

⑧·⑨ (생략)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제7항에 따라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② (생략)

75) 한국행정연구원은 2017년부터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최초 지정: 2017.4.28.~2020.4.27. / 지정기간 연장: 2020.4.28.~2022.4.27. / 재지정: 2022.4.28.~2025.4.27.)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6조(지정기간) ①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방식인 정책연구용역과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을 비교해 보면,

연구의 대상 측면에서 정책연구용역은 주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컨설팅에 활용함에 비해,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은 인력 증원 예상 분야에 대해 사전적으로 인력 운영의 타당성 검증 등을 수행⁷⁶⁾하고,

연구 관리와 관련된 규정 측면에서 정책연구용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⁷⁷⁾에 따라 관리해야 함에

76)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지정)을 통한 사전적인 인력 운영의 타당성 검증 등을 ‘정부인력·기능체계 효율화 사전진단’ 사업이라고 함.
2021~2023년 정부인력·기능체계 효율화 사전진단 사업 과업내용서(행정안전부),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행정안전부) 참고

「'23년 정부인력·기능체계 효율화 사전진단」 과업내용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정부인력·기능체계 효율화 사전진단
- 사업예산 : 250,000천원(금 이억오천만원)
- 수행기간 : 업무협약일(2023.3.31.)~2023.11.30.까지

2. 과업목적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조직관리 필요
 -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효율적 정부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관리 사전진단 강화 필요
- 사전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인력·기능체계 구축
 - 부처별 직제검토, 기구·인력 성과평가 참고자료 활용 및 제도개선 등 부처 권고사항 제시

3. 추진방식

- 사전진단사업 업무위탁(한국행정연구원)
 - 법적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32⑦~⑨)」 및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 ※ (연구기관 지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의거,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을 지정
 - ※ (대상지정 기간) 2022.4.28.~2025.4.27.(3년 지정)
 - 추진방식 : 행정안전부 ↔ 한국행정연구원(위탁협약)

7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 제49조(정책연구)
- 제50조(정책연구심의회의 설치)
-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 제52조(연구결과와 평가 및 활용)
-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
-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비해,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은 민간위탁계약을 통해 수행함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에 관하여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방식으로 수행된 과제들은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⁷⁸⁾⁷⁹⁾을 통하여 공개⁸⁰⁾하고 있으나,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 수행 방식으로 수행된 과제들은 해당 사항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정책연구용역 및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된 조직진단 과제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들도 정책연구용역 방식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도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기 전인 2018~2020년에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통한 연구를 정책연구용역 방식으로 수행하고 해당 연구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였음⁸¹⁾.

7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79)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https://www.prism.go.kr>)

8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1)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은 2017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규정되었고, 2018년~2020년까지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행정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통해

[정책연구용역 및 전문연구기관 위탁을 통한 조직진단 과제 내역(2021~2023)]

구분	정책연구용역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
2021년	책임운영기관 전략체계 컨설팅 연구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비교과교사 배치기준 진단
	책임운영기관 전략체계 컨설팅 연구 (국립소방연구원)	산업안전보건 분야 진단(I)
	책임운영기관 전략체계 컨설팅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 진단
	책임운영기관 전략체계 컨설팅 연구 (경찰병원)	특허심사인력 진단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컨설팅 연구 (국방전산정보원)	복수승조원제 운영인력 진단
	책임운영기관 서비스 혁신 컨설팅 연구 (국립결핵병원)	교과교사 행정업무 진단
	-	현장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II)
		경찰서 운영기준 진단
		시스템기반 정부조직관리체계 구축 방안
		지역접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유사 업무분야 인력운영 효과성 비교·분석
		AI 등 신기술 국내외 도입 현황 조사·분석
2022년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방안 연구 (한국정책방송원)	상반기 사전진단 - 조직관리시스템분야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방안 연구 (해양경찰청)	행정기관위원회정비 민관합동진단보고서
	책임운영기관 고객관리 역량 진단지표 개선 연구	소방 대규모 증원 효율화 사전진단

매년 2~3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2021년 5억원, 2022년부터는 2억 5,000만원)하여 한국행정연구원과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018~2020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연구과제」】

연도	연구과제	연구기관
2018	중하위직 직급산정 기준개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
	소속기관의 운영체계 비교분석 연구	
	민간위탁 관련 법령 조사 연구	
2019	재외공관(중동·아프리카) 조직진단 연구	
	주요 국가의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사례 연구	
2020	재외공관(아시아) 조직진단 연구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실태조사 등 연구	
	정부인력 자동화·효율화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82)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I~V) 연구주제

구분	정책연구용역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위탁
	-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찰 직급구조 개편방안
		대규모 인력 증원 효과 분석: 경찰 분야
		하반기 사전진단: 교원 부문
2023년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 ⁸²⁾ (Ⅰ)	근로 감독관 인력운영 현황진단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Ⅱ)	2023 사전진단: 특허심사 분야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Ⅲ)	대규모 인력효율화 사전진단: 교원 분야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Ⅳ)	경찰 인력규모수준 효과분석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Ⅴ)	2023 사전진단: 식약 심사허가 인력 분야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 진단·컨설팅(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 진단·컨설팅(국립중자원)	
	책임운영기관 조직성과·역량 강화 진단·컨설팅(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https://www.prism.go.kr>)

-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Ⅰ)
 - 법무부 : 교정, 보호관찰
 - 검찰청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사무소
-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Ⅱ)
 - 통일부 :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 병무청 :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기능·기구·인력 효율화 방안
 - 공정병역을 위한 병역면탈 예방·단속 기능 강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대국민 통일교육·홍보 및 위원지원 조직체계 효율화 방안
-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Ⅲ)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산업혁신성장 조직체계 효율화 방안
 - 광업등록사무소 기능 효율화 방안 연구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지원기구 기능 및 조직 효율화 방안
 - 지방중기청 조직체계 효율화 방안
 - 새만금개발청 : 투자유치·개발 전략-사업 조직체계 효율화 방안
-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Ⅳ)
 - 국세청 :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서 조직체계 효율화 방안
 - 통계청 : 디지털플랫폼 시대, 지방통계청 기능·기구 효율화 방안
 - 통계기획·조사관리 및 경제-사회통계 조직체계 연계 효율화 방안
 - 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 정보화 조직체계 개선방안
 - 우정사업본부-지방청 기능수행체계 효율화 방안
- 정부조직 효율화 진단·컨설팅(Ⅴ)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온오프라인 홍보
 - 고용노동부 : 고용일자리, 산업안전보건

*출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등록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정책연구결과의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⁸³⁾,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원편익 증진, 연구결과 공유를 통한 중복연구의 방지 및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 제시⁸⁴⁾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는 않고 있으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의 사항⁸⁵⁾과는 별개로

8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84)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누리집(www.prism.go.kr) - 시스템 소개 - 개요

8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연구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정책연구결과의 공동이용⁸⁶⁾,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86)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결과들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2조(조직진단) ①·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정원의 재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⑨ (생략)

【지방행정국】

5. 자원봉사활성화 지원(1141-302)

-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사업은 유사한 사업적 효과를 상정하고 추진되는 기존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통한 재원 마련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의계약 체결 등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유사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은 민간자원봉사단체 지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인력(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을 통해 자원봉사 및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 예산현액 135억 3,700만원 중 13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불용⁸⁷⁾하였음.

87) 불용사유 : 정책연구비 낙찰차액 및 일반용역비 집행잔액 발생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2,561	-	976	-	13,537	13,509	-	28	13,527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확산	280	-	976	-	1,256	1,254	-	2	196
자원봉사활동 지원체 계의 효율화 증진	2,579	-	-	-	2,579	2,559	-	20	2,579
자원봉사 진흥정책 및 기부금품 모집 제도 운영	114	-	-	-	114	108	-	6	103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 험 가입서비스 지원	1,295	-	-	-	1,295	1,295	-	-	1,166
자원봉사 코디네이 터 지원·육성	8,293	-	-	-	8,293	8,293	-	-	8,483
2024년 부산 세계자 원봉사대회 개최지원	-	-	-	-	-	-	-	-	500
마리안느마가렛 글 로벌리더 양성 거 점공간 조성	-	-	-	-	-	-	-	-	500

자료: 행정안전부

나.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법률상 요건
에 부합하는 예산 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3회계연도에 다른 단위사업(세항)과 타 목으로부터의 전용을 통해 행사용역 대행을 위한 재원으로 일반용역비(210-14목) 9억 7,600만원을 마련하여 ‘국민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하여, 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을 불용⁸⁸⁾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농협 등 기업과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연령·계층의 국민이 김치를 담그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적인 봉사 및 나눔의 분위기와 사회적 통합 및 화합의 의미를 확산하고는 데 의의를 두고 동 행사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일시 및 장소	2023.11.27.(월) 13:00~15:30,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 전국 동시 개최(17개 시·도, 45개 시·군·구) 및 현장 영상 송출
주 최 ⁸⁹⁾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참석 인원	자원봉사자, 청년·노인,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등 국민 통합 의미를 상징하는 인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총 2,000여명 ※ 시·도(2,500여명), 시·군·구(3,500여명) 자체 행사 참석 인원 약 6,000여명
행사 내역	김장 담그기 후 전국 소외계층에 나눔 ※ 참가자 입장, 김장담그기 방법 등 설명, 김장 담그기 행사
소요 예산	일반용역비(210-14) 9억 7,400만원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동 행사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88) 불용사유 : 일반용역비 집행잔액 발생

89)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대관료, 행사 용역 추진을 위하여 9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등 김장 재료 구매에 1억 3,000만원, 농협은 고무장갑 등 물품 구매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첫째,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사업과 유사한 사업적 효과를 상정하고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 행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야 할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⁹⁰⁾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는 ‘자원봉사 진흥정책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하여 유사한 사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사업을 집행연도 들어 신규로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둘째,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 전용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행정안전부는 동 행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세부사업의 단위사업(자원봉사활성화지원)과 단위사업이 다른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90)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사업은 투입 재원이 1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사업의 내용과 소요 예산 등 규모를 명확히 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해당함.

‘지자체역량강화’ 단위사업 내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세부사업⁹¹⁾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세부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서 9억 7,6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음.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추진 관련 예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에서		금액	~으로		전용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3.11.22)	자치분권위원회운영 (1131-301) ⁹²⁾	210-01	211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141-302) ⁹³⁾	210-14 (일반용역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재원 마련
		210-02	7			
		210-05	26			
		210-16	21			
		250-02	38			
		260-01	40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1131-316)	210-01	60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 역량강화 (1132-300) ⁹⁴⁾	210-01	80			
		210-02	19			
		210-05	52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1139-307) ⁹⁵⁾	210-01	70			
		210-14	352			

자료: 행정안전부

91) 특히, ‘자치분권위원회운영’ 세부사업의 경우 타 목인 직무수행경비(250목)·연구용역비(260목) 목에서도 예산을 전용하였음.

92) 단위사업 : 지자체역량강화(1131)

93) 단위사업 : 자원봉사활성화지원(1141)

94) 단위사업 :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1132)

95) 단위사업 :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1139)

□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6조⁹⁶⁾제1항은 예산의 전용은 사업 간의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 간의 유사성이 불분명하고, 그 밖에 시급성과 필수적 경비 충당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동법 제46조제3항은 사업 간의 유사성 등에 불구하고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추진을 위한 전용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셋째, 행정안전부는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대행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96)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④~⑥ (생략)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용역대행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유형	수의계약 사유(근거)
봉사 나눔을 위한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976	974	(주)XXX	11.23.~ 11.30.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제1호가목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동 행사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유와 근거로 ‘국민대통합 김장행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97)에 따른 ‘긴급한 행사’에 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3년 11월 27일 개최된 동 행사의 긴급성은 정부가 이를 2023년 11월 들어 단기간에 기획하여 급박하게 추진한 것에 기인한다는 점, 전술한 바와 같이 동 행사와 유사한 사업적 효과를 상정하고 추진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행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⑤ (생략)

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긴급한 행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대규모 신규 행사 사업으로, 집행연도 들어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 전용과 수의계약을 통하여 추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⁹⁸⁾.

98)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국민대통합 김장행사’ 사업이 2023년 11월에 추진되어 이를 2024회계연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025회계연도 예산에는 동 사업을 편성할 계획으로 2024년 8월 12일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중임.

6.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 국민통합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역을 변경하여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은 국민통합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국민통합 행사, 국민통합기반 강화, 정책 홍보 등 국민통합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 예산현액 108억 9,400만원 중 88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⁹⁹⁾하였으며 16억 2,400만원을 불용¹⁰⁰⁾하였음.

99) 이월사유 : 하반기 과제가 2023년 10월 이후 선정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정책용역, 특별위원회 지원 용역 등의 충분한 수행기간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비 및 일반용역비 이월

100) 불용사유 : 자문단 회의 운영 감축에 따른 일반수용비 절감, 공동행정망 통한 전화요금 절감,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따른 특근매식비 예산 절감, 서울청사 회의장 우선 이용에 따른 임차료 절감,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발생, 집행잔액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10,764	130	-	-	10,894	8,834	435	1,625	7,747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	7,275	-	-	-	7,275	5,852	-	1,423	5,131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	3,489	130	-	-	3,619	2,982	435	202	2,616

자료: 행정안전부

□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국가전략의 수립, 정책의 조정·평가·지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¹⁰¹⁾에 설치 근거를 두고, 2022년 7월 27일 공식 출범하였음.¹⁰²⁾

□ 동 규정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

101)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653호, 2022. 5. 30., 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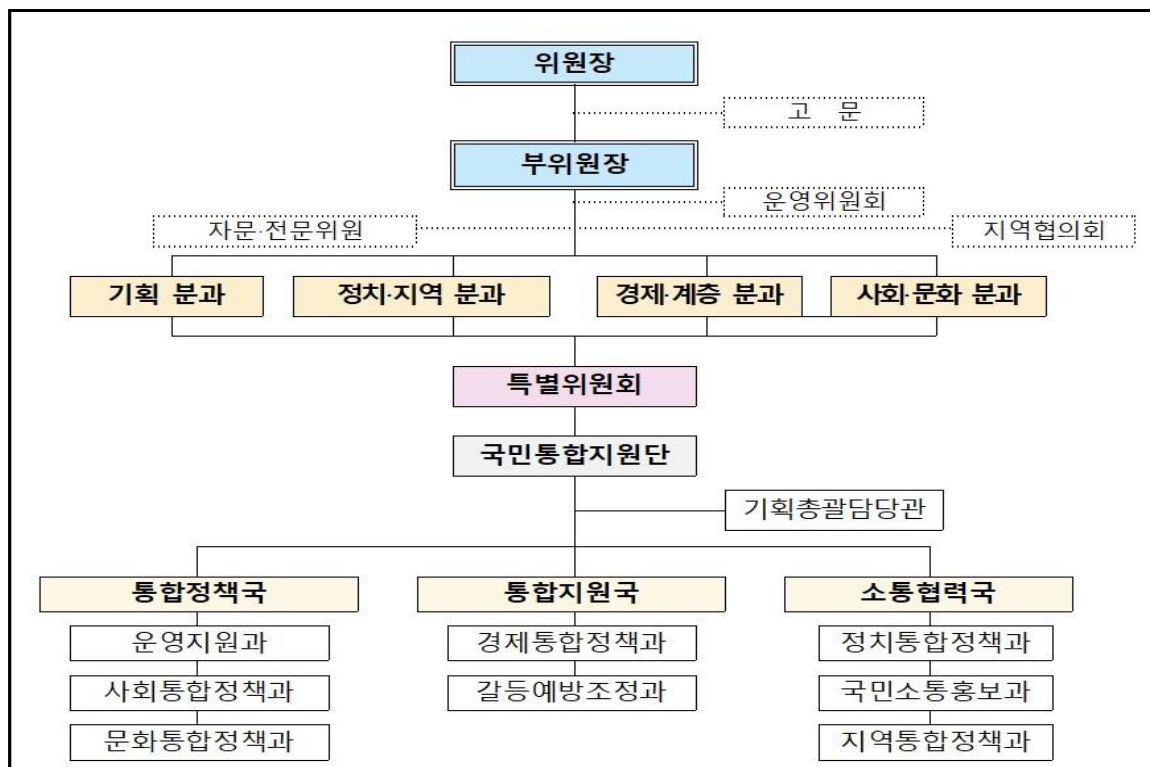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립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2) 2022년도 예산은 예비비와 예산 이용(移用)을 통해 위원회 운영비와 사업비 재원(50억 400만원)을 마련하여 집행한 바 있음.

위원장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위원회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조직(국민통합지원단)을 둘 수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8월 현재 임명 직(정부위원) 10명과 위촉직(민간위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 분과위원회 및 정치·지역 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¹⁰³⁾, ‘북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와 중앙부처 과 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통합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음.

[국민통합위원회 조직도]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대체로 본위원회가 의제를 설정하고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특별위

103) 기획 분과위원회, 정치·지역 분과위원회, 경제·계층 분과위원회,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원회는 소관 분과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는 사회적 갈등 중심으로 이슈의 시급성, 파급력, 현실적 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발굴된 과제에 대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평균 6개월 정도의 활동 기간을 가지는 임시조직 형태로 운용되는 문제해결형 위원회로서 매년 구성 현황이 달라지는데, 2023년도에는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 등 13개 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음.¹⁰⁴⁾

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역을 변경하는 집행 행태(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임의적인 미추진, 미추진 사업 예산을 활용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추진) 주의 필요

- 2023년도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 세부사업에 편성된 사업비는 일반용역비(210-14목) 29억 900만원, 정책연구비(260-02목) 5억 8,000만원 등 34억 8,900만원임.

104) 2023년도 국민통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시기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상반기	기획	자살위기극복(‘23.2.16.~6.28.), 청년젠더 공감(‘23.4.21.~8.29.)
	정치·지역	청년 정치 시대(‘23.3.15.~6.30.), 국민통합과 미디어(‘23.4.17.~7.24.)
	경제·계층	건강한 일터 만들기(‘23.3.22~6.8.), 민생사기 근절(‘23.4.24.~7.31.)
	사회·문화	이주민과의 동행(‘23.3.15.~6.20.),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23.4.21.~8.31.)
하반기	기획	-
	정치·지역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23.11.3.~‘24.2.23.)
	경제·계층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23.10.6.~‘24.2.2.), 더 나은 청년주거(‘23.11.1.~‘24.2.1.)
	사회·문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23.10.20.~‘24.1.19.), 청년 1인가구 대응(‘23.10.31.~‘24.4.5.)

이 중 일반용역비(210-14목) 집행을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크게 ‘위원회 및 정책 홍보’, ‘국민통합 행사’, ‘국민통합 기반 강화’로 구분되며, 이들 사업별로 ‘대국민소통센터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대통령 보고대회 개최’, ‘국민통합 기반 강화 체계구축·운영’ 등 세부적인 사업 내역이 편성되어 있음.

[국민통합위원회 일반용역비(210-14목) 사업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주요내용	예산액
위원회 및 정책 홍보	대국민소통센터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26
	국민통합 홍보 기획	국민통합위원회 활동 기록 콘텐츠 제작, 성과 등 홍보영상 제작 등	360
	국민통합 홍보콘텐츠 광고	뉴스저작물 이용, 특별위원회 활동 기획 콘텐츠 제작, 홍보서포터즈 운영	210
국민통합 행사	대통령 보고대회 개최	상반기 대통령 성과보고회 개최	150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200
	국민통합 대국민 토론회 개최	국민통합 관련 국민 참여 토론회 개최	100
	20234 국민통합 컨퍼런스	연사 초청 컨퍼런스, 청년 토크쇼, 홍보 캠페인 등 행사 개최	200
국민통합 기반 강화	국민통합 기반 강화 체계 구축·운영	분과위원회 직접 추진과제 자문 기능 지원(정책 조사·분석, 의견수렴, 대국민 토론회 등)	200
	국민통합 갈등해결 역량 강화	문제해결형 특별위원회 자문 기능 지원(과제선정, 갈등영향 분석, 의제 선정, 조사·연구, 사회적 공론화, 합의 도출, 결과 정리 및 평가, 사후 점검 등)	800
	특별위원회 국민소통 행사 개최	특별위원회 성격에 부합하는 타운홀미팅, 공청회 등 국민소통 행사 개최	120
	특별위원회 해커톤 행사 개최	사회적 합의 및 실행가능한 대안 도출을 위한 숙의토론 실시	160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민통합 교육 운영	150
	국민통합 실천 캠페인 추진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한 전국민 실천 캠페인 및 공모전 개최	133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국민통합위원회는 2023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회는 상반기에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동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맞춤형 국민통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음.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추진계획]

추진시기	주요 사업내용
상반기 (2023.2월~6월)	○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용역 - 국민통합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통한 각계각층의 단계적 갈등 완화 및 통합 기반 마련 - 교육 대상별(공직자, 일반시민, 학생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하반기 (2023.7월~12월)	○ 국민통합 교육 운영 위탁 용역 -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교육 전문기관 교육 위탁 - 청년·대학생·공직자·일반시민 대상 맞춤형 국민통합 교육 실시 - 참여적 의사결정(공론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년 및 주민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현장 실습 지원 ※ 청년 대상 4회, 대학생 대상 4회, 공직자 대상 2회, 일반시민 대상 4회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사업을 집행연도 들어 신규로 추진하였는데,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년위원 모집 및 선발 위탁’, ‘청년마당 발대식 행사 대행 용역’, ‘청년마당 운영 용역’ 등 3개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총 8,2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사업은 당초 2023회계연도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추진하지 않은 사업인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한 것으로 파악됨.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사업 추진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용역계약 현황	
		계약금액	계약기간
청년포럼 「청년마당」 위원 모집 및 선발	○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포럼 「청년마당」 위원 모집 및 선발 - 참여대상 :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 - 모집인원 : 100명 내외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 모집공고일 : 1.25.	19.9	2023. 1.26~ 2023. 3.15
청년마당 발대식 행사	○ 위촉식 행사, 명사초청 강연, 전체 공론화장 운영	22	2023. 4.10~ 2023. 4.25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운영 용역	○ 청년마당 회의, 세미나, 행사개최 등 전반적 인 포럼 운영 - 전체회의 : 청년마당 연간 활동 공유, 향후 활동 방향 제시 - 운영회의 : 청년마당 운영에 필요한 사안 에 대한 논의 - 분과회의 : 각 분과별로 국민통합위원회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주요 의제에 대한 청년 의견수렴	40	2023. 6.21~ 2023.12.31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민통합위원회는 위원회 초기에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청년포럼 「청년마당」 위원’ 모집공고가 집행연도가 개시된 직후인 1월 25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때문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예산을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민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된 것이 집행연도 들어 사업의 기대효과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통합 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책적 판단이 바뀐 데 기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초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편성·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계상된 사업을 집행연도가 개시된 직후 집행기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한편, 집행연도 들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예산을 불용하고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타당함. 미추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이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운영사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참여와 소통, 공론화 등 유사한 사업적 효과를 상정하고 편성된 토론회, 세미나, 공모전,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방식의 기존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사업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사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집행연도 들어 별개의 독자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불가피성이나 긴급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국민통합위원회는 2023년 핵심 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함에 따라 청년의 시각에서 국민통합의 의미와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을 청년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청년포럼 「청년마당」’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과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통로로서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논의하고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청년주도 공론화 참여기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국민통합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 내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미추진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지방자치분권실(7011-257)

- 지방자치분권실의 기본경비 집행 내역 중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예산 집행 사례와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제한 규정을 우회한 분할 집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관서운영경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등 법령과 정부 내 예규의 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자치분권실’은 지방자치분권실의 기본적 업무 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 예산현액 12억 8,800만원 중 12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을 불용¹⁰⁵⁾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⁰⁶⁾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자치분권실	1,154	-	134	-	1,288	1,257	-	31	1,350

자료: 행정안전부

105) 불용사유 :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급 잔액, 포상금 지급 잔액, 집행잔액(공공요금및제세,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발생

106) 이·전용 등 사유 :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자치단체 현안사항 점검과 지원을 위한 파견인원에 대한 국내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용, 지방시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시·도 공무원 간담회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목조정

나.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를 초과한 예산 집행 및 지급한도
제한 규정을 우회한 분할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국고금 관리법」¹⁰⁷⁾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운영비(210목)를 관
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당 500만원
을 초과하는 운영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¹⁰⁸⁾
의 일반 지급절차에 따라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
이 채권자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107)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8)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관서운영경비(운영비 부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운영비(210목)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 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 시험연구비중 연구개발비는 제외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본 세부사업을 통해 집행한 관서운영경비(일반 수용비) 중 일부 내역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거나 500만원을 초과하는 동일 집행 건을 임의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 건으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한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20일 정부법무공단에 지급한 소송대리사건 착수금 77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는바,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초과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집행일	비목	지급액	지급업체	지급내역
7.20.	일반수용비 (210-01목)	7,700	정부법무공단	소송대리사건 착수금 지급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2023년 11월 9일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시상품 비용을 종목별로 260만원씩 9건으로 분할하여 동일한 업체에 지급하였음.

이들 집행 건은 동일한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목적의 경비로서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에 따라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통해 단일한 집행 건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를 우회한 분할집행 내역]

(단위: 천원)

집행일	비목	지급액	지급업체	지급내역
11. 9.	일반수용비 (210-01목)	2,600	(주)△△샵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e스포츠(리그 오브레전드)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	(주)△△샵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e스포츠(스타크래프트)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	(주)△△샵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야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	(주)△△샵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배드민턴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	(주)△△샵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볼링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	(주)△△샵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탁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	(주)△△샵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족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	(주)△△샵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테니스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2,600	(주)△△샵	제18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축구 종목 시상품 비용 지급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행정안전부는 관서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등 법령과 정부 내 예규의 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2431-304)

- 동 사업은 2024년 6월말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행정안전부는 자료 제출의 미비 등 행정적 요인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당성 재조사 후 사업 재개 시 잔여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보완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가. 개 요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국민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본 예산은 61억 4,0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 재원으로 사용된 36억 9,1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24억 4,5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6,140	6,140	-	△3,695 ¹⁾	-	2,445	-	-	2,445	-

주: 1) 당초 본예산액 61억 4,000만원 중 ‘재난대책비(보조)’ 세부사업(2734-300)으로 33억원이 이용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세부사업(2436-300)으로 3억 9,500만원이 전용되는 등 36억 9,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나.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타당성 재조사 후 예정된 잔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 관리 필요, 타당성 재조사 미통과 시 사업계획의 보완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속한 조치 필요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2018년도 예산에 최초로 설계용역비 반영을 시작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음.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주체 : 행정안전부(총괄) / 대전광역시 동구청(시행)
- 사업기간 : 2018 ~ 2024 (7년)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2-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역사공원 조성 등(사업부지 102,002㎡, 건물연면적 3,944.68㎡)
- 총사업비 : 478.6억원 ※ 유해발굴 예산(총사업비에 미포함) : 총14.88억

주: 2024년 6월말 현재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사업은 지분취득비(490목)¹⁰⁹⁾로 편성되어 대전광역시 동구에 교부되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데, 2022년도까지 매년 편성액 전액이 교부되었으나 예산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등 예산 집행 실적은 저조하였음.

□ 대전광역시 동구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교부받은 예산액의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 바, 설계비의 경우 2022년도까지의 집행 누계액이 8억 1,900만원에 불과하여 2018년 최초로 교부된

109) 「2018년 세출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2018년 신규 요구사업 중 국가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지자체·민간에 지원하는 경우 지분취득비(490)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현재의 편성 및 집행 관련 지침은 지분취득비의 집행 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음.

10억원이 2023년도까지 5회계연도에 거쳐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공사비도 2022년도까지 집행액¹¹⁰⁾ 누계가 2억 6,000만원으로, 2019년 최초로 교부된 3억 3,500만원에 못 미쳐 2023년도까지 4회계 연도에 거쳐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음.

보상비는 2022년도까지 총 202억 9,9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24년 6월말 현재 214억 3,900만원(105.61%)을 집행하였음.¹¹¹⁾

□ 이와 같은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대상부지 내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로 인한 기간 소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증액 협의 기간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실적행현황(2018~2024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누계액
공사비	교부액		335	-	-	2,104	-	-	2,439
	집행액	-	-	-	224	36	-	-	260
	차년도이월	-	335	335	111	2,179	-	-	-
보상비	교부액	-	1,178	3,115	3,702	12,304	-	-	20,299
	집행액	-	372	2,302	27	12,553	2,269	3,916	21,439
	차년도이월	-	806	1,619	5,294	5,045	2,776	-	-
설계비	교부액	1,000	352	-	-	-	-	-	1,352
	집행액	-	381	-	200	238	-	-	819
	차년도이월	1,000	971	971	771	533	-	-	-
시설 부대비	교부액	-	13	7	7	-	-	-	27
	집행액	-	-	-	1	19	-	-	20
	차년도이월	-	13	20	26	7	-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0) 사업부지 내 유해발굴지의 지장가옥 철거비 등으로 사용됨.

11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사비 미집행액을 보상 협의가 기완료되어 지급의무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 집행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부액 대비 초과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2019년 3월 최초 등록 시 295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두 차례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478억 6,000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으며, 2023년 1월에 이루어진 3차 총사업비 협의조정 요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규모는 591억 5,600만원까지 증가되었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총사업비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단계	총사업비	변 동			조정내역
			내 역	요구액	조정액	
최 초 (2019.03)	구상	29,500	소계	29,500	29,500	-
			공사비	23,600	23,600	-
			보상비	4,300	4,300	-
			시설부대비	1,600	1,600	-
1차 협의조정 (2019.12)	기본계획	40,175	소계	40,629	40,175	-
			공사비	25,800	25,908	·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 사업부지 증가 및 공사비 단가 적용기준(유사 공원조성 사례로 추정 한 공사비 단가 등을 적용) 변경 등에 따라 증액 · 사업부지 관통 기준으로 이설비용 반영
			보상비	11,700	11,689	· 기존도로 이설에 따른 사업부지 증가 및 지가 상승 반영(당초 지가는 사업 부지 선정 전 ‘12년 추정금액)
			시설부대비	3,129	2,578	· 공사비 증액에 따른 효율 적용으로 설 계비, 감리비 등 반영
2차 자율조정 (2022.5.30.)	기본설계	47,860	소계	47,860	47,860	-
			공사비	25,908	25,908	-
			보상비	11,689	19,374	· 감정평가 용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증 가분 반영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수수료 반영
			시설부대비	2,578	2,578	-
3차 협의조정(요청) (2023.1.)	중간설계	59,156	소계	59,156	(미확정)	-
			공사비	31,933	(미확정)	·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반 영 요구 :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및 건축계획 변경(국제설계공모) 에 따른 공사비 증액

구 분	사업단계	총사업비	변 동			조정내역
			내 역	요구액	조정액	
			보상비	23,653	(미확정)	· 구역계 변경에 따른 추가필지 보상 및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른 잔여지 보상비 증액 요구 · 법정 수수료 증액(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시설부대비	3,570	(미확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지반조사 용역비 반영 · 공사비 증액에 따른 요율 적용으로 설계비, 감리비 등 반영

주: 2024년 6월말 현재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되어 2024년 6월말 현재 진행 중으로, ‘타당성 재조사’ 실시(2023.3월) 이후 설계 등 조성 사업 진행이 중지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2023년도에 편성된 지분취득비 본예산 61억 4,000만원 중 36억 7,500만원은 다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이·전용되었고 이를 제외한 예산현액 24억 4,500만원은 교부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었음.

□ 2018년도에 설계용역비 반영 이후 현재까지 동 사업은 2023년 3월 타당성재조사 실시에 따른 사업 중지 이전까지 연례적인 사업 지연으로 실집행상의 이월에 반복되었으며, 사업 구상 단계 이후 3차례의 조정 과정을 통해 총사업비가 당초 295억원 수준에서 5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591억 5,600만원)로 증가하게 되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에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고(2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으며(6월), 2024년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6월), 타당성 재조사(2024년 하반기 결정 예정) 통과 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재개 등 설계 관련 업무를 연내 마무리하고 2025년 1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완료		진행		향후 개시	
	내용	일정	내용	일정	내용	일정
설계	(건축)국제설계 공모	'20.5.	공원조성계획 및 설계용역(건축제외)	'18.10.~일시정지 ※'24.12.(완료 예정)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21.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건축)	'21.2.~일시정지 ※'24.12.(완료 예정)	-	-
	재해영향평가	'23.2.	-	-	-	-
시공	-	-	-	-	시공업체 선정	'25.1.(예정)
행정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 도로) 결정 고시	'21.5.	타당성재조사	'23.2.~'24.하반기(예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24.하반기(예정)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1.12.	-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24.하반기(예정)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22.3.	-	-	건설기술심의	'24하반기(예정)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3.6.	-	-	-	-
	중간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	'22.11.	-	-	-	-
	토지보상	'24.6.	-	-	-	-

주: 2024년 6월말 현재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자료 제출의 미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 미흡 등 행정적 요인으로 인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종전과 같은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정된 잔여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유해발굴 및 안장을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하고 정부에 권고(2010.12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명분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¹¹²⁾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보완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112) 행정안전부는 2024년 6월 현재 전국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4,114구는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세종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 중으로, 기존에 발굴된 유해와 향후 발굴되는 유해를 안정적으로 영구 안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9.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2433-300)

- 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을 위한 심의·결정 업무의 성격상 심의 건수 대비 인용 건수 비율에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본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성과지표를 다른 성과지표로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 사업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며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 예산현액 31억 7,200만원 중 27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1,000만 원을 불용¹¹³⁾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	4,075	4,075	-	△903	-	3,172	2,762	-	410	2,858
위원회 운영	569	569	-	-	-	569	497	-	72	575
보상금 등 지급	1,646	1,646	-	△903	-	743	405	-	338	879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지원	1,860	1,860	-	-	-	1,860	1,860	-	-	1,404

자료: 행정안전부

113) ‘보상금 등 지급’ 내역사업의 손실보상금(320-01) 예산현액 7억 4,300만원 중 3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본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 및 ‘재단 학술기념사업 추진실적’ 등 두 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 (단위 : %)	목표	74	74	74	과년도 관련자 인정률을 토대로 목표치 설정	(인정건/부마위원회 심사건)×100	위원회 심의결정 자료
	실적	96	85	-			
	달성도	130	115	-			
재단 학술기념사업 추진실적 (단위 : 회)	목표	3	3	2	재단정립 및 안 정화를 위해 대 표사업을 고려한 목표치	당해연도 추진건수	결과보고서
	실적	3	3	-			
	달성도	100	100	-			

자료: 행정안전부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신청과 심의·결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114)에 따라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11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애등급 판정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 성과지표는 위원회의 심의·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수 대비 관련자 인정 건수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목표치(74%)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심의·결정 현황]

심의결정연도	기간	심의 건(명)		결정 건(명)	
2020년	2020. 1. 1. ~ 2020.12.12.	사망자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행방불명자	-
		후유사망자	-	후유사망자	-
		상이자	12	상이자	2
		연행·구금	31	연행·구금	31
		해직	1	해직	1
		수배	1	수배	1
		학사징계	-	학사징계	-
		소계	45	소계	35
2021년	2021. 1. 1. ~ 2021.12.12.	사망자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행방불명자	-
		후유사망자	-	후유사망자	-
		상이자	29	상이자	15
		연행·구금	50	연행·구금	48
		해직	4	해직	3
		수배	2	수배	2
		학사징계	9	학사징계	9
		소계	94	소계	77
2022년	2022. 1. 1. ~ 2022.12.12.	사망자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행방불명자	-
		후유사망자	-	후유사망자	-
		상이자	21	상이자	16
		연행·구금	104	연행·구금	104
		해직	-	해직	-
		수배	-	수배	-
		학사징계	-	학사징계	-
		소계	125	소계	120
2023년	2023. 1. 1. ~ 2023.12.12.	사망자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행방불명자	-
		후유사망자	-	후유사망자	-
		상이자	15	상이자	8
		연행·구금	98	연행·구금	90
		해직	-	해직	-
		수배	-	수배	-
		학사징계	2	학사징계	-
		소계	115	소계	98

심의결정연도	기간	심의 건(명)		결정 건(명)	
2024년	2024. 1. 1. ~ 2024.5.31.(현재)	사망자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행방불명자	-
		후유사망자	-	후유사망자	-
		상이자	2	상이자	-
		연행·구금	29	연행·구금	29
		해직	-	해직	-
		수배	-	수배	-
		학사징계	-	학사징계	-
		소계	31	소계	29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해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절하다고 보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세부사업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 성과지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현황’에 명시되어 있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있어서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평가 항목에 따른 성과 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는 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최근 3년간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

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을 위한 심의·결정 업무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¹¹⁵⁾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로서, 이같은 업무의 성과로 심의 건수 대비 인용 건수 비율에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심의·결정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목표치에 맞추어 관련자 인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과관리제도상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성과지표는 프로그램(항) 단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세 부사업 단위의 성과지표를 반드시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¹¹⁶⁾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심의·결정 업무는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있어서의 목표 달성도와도 관련성이

11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3. (생략)

116)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행정안전부)」의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프로그램(코드: 2400)은 ①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 만족도, ② 민주화운동 인식도 등 두가지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¹¹⁷⁾

- 셋째,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¹¹⁸⁾ 본 세부사업 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심의·결정 업무에 투입되는 예산은 ‘위원회 운영’ 내역사업에 편성된 위원회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회의참석수당, 안전검토비, 전문가자문료 등으로 정상적 경비를 편성·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심의·결정 업무는 신청 건수 대비 인용 건수 비율의 높고 낮음을 이유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고,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측면에서의 상관 관계도 불명확하여 평가대상으로서 실익이 있는 주요 재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 세부사업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인정률’ 성과지표는 본 세부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117)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 지원’ 세부사업(2433-300)을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보상금 등 지급’,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지원’ 등 3개 내역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지원’임.

118)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정부 지침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사업평가부터 평가사업의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음.

【자치분권국】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1131-302)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부 출연금을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연구개발적립금 등 별도재원 운용 현황 등을 확인·검토하여 출연금을 분할교부함으로써 정부 출연금 예산의 편성·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 및 정책연구·조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5억 5,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정책개 발연구등지원	3,554	-	-	-	3,554	3,554	-	0	3,054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운영지원	3,554	-	-	-	3,554	3,554	-	0	3,054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집행실적 및 여유재원 운용 현황을 고려한 출연금 분할교부 필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출연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회계는 통상적인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¹¹⁹⁾ 등의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집행되고 있음.

119)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3년 집행률은 일반회계 73.0%, 특별회계 41.4%이며,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일반회계 78.2%, 82.6%, 특별회계 52.3%, 4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지출			집행률 (C/B)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B)	지출액 (C)	집행잔액 (A-C)	
			계 (A)	정부 출연금	자체 수입 등*				
2021	일반	11,243	9,100	2,854	6,246	11,243	8,792	308	78.2
	특별	10,865	9,466	200	9,266	10,865	5,684	3,782	52.3
2022	일반	12,961	12,111	2,854	9,257	12,961	10,708	1,403	82.6
	특별	9,160	7,482	200	7,282	9,160	4,206	3,276	45.9
2023	일반	13,352	12,585	3,354	9,231	13,352	9,744	2,841	73.0
	특별	13,066	11,810	200	11,610	13,066	5,410	6,400	41.4

*자체수입 등: 연구용역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전년도이월액, 기금전입금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자료 바탕으로 작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3년 지급된 정부 출연금은 전액 집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출액 및 집행잔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되는 재원을 먼저 집행하였다면 정부 출연금 또한 부진하게 집행되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집행잔액(잉여금)의 일부를 「예산편성 운영규칙」(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규) 제12조¹²⁰⁾ 등

120)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12조(연구개발적립금) ① 연구원은 연구사업, 연구인프라사업, 기관발전사업, 기타 연구원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적립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적립금의 재원 및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탁용역수입의 5% 이내, 특별회계의 경우 타당성조사수수료의 1% 이내로 하여 구분·운영한다.

에 따라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관리·운영하고 있는데, 2023회
계연도 기준 해당 적립금의 잔액은 87억 2,300만원임¹²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개발적립금 잔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적립액	사용액	기말잔액
2022	일반	2,141	193	3	2,331
	특별	4,645	66	0	4,711
	보충금	1,376	100	0	1,476
	계	8,162	359	3	8,518
2023	일반	2,331	158	0	2,489
	특별	4,711	112	0	4,823
	보충금	1,476	100	165	1,411
	계	8,518	370	165	8,723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와 같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체수입 등 집행현황 및 연구
개발충당금 등의 별도재원 운영 현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이후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30억 5,400만원의 정부 출연
금을 편성하여 전액을 한 번에 교부하고 있음.

[2019년 이후 정부 출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 출연금	교부시기	교부횟수
2019	3,054	2019. 3. 18.	1
2020	3,054	2020. 4. 17.	1
2021	3,054	2021. 5. 27.	1
2022	3,054	2022. 6. 14.	1
2023	3,554	2023. 3. 24.	1
2024	3,054	2024. 6. 19.	1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작성

121) 참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연구인력 보강 및 원주청사 신축을 위해 연구개발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기관운영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 방식 등에서 출연기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출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과 마찬가지로¹²²⁾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¹²³⁾.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

	출연금	보조금
일반법상 근거	-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용도지정 여부	- 기관출연금: 사용 용도 비지정 - 목적출연금: 사용 용도 지정	- 사용 용도 지정 필수
집행잔액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처리 - 각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름	- 사후정산 및 국고반환 처리
이자수입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처리 - 각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름	- 국고 반환 처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12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23)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인 한국섬진흥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모두 분할 지급의 방식으로 기관운영출연금(350-01)을 지급받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부 출연금을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연구개발적립금 등 별도재원 운용 현황 등을 확인·검토하여 출연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당해연도 예산을 절감하여 차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향후 기관운영 출연금을 나누어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균형발전지원국】

11. 특수상황지역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231-300)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의 2023년도 위탁예산 현액은 185억 6,900만원이며, 그 중 58억 6,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31.6%로 저조한 상황임. 행정안전부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 회계연도에는 2,164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
특수상황지역개발	216,488	-	-	-	216,488	216,488	-	-	210,498

나.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을 제고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개의 시·군)과 **섬지역**(「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섬 중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섬 188개)을 대상으로 하며, ①기초생활기반(도로시설, 농업기반시설 등), ②지역소득증대(숙박 체험, 휴양지, 저온저장고, 산책로 등), ③지역경관개선(지붕 정비, 담장정비 등), ④주민역량강화(마케팅, 브랜드화 등)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30개 시·군에 국고보조금 2,164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1,017억 7,600만원을 집행하여 47%의 집행률로 저조한 측면이 있음.

[2023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216,488	216,488	216,488	162,013	378,501	208,505	216,488	101,760	165,110	4,886	47.0

※ 자료: 행정안전부,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 한편,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이를 다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의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위탁예산 현액은 185억 6,900만원임.

[2023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위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위탁기관명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접경지역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조성 등 5개 사업	5,735	3,260	56.8%
	강원개발공사	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8,004	717	9.0%
섬지역	한국섬진흥원	특성화사업(21개소)	4,030	1,310	32.5%
	인천관광공사	특성화사업(3개소)	800	580	72.5%
합 계			18,569	5,867	31.6%

* 예산현액 : 2023년도 위탁액 + 전년도 이월액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해오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주요 기준으로 개발사업의 진척률을 파악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기관에 위탁금을 교부하면 전액 집행한 것으로 반영되어¹²⁴⁾ 실제 사업의 진척률과 차이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124) 회계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기관에 위탁금으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위탁금 예산현액은 185억 6,900만원이며, 그 중 58억 6,700만원이 집행되어 127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실집행 현황에는 위탁금 185억 6,900만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반영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위탁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¹²⁵⁾ 사업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금으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집행률을 기준으로 위탁사업에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교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은 실제 사업의 진척률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배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12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3년도 위탁사업의 실행률은 31.6%로, 지방자치단체 기준 실행률 47% 보다 낮으며, 공원 조성 위탁사업의 경우 '23년 예산현액 81억 200만원 중 7억 1,700만원 집행되어 실행률이 8.9%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19억 8,6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위탁하여 전체 실행률은 7.2%에 불과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 현황에 비해 과도한 위탁금이 배부되고 있어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음.

[공원 조성 위탁사업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국비 기준)

연도	지자체		위탁기관								
	본예산	집행액	위탁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행률 (C/B)
							예산 현액	집행액			
2022	352	352	352	0	352	0	352	0	352	0	0.0%
2023	7,750	7,750	7,750	352	8,102	717	7,750	365	7,385	0	8.9%
2024	1,986	1,986	1,986	7,385	9,371	6	1,986	0			0.1%
합계	10,088	10,088	10,088	-	-	723	-	365	-	-	7.2%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기관에 위탁금 지급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위탁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2. 지역발전활성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231-303)

- 행정안전부는 예산지원 없이 한국온천협회에서 온천종사자교육을 위탁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 수료 현황’만 보고 받고 있으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에 따르면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사업의 경우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해 위탁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탁협약서에 따르면 교육 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 결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온천종사자 교육 위탁사무의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자원관측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온천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온천협회는 위탁 협약조건에 비해 과도한 업무를 민간업체 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위탁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 위탁사업 수행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온천협회의 위탁 협약조건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체계를 시정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①온천발전종합정책 추진을 통해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온천산업 활성화” 사업, ②옥외광고 산업 진흥 기반 마련 및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를 위한 “간판문화 선진화” 사업, ③아름다운 화장실문화 확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 ④지역 인구감소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소멸대응” 사업 등이 있으며,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59억 2,500만원 중 57억 4,000만원이 집행
되었고, 3,700만원이 이월¹²⁶⁾되었으며 1억 4,800만원이 불용¹²⁷⁾되었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역발전활성화	5,226	697	2	-	5,925	5,740	37	148	9,928
보조요원인건비	83.5	-	-	-	83.5	75.5	-	8	85.8
간관문화선진화	38.2	-	±3	-	38.2	38.2	-	-	38
아름다운화장실조성	146	-	±1	-	146	146	-	-	110
온천산업활성화	324	-	-	-	324	324	-	-	4,826
자전거인프라 구축	1,149.1	-	-	-	1,149	1,141	-	8	612
지방소멸대응	1,282.2	697	2	-	1,981.2	1,870.4	-	110.8	2,157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600	-	±3	-	600	599	-	1	750
인구감소지역 기업 이전 활성화 지원	200	-	-	-	200	142.5	37.3	20.2	350
부처지역사업 연계지원	1,403	-	-	-	1,403	1,403	-	-	1,000

126) 이월사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6.10.)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구용역 기간을 고려하여 이월

127) 불용사유 : 집행잔액

나. 온천산업활성화 : 수입을 수반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온천법」에 따라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온천종사자 교육 업무를 한국온천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¹²⁸⁾

[’23년 온천종사자 교육 위탁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2월 ~ 12월
- (사업예산) 예산지원 없음
- (사업방법) 행정안전부(위탁자) / (특)한국온천협회(수탁자)
* 「온천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온천협회에 온천종사자교육 위탁 운영

□ 주요 추진실적

- (교육 대상)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온천이용시설 종사자
- (교육 과목) 3과목 4시간(온천법 2, 온천운영 1, 공중위생관리 1)
- (교육 방법) 집합 및 온라인교육
- 연도별 온천종사자 교육 수료 현황

연 도	대 상	수료	미수료	수료율(%)	비 고
2020년	534	522	12	98	
2021년	524	516	8	98	
2022년	514	504	10	98	
2023년	503	497(집합 254, 온라인 243)	6	99	

※ 자료 : 행정안전부

128) 「온천법」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 행정안전부는 매년 한국온천협회¹²⁹⁾와 온천종사자 교육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탁사업 예산 없이 한국온천협회가 수강료를 피교육자로부터 수납받아¹³⁰⁾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온천종사자 교육 위탁사업이 예산 지원 없이 한국온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온천종사자 교육 수료 현황”만 보고받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첫째,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경비의 산정 시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국고에 납부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온천협회는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어, 수강료 수납에 따른 예상 수입액과 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위탁경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129) 한국온천협회('07.7월 설립) 현황

○ 설립근거 : 온천법 제27조

○ 회원수('23년 기준) : 약 260개 기관(지자체 20개, 온천종사자 240개)

* 회비 : 특별회원(지자체) 연 100만원, 일반회원(온천종사자) 연 24만원

○ 주요업무 : 온천종사자교육(「온천법」 제26조), 온천관측장비 운영(「온천법」 제24조의2), 온천전문검사 검증(「온천법」 제19조 및 제24조) 등

○ 사무처 직원 : 사무처장, 대리 1명, 간사 1명 등 총 3명(2024.6.30 기준 현원)

130)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9조(수강료) ① 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 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근 3년 온천종사자 교육 위탁사업 수입·지출 현황]

구분	수입 ¹³¹⁾	지출	비고(지출내역)
2021년도	10,740,000원 (358명× 수강료 30,000원)	11,166,180원	-교육교재비 : 110,000원 -교육교재 원고료 : 400,000원 -온라인교육동영상: 3,960,000원 -온라인교육홈페이지유지: 3,300,000원 -온라인결제시스템 개발비: 792,000원 -온라인결제시스템개발 회의 등: 1,350,980원 -교육안내 우편물 : 1,253,200원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2022년도	11,010,000원 (367명× 수강료 30,000원)	11,680,800원	-교육교재비 : 440,000원 -강사료 : 400,000원(2회) -온라인교육동영상: 4,400,000원 -온라인교육홈페이지유지: 3,300,000원 -교육 원고료 : 1,129,600원 -교육안내 우편물 : 1,224,330원 -출장여비 : 606,000원 -교육준비 대관료 등 : 180,870원
2023년도	10,320,000원 (258명× 수강료 40,000원)	13,085,120원	-교육교재비 : 4,439,600원 -강사료 : 564,800원 -온라인교육동영상 : 3,630,000원 -교육 원고료 : 400,000원 -교육안내 우편물 : 1,031,950원 -교육준비 대관료 등: 1,499,870원 -출장여비 : 1,518,900원(3회)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둘째,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체결한 위탁협약서에 따르면,
①수탁자는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하도록 하고, ②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
나,¹³²⁾ 행정안전부는 교육 실시에 따른 수입·지출 회계처리 결산

131) 한국온천협회는 협회 ‘회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하고, ‘비회원’에 한해 수강료를 납부받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비회원이 납부하는 수강료로 충당하고 있어, 모든 교육비용이 비회
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온천종사자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① 교육과 무관한 협회 가입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이 있으며, ② 비회원의 수강료로 제작되는 온라인교육은 회원 위주로 운영(비회원의 경우, 집합교육이 원칙
이며 코로나 발생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132) 「위탁협약서」(행정안전부-한국온천협회)

제6조(회계처리) 수탁자는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고, 협약된 업
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보고는 받지 않고, “교육 수료 현황”에 대한 보고만 받고 있음.

□ 그러나, 위탁교육에 대한 수입·지출의 회계처리 결산 보고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온천종사자 교육 수강료가 적정한지,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온천종사자가 적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의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에 따라 수강료 수입을 고려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에 대한 위탁경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온천종사자 교육 위탁사무의 수입·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7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수탁자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이외에 위탁자의 요청 시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 결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온천산업활성화 : ‘온천자원관측장비 유지관리’ 위탁사무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온천법」 제24조의2¹³³⁾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온천협회¹³⁴⁾에 온천자원관측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온천산업활성화' 내역사업 세부 내역]

온천산업 활성화	○ 3억 2,400만원 - 온천제도 운영 : 2,400만원 - <u>온천자원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3억원</u>
-------------	---

※ 자료: 행정안전부

133) 「온천법」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천법시행령」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34) 「온천법」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천자원 관측시스템은 온천공에 수위, 유량 및 수온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측정자료를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여 언제든지 관측자료를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 한국온천협회는 2011년부터 온천보호지구에 관측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1개소에 관측장비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관측장비(36개소)의 유지보수를 수행하였음.

[온천자원관측장비 위탁사업 추진실적('11년~계속)]

□ (소요예산) 총 2,259백만원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민간위탁사업비)

('21년) 200백만원, ('22년) 200백만원, ('23년) 300백만원

□ (운영실적) 총 46개소(기존 36개소, '23년 11개소, 1개소 회수)

* 관측장비 설치, 수위센서 교체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추진

□ ('23년 추진실적) 관측장비 교체 설치(11개소) 및 유지보수, 관측장비 내구성 지속검증, 관측정보 관리 및 분석,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고도화

□ 위탁협약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온천협회에 ‘2023년 온천자원 관측장비 유지관리’ 업무¹³⁵⁾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온천협회는 위탁받은 업무 중 ‘관측장비의 구매 및 설치’를 민간기업(주)하OOOO)에서 수행하도록 용역계약을 체결¹³⁶⁾하고 있음.

□ 그러나, 위탁협약서에 따른 산출내역을 보면, ‘관측장비의 구매 및 설치’ 업무 외에 ‘관측장비 관리 및 유지업무’ 및 ‘관측시스템 서버관리비’ 등의 업무도 민간기업(주)하OOOO)에서 수행하며,

【“2023년 온천자원관측장비 유지관리 위탁협약서”의 산출내역서】

구분	공급가액	비고
1. 관측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223,700,000원	도급
1) 경비	180,667,912원	
① 관측장비 신규설치	72,910,000원	
② 관측장비 관리 및 유지비	59,233,520원	
③ 관측시스템 서버관리비	47,524,392원	
④ 회의비·인쇄비 등	1,000,000원	
2)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43,036,653원	
2. 데이터 관리·분석	76,300,000원	협회 직접수행
1) 경비	59,496,197원	
① 데이터 관리·분석 및 D/B 구축	59,146,197원	
② 회의비 등	350,000원	
2)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16,813,626원	
3. 합계(1+2)	300,000,000원	

※ 자료 : 「행정안전부-한국온천협회 위탁협약서」 중 산출내역서 정리

135) 「행정안전부-한국온천협회 위탁협약서 위탁협약조건」

제2조(위탁업무 내용)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업무는 2023년도 온천자원관측장비 유지관리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제1항 “과업내용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할 수 있다.

['과업내용서'에 따른 위탁업무]

① 관측장비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② 관측시스템 데이터 관리·분석, ③모니터링 고도화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시스템 연동

136) 「한국온천협회-(주)하OOOO 위탁계약서(용역계약)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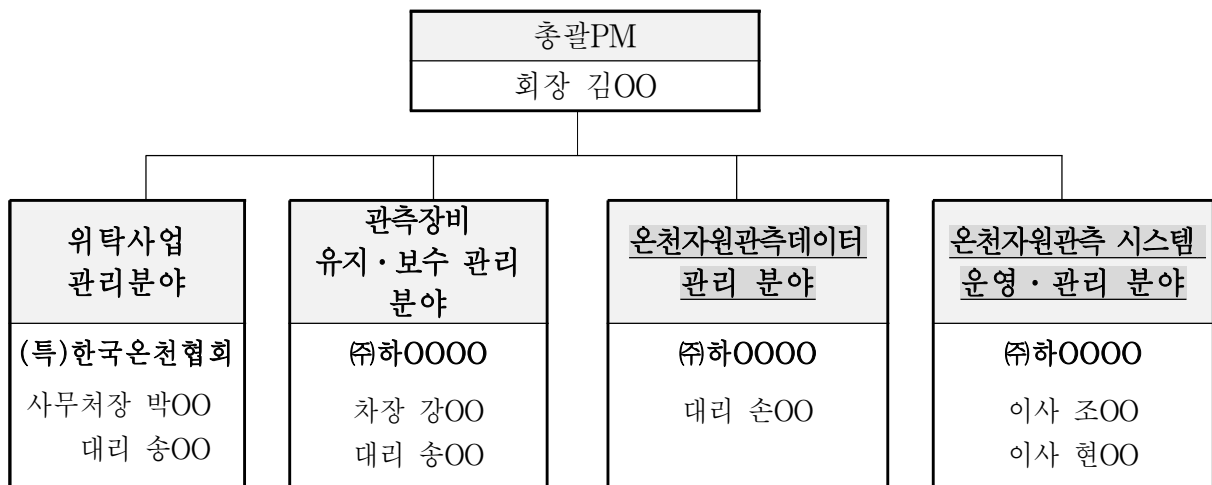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탁자”가 판매·설치하는 장비와 “위탁자”가 이를 구매하는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도) “수탁자”는 관측 장비의 납품은 지정 장소에의 설치를 포함한다.

□ 「2023년 온천자원 관측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른 업무분장 현황 등을 보면, 한국온천협회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할 ‘온천자원관측 시스템 운영·관리 분야’ 및 ‘데이터 관리’ 업무도 민간기관(주)하0000)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위탁사업 전반을 민간기관(주)하0000)에서 수행하고, 한국온천협회는 위탁사업의 관리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수행 편성 및 체계]

소속기관	성명	편성상 직책	업무분장
(특)한국온천협회	김OO	사업책임자	사업 총괄책임자
	박OO	사업참여자	위수탁사업 운영 총괄
	송OO	사업참여자	위수탁사업 운영·관리
(주)하0000	조OO	이사	온천자원관측 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현OO	이사	온천자원관측 시스템 운영·관리
	장OO	부장	행정사항 처리
	손OO	대리	온천자원관측 데이터 관리분야
	강OO	차장	관측장비 유지·보수 관리분야
	송OO	대리	관측장비 유지·보수 관리분야



※ 「2023년 온천자원 관측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결과보고서(9p)

□ 또한, 한국온천협회는 ‘관측데이터 관리·분석’ 업무의 직접 수행을 전제로 한국온천협회 위탁사업비를 산정하였으나, ‘관측데이터 관리’ 업무도 실질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온천협회의 위탁사업비 비중이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어 보이며,

‘2023년 온천자원관측장비 유지관리 사업 정산서’에 따르면, 온천협회에서는 ‘온천자원관측장비 유지관리’ 위탁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¹³⁷⁾에 대해서도 해당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음.

□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체결한 위탁협약조건 위반으로 보이며,¹³⁸⁾ 행정안전부는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온천협회의 위탁 협약조건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 체계를 시정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7) 한국온천협회 홈페이지의 사무분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온천자원관측시스템과 무관한 온천전문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사업 결과보고서의 사업수행 체계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없음.

138) 「행정안전부-한국온천협회 위탁협약서 위탁협약조건」

제10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② 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3.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938-300)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내역사업은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매년 10건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2021년 및 2022년 사업성과를 보면 총 20건 중 14건이 현재 운영이 중단되고, 6건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음.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수요 예측, 중장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 면밀한 계획 수립과 운영 성과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지역경제포럼’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경비를 11건의 지출로 나누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용하여 집행하고,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간에도 이용·전용 절차 없이 통합하여 집행한 바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은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내역사업으로는 ①실패 자산화 및 재도전 문화확산, ②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 ③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④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⑤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⑥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등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222억 3,100만원 중 222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이 불용¹³⁹⁾되었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22,231	-	-	-	22,231	22,202	-	29	19,275
실패자산화 및 제도전 문화확산	1,490	-	-	-	1,490	1,485	-	5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1,400	-	-	-	1,400	1,400	-	-	1,400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2,200	-	-	-	2,200	2,200 (1,483)	-	-	-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	7,515	-	-	-	7,515	7,512	-	3	7,515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9,171	-	-	-	9,171	9,169	-	2	4,200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455	-	-	-	455	436 (436)	-	19	1,160

139) 불용사유 : 집행잔액

나.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내역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격차해소, 시민안전 증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문제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시행되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음.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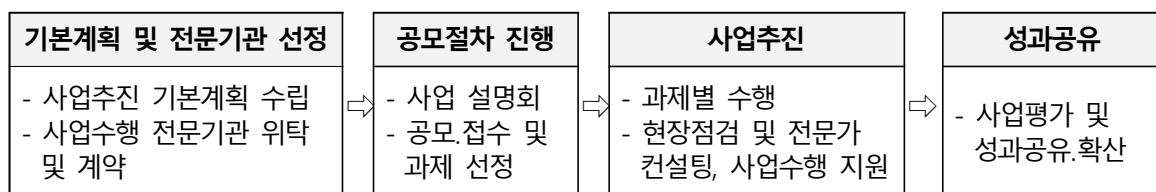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1월 ~ 12월
- (사업예산) 1,400백만원
 -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 1,400백만원(10개 과제×140백만원)
- (사업방식) 민간위탁을 통한 공모 추진 * 지역문제 해결 자유공모
- (공모대상) 민간기업 *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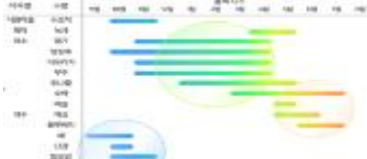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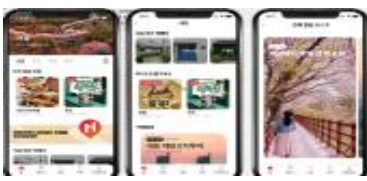
- (추진목적)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활용해 지역현안 해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 지역맞춤 지역활성화 사례 발굴 지원
- (사업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민간 대상 공모사업 추진
 - (주민참여) 공모 참여시 '스스로해결단*' 등 민관협의체 필수 구성
 - *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과제수행 기획·실행 전 과정 협력
- (성과공유 및 확산) 전문가 포럼 및 우수사례 발굴 추진

[사업 추진 과정]



※ 자료: 행정안전부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 예시]

사업명 (지자체)	주요 내용
범죄 예측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법대 순찰 경로 최적화 (전라북도)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순찰 및 방법 활동 지원을 위해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율방법대 순찰 경로 최적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확산) - 경찰청의 범죄데이터(PreCas-Data)와 주민이동경로,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지역 지역 특성 데이터, 지리정보 데이터(GIS)를 융합한 최적의 순찰경로 개발
안전한 섬 살이를 위한 선박 정보 안내 시스템 (전라남도 신안군) 	■ 선박 결항 등 선박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위험·불편사항을 신뢰도 있는 데이터 정보 공유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정보 취약 계층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 선박 데이터(선박위치, 선박결항 정보), 지역정보 데이터(통행정보, 섬 생활 안전 정보 안내) 등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
교통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 (경기도 양평군) 	■ 개인 데이터(경제활동 정보)와 이동데이터(개인의 보행/비보행 정보) 등의 가명 결합, 교통 조사통계 및 버스 노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대중교통 노선 최적 경로 개발 - 주민데이터 가명 결합을 통한 지역내 교통체계 개편 모델 구축으로 대중교통(버스) 수송 분담을 개선 및 이용 만족도 증대 등 주민 교통 복지 강화
실시간 품앗이 매칭 및 원데이 클래스 참여 앱 개발 (경상남도 하동군) 	■ 농어촌의 활력을 주고 지역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실시간 품앗이 매칭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계절별, 지역별 인력수급 현황 및 지역(산업) 특색 트렌드 분석 등을 통한 온라인 인구 유입 활성화 아이템 발굴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콘텐츠 및 위케이션 플랫폼 개발 (충청남도 부여군) 	■ 관광·문화 등 지원자원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위케이션 모바일 플랫폼(웹) 구축을 통한 위케이션 확대로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역 유입 인구 유형 데이터 분석, 관광객 등 소비 유형에 대한 분석 등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 활성화 플랫폼 개발

※ 자료 : 행정안전부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를 통해 총 3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 추진된 사업은 개발을 종료하고, 현재 협약에 따라 1년
간 테스트 운영 기간 중에 있으나, 2021년 및 2022년에 추진된 사
업은 현재 20건 중 6건만 운영되고 있음.

[2021년~2023년 추진사업 목록]

년도	분야	사업명 및 주요 내용	형식
'21년 (10건)	지역격차 완화	· 지역상생 마을관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APP
		·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WEB
		·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저층주거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환경 개선	시스템 구축
		· 언어장벽 없는 글로벌 부산, 부산시 외국인 통역상담 APP 서비스 구축	APP
		· ICT 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데이터 구축 플랫폼	APP
		·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숲 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업	WEB
	시민안전 확보	· 안전한 섬 살이를 위한 선박 정보 안내 시스템	APP
		· 우리 마을 안전 지킴이 지능형 IP스피커	ICT기기
		· 노약자 안전을 위한 비대면 의료 상담 서비스 구축	시스템 구축
		· 제주 안심 주차 번호	(APP/WEB)
'22년 (10건)	탄소중립	· 음식물쓰레기 감량·탄소중립을 위한 광진구 음식제로 플랫폼구축	APP
		· 탄소배출량 예측 기반 친환경축제 기획 플랫폼 구축	WEB
		· 탄소중립 푸른고양 나눔마켓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APP
		· 종로구 저탄소 생활 리빙랩, <모여서 넷제로>	(APP/WEB)
	건강· 안전	·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건강 습관 형성 사업	APP
		· 5070 고립 탈피를 위한 활동유도 서비스 ‘진(Jin)이의 하루’	APP
		· 전기안전 AIoT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전기생활안전 구축	ICT기기
		· AI기반 비대면 아동 미술 심리 분석 플랫폼 “심(心)터” 개발	APP
	소상공인 지원	· 스마트 역사 관광 지역소상공인 활성화 프로젝트	APP
		· 중랑구 사장님께 지원 정보를 배달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앱 플랫폼 구축	APP
'23년 (10건)	건강	· 고령자 인지장애 및 근력감소 예방을 위한 디지털 통합시스템 구축	APP
	돌봄	· 육아정보 모아모아, 원스톱 돌봄-키움 플랫폼 개발	WEB
	생활안전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유기견 실시간 포획 탐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	ICT기기
		· 주민과 통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 서비스 개발	APP
	교통	· 대중교통 효율 개선사업 (버스는 군민의 편리한 행복을 신고)	시스템 구축
	생활환경	· “찰칵”, 원스톱 불법 쓰레기 민원처리 및 분석시스템 구축	WEB
		· 사회복지시설, 상시 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ICT기기
		· 적수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	ICT기기
	여가	·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위케이션 플랫폼 개발	WEB
	사회통합	· 실시간 품앗이 매칭 및 원데이 클래스 참여 앱 개발	APP

[2021년 및 2022년 추진사업 운영 현황]

2024.6.30.기준

구분	과제명	투입 예산	운영현황	수행지역	운영성과 및 비교
2021년 추진사업(2021년 구축, 2022년 테스트운영)					
1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저층주거지 취약 계층의 에너지 소비 환경 개선	0.8억원	운영종료 ('22.9월)	서울 강서구	운영비 및 수익 모델의 한 계로 종료
2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0.8억원	운영종료 ('22.12월)	서울 관악구	예산 미확보
3	ICT 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데이터 구축 플랫폼	0.8억원	운영종료 ('22.12월)	광주 동구	예산 미확보
4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숲 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업	0.8억원	운영종료 ('22.12월)	강원 춘천시	예산 미확보
5	노약자 안전을 위한 비대면 의료 상담 서비스 구축	1.2억원	운영종료 ('22.12월)	경남 양산시	예산 미확보
6	지역상생 마을관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0.8억원	운영중단	서울 중구	가입자수: 2,005명 '집수리서비스시스템 운영 중단
7	언어 장벽 없는 글로벌 부산, 부산시 외국인 통역상담 APP 서비스 구축	0.8억원	운영중단	부산시	다운로드건수: 5,705건 앱 중단/일부 웹 이관
8	안전한 섬 살이를 위한 선박 정보 안내 시스템	1.2억원	운영중단	전남 신안군	다운로드건수: 225건 앱 운영 중단
9	우리 마을 안전 지킴이 지능형 IP스피커	1.2억원	운영중	경남 하동군	지능형 IP 스피커 6대 (+IP 카메라 6대) 설치 및 운영 중
10	제주 안심 주차 번호	1.2억원	운영중	제주 제주시	앱 운영 중단/ 웹 운영 • 가입자수 : 7,258명
2022년 추진사업(2022년 구축, 2023년 테스트운영)					
1	탄소배출량 예측 기반 친환경축제 기획 플랫폼 구축	1.1억원	운영종료 ('23.11월)	경남 통영시	개발·운영예산 미확보로 인한 중단
2	5070 고립 탈피를 위한 활동유도 서비스 '진(Jin)이의 하루'	1.1억원	운영종료 ('23.11월)	부산 진구	서비스 유지관리 비용 예산 미확보
3	전기안전 AIoT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전기 생활 안전 구축	1.1억원	운영종료 ('23.11월)	서울 동작구	동작구 서비스 이용 예산 미확보
4	스마트 역사 관광 지역소상공인 활성화 프로젝트	1.1억원	운영종료 ('23.11월)	부산 진구	예산 미확보
5	음식물 쓰레기 감량·탄소중립을 위한 광진구 음식제로 플랫폼구축	1.1억원	운영종료 ('23.12월)	서울 광진구	예산 미확보
6	종로구 저탄소 생활 리빙랩, <모여서 넷제로>	1.1억원	운영종료 ('23.12월)	서울 종로구	예산 미확보로 시범사업 종료
7	중랑구 사장님께 지원 정보를 배달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앱 플랫폼 구축	1.1억원	운영성과 저조	서울 중랑구	'23.하반기 이후 운영 중단/리뉴얼 추진 중
8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건강 습관 형성 사업	1.1억원	운영성과 저조	경기 하남시	'23.7월 이후 업데이트 미지원 등 운영 성과 저조
9	AI기반 비대면 아동 미술 심리 분석 플랫폼 "심(心)터" 개발	1.1억원	운영성과 저조	경기 고양시	'23.하반기 이후 업데이트 미지원 등 성과 저조
10	탄소중립 푸른고양 나눔마켓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1.1억원	운영중	경기 고양시	앱 운영 중단/ 웹 운영 • 가입자수 : 1,278명

- 2021년 및 2022년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20건 중 50%가 넘는 11건이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년 내에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3건의 서비스가 운영을 중단하여 현재 6건의 서비스만 운영 중으로,
-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각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적인 정착 노력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2021년 및 2022년의 운영 성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업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 부족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운영 예산 미확보로 운영이 종료되어 초기에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2021년 및 2022년 추진해온 사업의 서비스방식을 보면, 모바일 환경이 확산하면서 앱(APP) 방식이 22건 중 13건(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1년 및 2022년 추진사업 서비스 제공 방식별 현황]

비고	APP	WEB	ICT기기	시스템 구축	합계
개발 현황	13건(59%)	5건(23%)	2건(9%)	2건(9%)	22건
운영종료	10건	3건	1건	2건	16건
운영중	3건	2건	1건	-	6건

※ APP/WEB 서비스 동시 제공 2건은 중복하여 기재함.

- 그동안 부실한 공공앱의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¹⁴⁰⁾ 현행 사업 또한 앱 서비스의 경우, 13건 중 10건은 앱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3건만 운영중인 상황임.
- 공공앱의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구축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타당성, 효과성, 중복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공앱을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공공앱을 대상으로 성과 측정 결과를 매년 공개하는 등 공공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앱서비스 또한,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개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앱 서비스도 공공앱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통한 서비스의 지속 및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수행과제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여 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40) - 1억씩 들인 公共앱... 사용자는 수십명뿐, 2017.8.21. 조선일보

-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랐다, 2021.9.29. 위클리오늘

- "2억 들어 만들었는데"...공공앱, 절반 이상 '폐기 대상', 2024.1.12. SBS 뉴스

- 민간과 중복되고 활용 저조한 공공앱 대폭 정비되다, 2016.3.24.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 운영 성과 저조한 '공공 앱' 적극적으로 정비 중, 2023.6.1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구축된 서비스들이 계속 운영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방안 마련, 수행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등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사업부터 공모사업 선정 단계에서 심사기준에 과제의 지속성 및 성과활용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지원 확약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다. ‘지역경제포럼’ 개최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8일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기업인, 학계 및 연구소, 관계부처, 지자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음.
- ‘지역경제포럼’ 행사에 소요된 총 예산은 9,170만원으로, 행정안전부가 4,549만원, 대한상공회의소가 4,468만원을 각각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지역경제포럼' 개요]

(일시) 2023. 12. 18.(월) 13:30 ~ 15:25
(장소)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최·주관) 행정안전부·대한상공회의소 공동 개최
(예산) 총 9,170만원 (행정안전부 4,549만원, 대한상공회의소 4,468만원 분담)
(주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서울대 총장, 지역기업인, 학계·연구소, 관계부처, 지자체 등 200여명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역경제포럼’ 행사는 당초 2023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행사경비를 11건의 지출로 나누어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세부사업을 포함한 총 4개의 세부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였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포럼’ 집행내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령인	건명	지급액(원)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정부혁신 조직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1)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주)팀OO	연사 소개영상, VJ영상 디자인 및 제작비용 지급	3,000,000
				(주)팀OO	스피커 등 음향장비 설치비용 지급	3,200,000
				(주) 맥OOOOOOO	중계시스템 임차료 지급	4,900,000
				(주)대일 인OOOOO OOOOOOOOO	행사장 임차료 지급	4,900,000
일반회계	행정안전 지원	본부 기본경비	(2)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 관리	(주)팀OO	사진 촬영 및 Key Visual 제작비용 지급	4,800,000
				(주) 맥OOOOOOO	행사장 바닥 및 영상 LED 가림막 설치비 지급	4,900,000
				발표자(7명)	지역경제포럼 발표자 및 토의 참가자 수당	2,590,000
			(3) 지방자치 분권실	(주) 맥OOOOOOO	영상 및 무대 레이어 설치비 지급	4,900,000
				(주) 맥OOOOOOO	행사장 전면 영상 LED 시스템 설치비 지급	4,900,000
	지방자치 분권	지자체 역량강화	(4) 자치분권 위원회 운영	(주)팀OO	발표자료 및 비표 등 유인물 제작비용 지급	4,900,000
				(주)대일 인OOOOO OOOOOOOOO	지역경제포럼 행사장 케이터링 비용 지급	2,500,000
합 계						45,490,000

□ ‘지역경제포럼’ 행사경비 집행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적정한 집행으로 보임.

□ 첫째, ‘지역경제포럼’ 행사는 ①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으로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세부사업의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② 1건

의 행사운영 경비를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 관리”, “지방자치분권실” 및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등 사업 목적이 다른 4개의 세부사업에서 분할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¹⁴¹⁾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이용·전용¹⁴²⁾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당초 예

14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4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혼용하여 집행하고, 이용·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간에도 '지역경제포럼' 행사 예산을 분할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

□ 또한, 한 건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집행함에 따라 '지역경제포럼' 행사의 규모 및 집행 예산의 총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사업 종료 후 결산 심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역경제포럼'은 총 9천만원(행정안전부 45백만원 부담)이 소요된 행사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쟁계약을 통해 지출관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당 500만원 이하의 여러 건의 지출로 나누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어, 「국고금 관리법」¹⁴³⁾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제도를 부적절하게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3)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

활용한 것이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향후 행정안전부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고,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마을기업육성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3131-301)

-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마을기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에 서버 이관 및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마을기업 홈페이지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홈페이지 구축 예산 편성에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안전부는 잔여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동일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향후 행정안전부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69억 6,500만원 중 69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¹⁴⁴⁾하였음.

144) 불용사유: 연구용역 낙찰차액(9백만원), 임차료 집행잔액(1백만원)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마을기업 육성사업	6,965	-	-	-	6,965	6,955	-	10	2,695
마을기업 활성화지원	270	-	-	-	270	260	-	10	-
마을기업 육성사업	6,695	-	-	-	6,695	6,695	-	-	2,695

나.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노력 필요

-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은 마을기업에 대한 역량개발, 경영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마을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마을기업 데이터 관리를 위해 마을기업 홈페이지를 구축(2023.11월)하였음.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집행 세부 내역]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260백만원 - 전문가 심사 및 컨설팅 추진 50백만원 - 마을기업 인지도 제고 홍보 119백만원 - <u>마을기업 DB 구축 91백만원(신규)</u>
-------------	---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매년 마을기업 데이터를 현장 방문, 우편, 전화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정보화마을 사업¹⁴⁵⁾이 2023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마을기업 종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을기업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공유 확대 등을 위한 마을기업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용역을 추진하였음.

145)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교육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됨.

[‘마을기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 용역
- (용역사) (주)오OOOOO
- (금액/기간) 91백만원 / '23. 6. 16.~11. 15.(5개월)
- (내 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마을기업 정보 및 데이터 시스템 추가

✓ (현행) 정보화마을 소개+쇼핑몰+체험마을 → (개편) 마을기업-정보화마을 소개+마을기업 DB
 * 쇼핑몰 기능은(invil.com) 정보화마을 협회 등에 이관 예정

※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시스템 이관을 기준으로 개편

□ 홈페이지 시스템

1. 마을기업 기본 데이터 입력 및 관리
 - (기본현황) 마을기업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마을기업 유형, 주생산물, 법인명, 법인번호, 법인형태,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현황
 - (사업성과) 매출액, 임금근로자 고용, 타부처사업 연계
 - (지역사회 공헌활동) 유형, 횟수, 내용, 금액
2. 마을기업 및 정보화마을 소개
 - 사업개요, 지정요건 추진절차, 지원사항, 관련규정,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우수마을기업 소개 등
3. 마을기업 관련 정보 제공
 - 연도별 지정현황, 지역별 운영현황, 연도별 매출액, 임금근로자 고용현황
4. 마을기업 지원(커뮤니티 공간)
 - 건의사항 게시, 답변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연관 사업 정보 제공
5. 데이터 활용 권한 관리 등
 - 지자체, 중간지원기관 등 접근권한 부여

<구축된 마을기업 홈페이지>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당초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홈페이지 구축('23.11월) 후 서버 이관('24년 상반기)을 거쳐 2024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에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현재 홈페이지는 구축되었으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23.6.28.) 후속 조치¹⁴⁶⁾에 따라 해당 사업비가 전액 삭감¹⁴⁷⁾되어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 2025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임.
- 마을기업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화사업에 해당되는 측면이 있어, 정보화사업 신규사업으로 초기에 예산을 편성한 경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⁴⁸⁾에 따라 최초 예산 요구시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 등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짐에 따라 차년도 운영비 확보가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146) '24년 예산요구안에 대해 지출목적의 정책적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147)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 : '23년 2.7억원 → '24년 0원(전액 삭감)

148)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 예산'의 경우 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총사업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인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 및 추가구축비,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용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 마을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사업이 지속될 것임을 고려할 때, 마을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마을기업 운영 현황]

구분	마을기업(개소)	고용인원(명) * 상용근로자	매출액(억원)
2019년	1,556	3,077	1,928
2020년	1,652	3,219	2,057
2021년	1,697	2,888	2,464
2022년	1,770	3,171	2,656
2023년	1,800	3,189	3,090

-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5회계연도 예산에 마을기업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예산 계획과 편성이 면밀하게 이뤄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잔여 예산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 ‘마을기업 육성’ 내역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에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회계연도에는 6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각 시·군별 3개 이상의 마을기업이 참여한 연합체 공동사업에 판로지원,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최대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마을기업 육성사업’ 내역사업의 잔여 예산으로 추진한 것임.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개요]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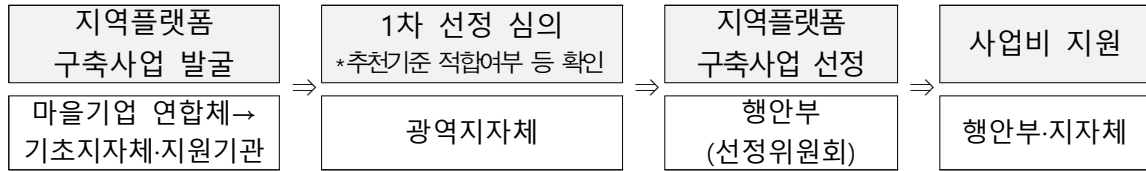
- (선정대상) ①지역적 기준 기초지자체, ②규모 마을기업 3개 이상이 참여한 연합체, ③참여비율 1개 마을기업 최대 50% 이하

- (조건) ①참여 마을기업 전체는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 ②'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를 지원받은 마을기업(신규·재지정·고도화·우수·모두에·재도약)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합체는 별도의 단체나 법인을 구성할 필요는 없음
- (비율) ①마을기업별 참여비율을 정하여 신청, ②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기업을 주 추진 기업으로 지정, ③주 추진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추진(나머지 기업은 동의서 제출)

○ (선정규모) 최대 4개

○ (지 원 액) 최대 3억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없음)

○ (선정절차)



※ 신청유형(예시) - 자체적인 유형을 발굴하여 신청 가능

유형	내용(예시)
판로확보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교육	장애인 돌봄+교육+진로·체험
예술	예술기획+공연+문화탐방
청년	청년마을기업간 연계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23년 기존 사업 추진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 플랫폼 사업을 시범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마을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가 심사 평가, 쇼핑몰 입점, 품평회 등 판로지원, 컨설팅 지원 등 간접 지원 사업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동일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¹⁴⁹⁾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

149) '2024년 마을기업 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예산: 6.2억원(국비 50%+지방비 50%) / 절차: 시도 추천→서류·현장 심사→발표 심사 및 선정
- (선 정) 3개 연합체(강원 홍천군, 제주 서귀포시, 충북 영동군) 선정(2024. 6. 28)
- (예산교부) 사업비 교부 완료(2024. 8. 2.)

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⁵⁰⁾

이를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회계연도 말인 2023년 12월 12일 및 12월 21일에 사실상 보조금의 이월을 전제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023년도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시범지역 (교부일)	교부액	집행액 (*23.12.31. 기준)	이월액	비고
경기 포천 (12.12./12.21.)	150	87	63	- 2024.8.19. 기준 사업 추진 중
전남 여수·해남 (12.12.)	260	0	260	- 2024.8.19. 기준 해남(사업 추진중), 여수(완료)
합계	410	87	323	

※ '23년 플랫폼 사업 확정 통보(10월) → 지자체 교부 신청(11월) → 행안부 보조금 교부(12월)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잔여 예산을 통해 임의로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교부는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할 필요가 있음.

15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경제실】

15. 지방재정 정보화(1332-500)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매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소 입찰공고 기간인 40일을 준수하지 않은채 발주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19년 이후 매년 입찰자수가 1~2개로 과소하여 동일 업체가 이를 수주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 시행령에 따른 최소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최소 입찰공고 기간을 미준수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을 1회만 거친 후 무응찰·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 시행령에 따라 최소한 경쟁입찰을 2회 이상 거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지방 재정관리시스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등 지방재정 관련 전산 시스템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74억 3,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재정 정보화	7,432	-	-	-	7,432	7,432	-	-	5,620

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긴급입찰 지양 필요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 지방재정 관련 세부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임.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기술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¹⁵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체결되고 있으며, 이 용역 또한 매년 통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체결하고 있음.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¹⁵²⁾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를 최소 40일 이상 하도록 하고 있음.

1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1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소 입찰 공고 기간을 정한 취지는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어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안서에 가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중인 기술력·인적자원, 유사 과업 수행경험 및 향후 과업 수행 계획 등 방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 입찰공고 기간을 40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최소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이는 특정 업체의 수주 독점 또는 용역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2019년 이후 매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하여 입찰공고를 40일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최소 70억원 이상의 고액이었음에도 입찰자가 1~2명뿐이어서 매년 동일 업체가 이를 수주하고 있음.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 및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용역명(공고명)	최초입찰 공고일	최초입찰 공고기간	입찰자수	낙찰자	추정가격	투찰금액 (계약금액)
2024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년도 12.19	27일	2	M사	18,593	18,582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사업	전년도 11.16	27일	2		10,268	10,217
2022년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사업	전년도 11.15	23일	1		7,510	7,382
2021년 지방재정 정보화	전년도 11.9	29일	1		7,006	6,888
2020년 지방재정 정보화	전년도 11.21	15일	1		7,409	7,228
2019년 지방재정 정보화	전년도 11.20	21일	1		7,357	7,247

주) 용역 계약금액은 국가에서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체 예산이 포함
되어 있어, 이 사업 예산과 상이함

자료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입찰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으나,
이 용역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특히 회계연도
시작 전에 발주하고 있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해당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은 향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칙적 입찰공고 기간인 40일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임.¹⁵³⁾

153)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시까지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사전절차가 있어 입

다.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수의계약 요건 준수 필요

□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지방공공기관 예산회계 시스템,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 지방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각종 전산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임.

이 용역 또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유사하게 2019년 이후 매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하여 입찰공고를 40일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입찰자가 매년 1명으로서 동일 업체가 이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있음.

찰공고 기간 40일을 준수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임. 그러나 표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용역 발주 절차를 10월 6일에 시작하는데, 어차피 국회 예산 확정 전에 용역 발주를 시작한다면 이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말 또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제출되는 9월초부터 시작하여 입찰공고 기간 40일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기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계약 일정]

수행주체	수행절차	일자	기간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일상감사, 보안성검토	10.6~10.20	15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협약	10.21~10.25	5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상감사	10.26~10.27	2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발주 계획보고 및 조달발주요청	10.30~10.31	2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발주시스템 제안요청서 등록	11.1	1일
조달청	내부검토	11.1~11.15	15일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11.15~11.19	5일
조달청	사전공고 의견사항 처리	11.19~11.22	4일
조달청	입찰공고(본공고)	11.22~12.19	25일
조달청	기술평가	12.2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술협상	12.22	-
조달청	용역 계약체결	12.28	-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3년 6월 기획재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제정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모든 경쟁입찰을 긴급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침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것인데, 전술한 것처럼 용역 발주절차를 앞당긴다면 용역계약 및 예산집행을 동일하게 연초에 수행하면서도 입찰공고 원칙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 및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용역명(공고명)	최초입찰 공고일	최초입찰 공고기간	응찰자수	낙찰자	추정가격	투찰금액 (계약금액)
2024년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전년도 12.5	17일	1	H사	2,966	2,933
2023년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전년도 12.22	20일	1		3,141	3,100
2022년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전년도 12.9	19일	1		2,705	2,705
2021년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전년도 12.28	15일	1		2,330	2,281
2020년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전년도 11.18	23일	1		2,204	2,159
2019년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전년도 12.11	23일	1		2,007	1,975

자료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154)에 따르면 무응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거친 후에 체결할 수 있음.

이에 이 용역도 2019년~2020년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거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1회만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1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단독응찰이 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경쟁입찰을 거친 후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용역은 일반적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시장에 복수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매년 원칙적 입찰공고 기간인 40일을 준수하지 않은 가운데 단독응찰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단독응찰이 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인정”됨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해당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향후 지방공공기관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칙적 입찰공고 기간인 40일을 준수하는 동시에, 수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소한 2회 이상의 경쟁입찰을 거친 후 이를 체결할 필요가 있음.

16. 지방세정보화 추진(1333-500)

- 행정안전부는 16개 시·도의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서울특별시 시스템을 통합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사업의 착수금 48억 7,800만원을 2022년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였음.
그러나 3단계 사업은 반복적 유찰 등으로 착수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그 사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이미 개통되었으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된 사업비 48억 7,800만원을 환수하거나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세정보화 추진’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표준 지방세입정보시스템(Wetax)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70억 4,900만원 중 56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7,100만원을 불용¹⁵⁵⁾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세 정보화	7,049	-	-	-	7,049	5,678	-	1,371	5,868

155) 불용사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일 지연으로, 해당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불용

나. 장기간 미집행 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 위탁사업비의 환수 또는 조속한 집행 필요

- 이 사업에 따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200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전면 시행하며 개통되었음.

이후 시스템 노후화 및 기능개선 요구에 따라 2019년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 행정서비스도 통합 제공하고, 기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시스템과의 통합도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획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1단계 사업과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음.

- 한편, 개별 시스템을 사용하던 서울특별시와 그 25개 자치구의 경우,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하며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¹⁵⁶⁾하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이미 진행 중이던 2020년 합의가 이루어져 2022년부터 3단계 사업으로서 추진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3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반복적 유찰 등의 사유로 다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임.

156) 서울특별시는 자체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보다 약 10년 가까이 먼저 구축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시스템 통합시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었음(파이낸셜뉴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놓고 행안부-서울시, 지방분권 갈등」, 2019.6.16.).

□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2년 3단계 사업의 착수금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예산 48억 7,800만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였는데,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며 해당 금액이 실집행되지 않고 있고 이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서비스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통합이 상대적으로 곤란해진 상황임.¹⁵⁷⁾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급된 3단계 사업비 48억 7,800만원을 환수하거나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157) 최근까지도 서울특별시도 일부 기능만 연동하는 수준에서 참여할뿐 전면 통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경인일보,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반쪽... 서울시 "방식 달라 통합 어려워"」, 2024.3.6.).

17.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정책추진(1338-300)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아직 제도 운영의 초기이기는 하지만, 납세자의 신청 건수가 적고,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인용률은 낮으며, 기각 및 요건 미충족의 비율이 높은 등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영세 지방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 지원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 완화 및 제도 홍보 강화 등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개 요

-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사업은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의 출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1억 900만원 중 10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을 불용¹⁵⁸⁾하였음.

158) 불용사유 : 운영비 집행잔액 및 공공시설 임차 등 임차료 절감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1,109	1,109	-	-	-	1,109	1,086	-	23	1,375
지방세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60	60	-	-	-	60	57	-	3	60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추진	32	32	-	-	-	32	31	-	1	32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개선	246	246	-	-	-	246	227	-	19	215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심층평가	504	504	-	-	-	504	504 [491]	-	-	504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37	137	-	-	-	137	137 [132]	-	-	137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타당성 평가	100	100	-	-	-	100	100 [94]	-	-	400
특정금융거래정보 지방세 활용·지원	30	30	-	-	-	30	30	-	-	27

나.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추진’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서민·영세납세자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의 예산 세부 내역]

세사업 명	예산 세부 내역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추진	☐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추진: 3,200만원 ① 납세자 보호관 ¹⁵⁹⁾ 담당자 직무 교육: 1,400만원 · 운영물품 500만원, 인쇄비 600만원, 임차료 200만원, 참석여비 100만원 ② 납세자 보호관 우수사례 발표: 1,600만원 · 운영물품 397만원, 인쇄비 800만원, 시상현관 200만원, 임차료 200만원, 참석여비: 50만원 ③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착: 130만원 · 운영물품 40만원, 참석여비 90만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추진 사업의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추진	32	32	-	-	-	32	31	-	1	32
- 일반수용비 (210-01)	26	26	-	-	-	26	25	-	1	26
- 임차료 (210-07)	4	4	-	-	-	4	4	-	-	4
- 국내여비 (220-01)	2	2	-	-	-	2	2	-	-	2

☐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추진’ 사업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출장 등을 위하여 운영물품

159)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되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함. 납세자 보호관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자체를 대리하여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과 차이가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40만원, 참석여비 90만원 등 총 13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¹⁶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6항¹⁶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이 영세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서, 2019. 12. 31. 법 개정을 통하여 2020. 3. 2.부터 시행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개요]

- (제도취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 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를 무료로 대리(2020.3.2. 시행)
- (신청요건)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분	선정 대리인 신청요건
신청대상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신청세액	1,000만원 이하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배우자 재산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배우자 소득 포함) 이하 등 (단, 법인, 고액·상습채납자는 제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적용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 (대리인 자격요건 등) 일부 내용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구분	선정 대리인 자격요건
위촉대상	▪ 관련 경력 3년(조례로 따로 정할수 있음)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	▪ 2년, 1번에 한하여 연임 가능
수당	▪ (원칙) 지식기부를 통한 무료 불복업무 대리 ▪ (예외)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가능
인센티브	▪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 등

- (신청·지원절차) 납세자가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 자료 : 행정안전부

□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대리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건수는 총 217건임. 선정 대리인 제도와 유사한 목적에서 운영 중인 국세 분야의 국선대리인¹⁶²⁾ 지원이 2022년 연간 415건 실시된 것

160)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 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62) 국선대리인은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제도로써 근거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임.

을 감안하면 선정 대리인의 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2020년~2023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건수]

(단위: 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선정 대리인 신청 건수	70	51	37	59	217

※ 자료 :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2023년 국세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단위: 건)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기준)	합 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1,731	237	413	396	415	235	3,427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7. 27.) 참고

□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 대리인의 신청 사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17건의 접수 건 중 인용은 4건(1.8%), 기각 116건(53.5%), 요건 미충족 91건(41.9%) 등으로 나타나는데, 인용률이 낮고, 기각 및 요건 미충족 비율이 높은 수치를 보임.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4.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이하 생략)

[2020년~2023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신청 사건의 처리 결과]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인용	1	1	-	2	4
기각	40	23	28	25	116
진행중	3	1	1	1	6
요건미충족	26	26	8	31	91
합계	70	51	37	59	217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 대리인 신청 사건의 41.9%가 요건 미충족인 것과 관련해서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와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청 요건을 비교해 보면, 청구 대상에 있어서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와 달리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이 가능함. 그리고 신청세액의 경우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는 5,000만원 이하인 반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청인 측면에서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는 개인 외에도 법인이 가능하지만, 지방세 선정 대리인의 경우 법인은 불가능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재산, 소득 기준 산정시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세 국선대리인과 지방세 선정 대리인의 신청 요건]

구분	국세 국선대리인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청구대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신청세액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신청인 요건	① (개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②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개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배우자 소득 포함), 보유재산 5억원 이하(배우자 재산 포함) 등 ※ 법인, 고액·상습채납자 제외
적용 제외 세목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결과통지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자료 : 행정안전부

□ 이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제도 운영의 초기이기는 하지만 국세 국선대리인과 비교하여 납세자의 신청 건수가 적고,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인용률은 낮 으며, 기각 및 요건 미충족의 비율이 높은 등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음.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 지방세 납세자를 돕기 위 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요건 완화 및 제도 홍보 강화 등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2024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개정을 통해 신청요 건 완화¹⁶³⁾를 추진할 예정이며, ② 2024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

호제도 관련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선정 대리인 부문을 신설하는 등 우수사례 선정 및 공유(우수사례집 배포 등)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③ 납세자의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별지 제56호 서식: 이의신청서] 등 불복 청구 서식에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163) (개인) 청구·신청세액 상향(1천만원 이하→2천만원 이하), 재산·소득 산정 시 배우자 제외
(법인) 영세법인 신규 허용

18.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가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집행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개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23억 9,400만원 중 22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800만원을 불용¹⁶⁴⁾하였음.

164) 불용사유 : 포상금 지급 근거의 부재에 따른 포상금(5,000만원),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1,900만원), 지방규제개혁 공론화 지원사업 등 추진내용 일부 변경·취소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5,900만원) 및 임차료(1,800만원) 등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경제활성화	2,394	2,394	-	-	-	2,394	2,165	25	158	5,582
정책추진 보조요원	81	81	-	-	-	81	75	-	5	82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추진	233	233	-	-	-	233	181	-	52	233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등추진	1,647	1,647	-	-	-	1,647	1,607 [1,561]	25	15	4,833
지방규제개혁 추진	137	137	-	-	-	137	135	-	2	137
지방규제개혁 공론화과정지원	297	297	-	-	-	297	213	-	84	297

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추진’ 사업은 골목상권의 유지·경쟁력 강화 및 착한가격업소 제도 개선을 통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등추진의 예산 세부 내역]

세사업 명	예산 세부 내역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	☐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 16억 700만원 ①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책자, 표창장 등: 500만원 ② 골목상권 및 착한가격업소 관계자 간담회: 600만원 ③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3,500만원 ④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기능개선(고도화): 5,800만원 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5억300만원(5,895개×85만원×30%)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등추진 사업의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등추진	1,647	-	-	-	1,647	1,607 [1,561]	25	15	4,833
- 일반수용비 (210-01)	5	-	-	-	5	5	-	-	5
- 임차료 (210-07)	2	-	-	-	2	-	-	2	2
- 관리용역비 (210-15)	35	-	-	-	35	35	-	-	35
- 사업추진비 (240-01)	6	-	-	-	6	6	-	-	6
- 일반연구비 (260-1)	96	-	-	-	96	58	25	13	-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503	-	-	-	1,503	1,503 [1,457]	-	-	4,785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2024년 3월 기준 7,226개 업소 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15억 300만원(국고보조율 30%)임.

[착한가격업소 제도 개요]

□ (목적)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업소들의 매출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 (제도 연혁)

○ 2011년~2022년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 행정안전부는 2011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마련

○ 2023년 : 국비 예산 지원 시작

□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깨끗한 시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 (지정 기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서 규정

○ (지정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공고→영업자 직접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공동 현지실사 →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검토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월기준)
착한가격 업소 수(개)	5,762	5,799	5,895	6,146	6,633	7,226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주방세제, 고무장갑, 쓰레기봉투 등 필요한 물품의 제공, 시설 개보수 지원,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2024년 6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219,719명)¹⁶⁵⁾ 등

○ 2022년까지 착한가격업소당 평균 지원 혜택은 연 45만원 수준

○ 2023년부터 착한가격업소당 평균 지원 혜택은 연 85만원 수준으로 상향

※ 자료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자료 등

165)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주소: www.goodprice.go.kr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이용자 수	145,548	120,912	86,263	85,355	142,511	219,179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 15억 300만원¹⁶⁶⁾중 14억 5,700만원을 집행함.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집행률은 90% 이상이고, 지원금은 업소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지원, 방역 등에 사용됨.

[2023년 지방자치단체별 착한가격업소 지원 결과]

(단위: 백만원, %)

지역	예산액			집행액			국비 집행률	지원 내용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서울	223	599	822	218	576	794	98	업소 운영물품 구매, 방역, 홍보, 신규 지정 표찰
부산	170	418	588	169	415	584	99.3	업소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지원, 상품권, 업소용 홍보배너 제작
대구	62	148	208	58	137	195	93.6	업소 운영물품 구매, 시설개선, 표찰 제작
인천	56	132	189	55	128	183	97	업소 운영물품 구매, 방역, 메뉴판 및 표찰 제작
광주	52	147	200	52	147	199	99.6	업소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지원, 방역, 홍보, 에어컨 청소, 표찰 제작
대전	72	167	239	71	167	239	99.9	업소 운영물품 구매, 홍보
울산	28	65	93	27	63	90	97.6	업소 운영물품 구매
세종	9	41	50	9	41	50	99.8	업소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지원
경기	179	453	632	176	446	622	98.6	업소 운영물품 구매, 시설 개선, 공공요금 지원, 상품권, 방역, 홍보, 표찰 제작
강원	93	242	335	84	230	314	90.9	업소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지원
충북	82	190	272	77	181	259	95.2	업소 운영물품 구매, 기타
충남	77	185	262	71	168	240	92.5	업소 운영물품 구매, 시설 개선, 방역, 안전점검
전북	81	209	290	78	202	280	96.1	업소 운영물품 구매, 시설 개선, 공공요금 지원, 상품권, 방역, 홍보, 기타
전남	81	195	276	78	186	263	95.7	업소 운영물품 구매, 시설 개선, 공공요금 지원, 홍보, 현판·지정패
경북	107	262	369	106	258	364	98.9	업소 운영물품 구매, 시설 개선, 방역, 기타
경남	99	230	329	96	228	324	96.8	업소 운영물품 구매, 시설 개선, 공공요금 지원, 상품권, 표찰·현판
제주	32	74	105	30	71	101	94.3	업소 운영물품 구매, 공공요금 지원
합계	1,503	3,757	5,259	1,455	3,644	5,101	96.8	

※ 행정안전부 제공자료(각 지자체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

166) 이와 관련하여 업소당 지원금액 85만원에 국고보조율 30%를 적용하여 총 15억 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5,895개소 × 85만원 × 30% = 15억 300만원)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2024년 3월~7월 실시)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매출액 및 생존율 증가에 기여하고, 지역물가의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효과 분석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 (착한가격업소 매출액) 매출 증대에 긍정적

- (정량적 측면) 착한가격업소의 2022년도와 2023년도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69.8%(4,410개 업소)는 매출액이 2,800만원 증가했고, 착한가격업소의 31.1%(1,995개 업소)는 매출이 평균 1,500만원 감소함.
- (정성적 측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점포 운영 체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44.3%가 매출액 증대 및 고객 유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1.1%는 보통, 14.6%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

□ (착한가격업소 생존율) 미지정업소보다 생존율 높음

- 착한가격 지정업소와 미지정업소의 개업일 이후 연도별 생존률을 분석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5년차 생존률은 76.58%이고, 미지정 일반업소의 5년차 생존률은 53.46%로 착한가격업소의 5년차 생존률이 23.12%p 높음.

□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 메뉴가격이 일반업소 메뉴가격보다 저렴

- 2023년 12월 기준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등 음식의 전체 지역물가와 착한가격업소의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모든 품목이 미지정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구분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일반업소 평균가격(원)	9,870	9,482	8,124	13,728	6,490	15,810	8,181	3,046
착한가격업소 평균가격(원)	6,804	7,335	7,110	11,389	4,897	13,138	6,347	2,882
차이(원)	3,066	2,147	1,014	2,339	1,594	2,672	1,834	165

□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체의 의견

- 홍보지원 강화(홍보용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도검색서비스 등), 물품·공공요금 지원 확대, 세금 감면, 카드수수료 지원(환급 청구할인), 노후시설·설비의 수리·교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됨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4년에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을 7,000개 업소로 확대하였고, 국비 지원 예산도 17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2023년 예산 15억 300만원 보다 2억 8,200만원 증가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2023년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5억 300만원 = 5,895개×85만원×3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7억 8,500만원 = 7,000개×85만원×30%

-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지정 기준 중 착한가격 메뉴 수 기준(25점)과 이용자 만족도 기준(20점)을 삭제함¹⁶⁷⁾. 이 두 가지 지정 기준이 삭제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의 착한가격 메뉴의 수가 줄어들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요건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지정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에 한함	▶ 변경 없음
지정 기준	총 괄	▶ 총 110점 중 70점 이상 시 지정 ▶ 평가결과 일부 지표 점수가 지정 곤란 시 지정 보류 가능.	▶ 총 55점 중 40점 이상 시 지정 ▶ 변경 없음

167)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함.

구 분		현 행		개 정													
[가격 기준_정량]																	
주변 대비 저렴도	가격 수준 [30점]	▶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비율 (신규지정 시) <table><tr><td>구분</td><td>5%미만</td><td>10%미만</td><td>20%미만</td></tr><tr><td>신규</td><td>20점</td><td>25점</td><td>30점</td></tr><tr><td>재지정</td><td>10점</td><td>15점</td><td>20점</td></tr></table>		구분	5%미만	10%미만	20%미만	신규	20점	25점	30점	재지정	10점	15점	20점	➡	▶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신규 지정 30점, 재지정 20점
	구분	5%미만	10%미만	20%미만													
신규	20점	25점	30점														
재지정	10점	15점	20점														
동결 기간 [10점]	▶ 착한가격 유지 기간(재지정 시) <table><tr><td>6개월 미만</td><td>6개월~1년</td><td>1년 이상</td></tr><tr><td>0점</td><td>5점</td><td>10점</td></tr></table>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 이상	0점	5점	10점	▶ 1년 이상 평균가격 이하 운영 시 점수 부여 <table><tr><td>1년 이상~2년 미만</td><td>2년 이상</td></tr><tr><td>5점</td><td>10점</td></tr></table>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5점	10점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 이상															
0점	5점	10점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5점	10점																
착한가격 메뉴 수 [25점]→[삭제]		▶ 착한가격 메뉴 수 <table><tr><td>2개 이상</td><td>3개 이상</td><td>4개 이상</td></tr><tr><td>15점</td><td>20점</td><td>25점</td></tr></table>		2개 이상	3개 이상	4개 이상	15점	20점	25점	➡	▶ [기준 삭제]						
2개 이상	3개 이상	4개 이상															
15점	20점	25점															
[가격 외 기준_정성]																	
이용자 만족도 [20점]→[삭제]		▶ 포털사이트 만족도 평가 활용 ▶ 현지 실사 시 평가자 평가 점수		➡	▶ [기준 삭제]												
위생·청결 [20점]		▶ 주방 등, 매장 내, 화장실 평가 <table><tr><td>주방 등</td><td>매장 내</td><td>화장실</td></tr><tr><td>10점</td><td>7점</td><td>3점</td></tr></table>		주방 등	매장 내	화장실	10점	7점	3점	➡	▶ 변경 없음 ※ ① 식약처 위생등급 ‘ 좋음 ’ 이상(요식업) ② 1년 이내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활용 가능						
주방 등	매장 내	화장실															
10점	7점	3점															
공공성 [5점]		▶ 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모두 이행 5점, 일부 미이행 0점)		➡	▶ [변경] 항목별 배점 부여(각1점) ※ 기존 공공성 항목 → ‘ 지정제한 조건 ’												
가점 [10점]→[삭제]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등		➡	▶ [기준 삭제]												
지정 시기	지정 시기	▶ (정기) 연 2회(반기별) ▶ (수시) 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		➡	▶ [변경] - (일제정비) 연 2회(3,9월) - (현 행 화) 연 4회(3,6,9,12월) - (수시) 변경 없음												
	지정 취소	▶ (신규) 총점 70점 미만 ▶ (재지정) 자진취소, 휴업(1개월 이상), 폐업, 행정처분		➡	▶ [변경] (신규) 총점 40점 미만 ▶ [재지정 제한 기간 설정] 자진취소, 행정처분 시 3개월내 재지정 불가												
사후 관리	정보 관리	▶ (정기) 행정안전부 ▶ (수시) 지자체		➡	▶ (정기, 수시) 지자체 * 일제정비, 현행화 모두 지자체에서 관리												

※ 자료 : 행정안전부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착한가격
업소가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
는 한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집행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19.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1131-314)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대면회의 시 민간위원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 관련 안전 심의시간에 비례하여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서면회의 시 심의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통상의 지급금액에 따라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민간위원으로부터 서면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등 용역 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의 수,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금을 안전검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사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신체·생명·재산 피해 발생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의결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및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5억 3,000만원 중 5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¹⁶⁸⁾하였음.

168) 불용사유: 위원수당(19백만원), 정례회의 장소 임차비(1백만원), 우편요금(1백만원), 특근매식비(3백만원), 직책수행경비(1백만원) 집행잔액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주민등록번호변경 위원회 운영	530	-	-	-	530	505	-	25	505
위원회 회의 운영	140	-	±2	-	140	120	-	20	135
변경제도 교육홍보	116	-	-	-	116	116	-	-	110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5	-	-	-	55	55	-	-	55
가관운영비	126	-	-	-	126	121	-	5	121
온라인변경신청 연계시스템 구축	93	-	-	-	93	93	-	-	-
변경신청 입증자료 연계관리체계 구축	-	-	-	-	-	-	-	-	84

나. 안전검토수당 지급방식 개선 필요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¹⁶⁹⁾에 따라 주

169) 「주민등록법」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변경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2023년에는 매월 2회씩 총 2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2023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의결 현황]

구분	총계	변경신청 심의					사실조사 실시 심의				이의신청 심의				
		계	인용	기각	각하	보류	계	필요	불요	보류	계	인용	각하	기각	기타
제134차	198	98	79	19	-	-	98	81	17	-	2	-	1	1	-
제135차	141	91	73	16	-	2	49	32	13	4	1	-	-	1	-
제136차	104	54	35	19	-	-	50	33	17	-	-	-	-	-	-
제137차	102	49	32	17	-	-	52	32	20	-	1	-	-	1	-
제138차	125	51	30	21	-	-	73	49	24	-	1	-	-	-	1
제139차	142	72	47	25	-	-	69	50	19	-	1	1	-	-	-
제140차	159	68	49	19	-	-	90	69	21	-	1	-	-	1	-
제141차	193	90	67	22	-	1	101	74	27	-	2	-	-	2	-
제142차	207	99	72	27	-	-	106	74	32	-	2	-	-	2	-
제143차	163	107	75	32	-	-	56	42	14	-	-	-	-	-	-
제144차	109	53	39	12	-	2	56	44	7	5	-	-	-	-	-
제145차	115	57	46	10	1	-	58	35	23	-	-	-	-	-	-
제146차	125	57	34	23	-	-	67	48	19	-	1	-	-	1	-
제147차	173	67	45	21	-	1	104	80	24	-	2	-	-	2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⑧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⑨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⑩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⑪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⑬ 변경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총계	변경신청 심의					사실조사 실시 심의				이의신청 심의				
		계	인용	기각	각하	보류	계	필요	불요	보류	계	인용	각하	기각	기타
제148차	181	105	79	26	-	-	76	52	24	-	-	-	-	-	-
제149차	157	73	47	23	-	3	84	57	24	3	-	-	-	-	-
제150차	172	82	54	26	-	2	88	54	34	-	2	-	-	2	-
제151차	182	87	51	36	-	-	94	65	29	-	1	-	-	1	-
제152차	190	94	63	28	-	3	96	69	25	2	-	-	-	-	-
제153차	168	97	67	30	-	-	71	49	22	-	-	-	-	-	-
제154차	135	70	47	23	-	-	62	49	13	-	2	-	-	1	1
제155차	152	62	48	14	-	-	89	61	26	2	1	-	-	1	-
제156차	131	84	59	25	-	-	47	29	18	-	-	-	-	-	-
제157차	90	47	28	19	-	-	43	29	14	-	-	-	-	-	-

※ 자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과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¹⁷⁰⁾, 2023년의 경우 매 회의마다 20만원의 회의참석수당과 25만원의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였음.

[2023년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 지급 현황]

구분	일시	출석현황	참석수당	안전검토수당	구분	일시	출석현황	참석수당	안전검토수당
제134차	‘23.1.10.	8명 (민간 7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7명	25만원 *7명	제146차	‘23.7.4.	8명 (민간 7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7명	25만원 *7명
제135차 (서면)	‘23.1.25.	11명 (민간 9명) (당연상임 2명)	-	25만원 *9명	제147차	‘23.7.18.	8명 (민간 7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7명	25만원 *7명

170)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일시	출석현황	참석수당	안전검토수당	구분	일시	출석현황	참석수당	안전검토수당
제136차	'23.2.7.	8명 (민간 6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6명	25만원 *6명	제148차	'23.8.8.	8명 (민간 6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6명	25만원 *6명
제137차	'23.2.21.	8명 (민간 7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7명	25만원 *7명	제149차 (서면)	'23.8.22.	11명 (민간 9명) (당연상임 2명)	-	25만원 *9명
제138차	'23.3.7.	10명 (민간 8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8명	25만원 *8명	제150차	'23.9.5.	11명 (민간 9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9명	25만원 *9명
제139차	'23.3.21.	10명 (민간 8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8명	25만원 *8명	제151차	'23.9.19.	10명 (민간 8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8명	25만원 *8명
제140차	'23.4.4.	8명 (민간 7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7명	25만원 *7명	제152차 (서면)	'23.10.10.	11명 (민간 9명) (당연상임 2명)	-	25만원 *9명
제141차	'23.4.18.	10명 (민간 8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8명	25만원 *8명	제153차	'23.10.24.	9명 (민간 8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8명	25만원 *8명
제142차	'23.5.9.	8명 (민간 6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6명	25만원 *6명	제154차	'23.11.7.	10명 (민간 8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8명	25만원 *8명
제143차	'23.5.23.	9명 (민간 8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8명	25만원 *8명	제155차	'23.11.21.	11명 (민간 9명) (당연상임 2명)	20만원 *9명	25만원 *9명
제144차 (서면)	'23.6.7.	10명 (민간 8명) (당연상임 2명)	-	25만원 *8명	제156차	'23.12.5.	10명 (민간 9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9명	25만원 *9명
제145차	'23.6.20.	10명 (민간 9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9명	25만원 *9명	제157차	'23.12.19.	9명 (민간 8명) (당연상임 1명)	20만원 *8명	25만원 *8명

※ 자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회의시간 및 안전 심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고 민간위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설명함.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검토수당 지급기준]

구 분	참석수당		안전검토수당(심의시간 기준)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3시간	3시간 이상
지급액	15만원	20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자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안전검토수당의 성격을 고려하여 안전검토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액 산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안전검토수당은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주제발표 또는 검토의견서 제출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례금¹⁷¹⁾에 해당하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회의 이전에 참석위원에게 안전에 대한 조사보고서¹⁷²⁾를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할 뿐, 위원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지 않음에도 회의안전 심의시간에 따라 민간위원에게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안전검토수당은 안전검토와 관련된 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그 금액은 검토되는 안전의 수와 난이도 등을

171)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98.

□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172) 조사보고서에는 신청인 주장(사건경위, 신청사유 및 입증자료), 조사결과(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 피해 및 피해우려여부, 인과관계 유무, 사실조사 내용), 종합검토의견 등이 작성되어 있음.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회의 심의시간을 기준으로 안전검토수당의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2023년 제135차, 제144차, 제149차 및 제152차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되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안전의 심의시간을 측정할 수 없음에도 통상의 대면회의 사례를 적용하여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민간위원으로부터 서면 검토의견서를 제출 받은 경우 등 용역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의 수와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금을 안전검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정례회의 시 2~3시간의 회의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 및 심사·의결을 위하여 회의 3일 전 위원들에게 안전을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고 있고, 위원의 사전 안전검토시간이 상당(회의 당 안전: 90~207건)하며 실제 사전 안전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전 안전검토에 대하여 안전검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운영(1431-301)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향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용 및 업무용 설비 도입 시 리스계약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리스이자 및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리스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조달계약의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역량을 갖춘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79억 4,800만원 중 78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300만원을 불용¹⁷³⁾하였음.

173) 불용사유: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경비(14백만원), 현장학습에 따른 차량임차 및 여비(100백만원), 기타 교육운영경비(9백만원) 집행잔액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7,238	-	710	-	7,948	7,825	-	123	7,641
장기교육과정 운영	3,350	-	349	-	3,699	3,643	-	56	3,573
기본교육과정 운영	2,824	-	40		2,864	2,848	-	16	2,944
전문교육과정 등 운영	552	-	-		552	505	-	47	613
역량평가및교육 운영지원	512	-	321	-	833	829	-	4	512

나. 리스이자 및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한 리스계약 확대 필요

□ 리스(lease, 시설대여)란 수요기관이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
가 제조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수요기관에게 일정기간 사
용하게 하고, 수요기관이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대가를 정기적으
로 나누어 지급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금융제도를 말함¹⁷⁴⁾.

□ 리스계약은 리스기간, 리스 종료 후 처리방법 등 계약조건을 어떻
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¹⁷⁵⁾, 「조

174) 리스거래는 물건을 먼저 취득하고 그 대가로서 일정 금액을 나누어 지불한다는 점에서 할부거래와 유사
하나, 리스 기간 동안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있고 임차료(210-07)로 계상된다는 점에서, 소유권이 수요
자에게 있고 자산취득비(430-01)로 계상되는 할부거래와 차이가 있음.

175)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9조(리스계약 요청내용 검토) ① 계약담당과장은 리스계약 요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
토한다.

1. 리스요청 물품의 적합성

2. 리스조건(취득원가, 리스기간, 리스료 지급방법, 잔존가치, 리스종료후 처리방법 등)

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에 따른 리스계약 표준 조건은 다음과 같음.

[리스계약 표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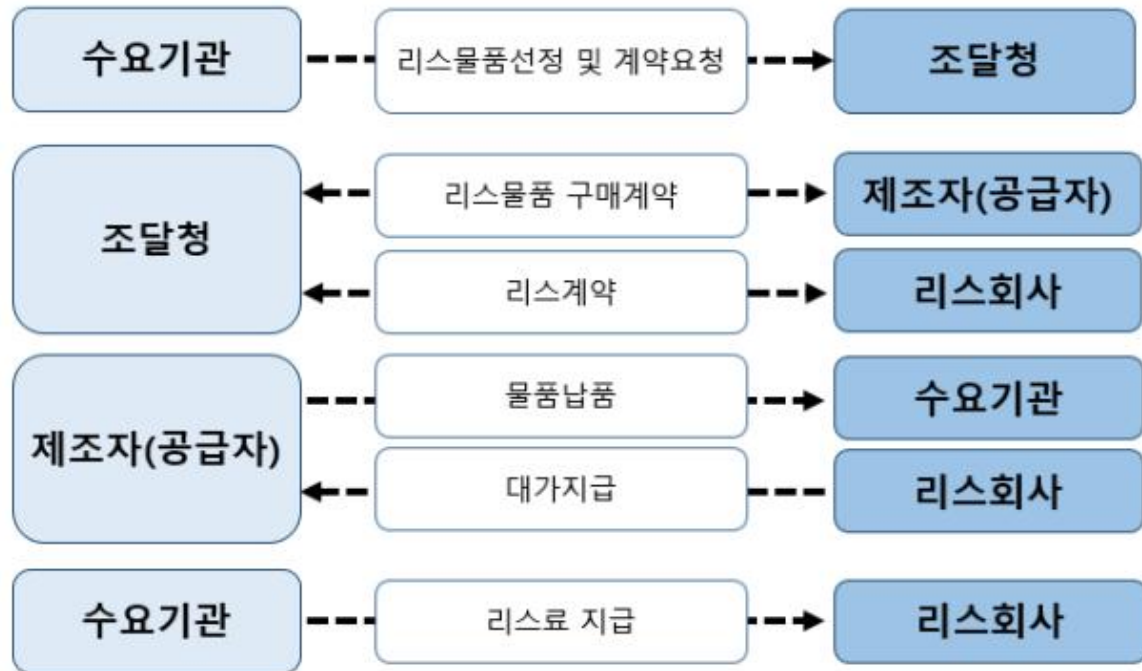
구분	표준 조건
리스기간	5년 또는 3년 등 수요기관에서 결정
리스료 지급방법	1개월, 3개월, 6개월 선납
잔존가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있는 경우는 취득원가의 10%
리스종료 후 처리방법	잔존가치가 있는 경우 ‘양도 또는 재리스’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 ‘무상양도’ 원칙, 물품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반환’
보험료 및 조달수수료	물품의 취득원가에 불포함, 수요기관의 예산으로 별도 지급

□ 리스계약은 대규모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일정액의 리스료만 지급하면 필요한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년간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중도해약이 어려워 1차 연도의 소요예산은 소규모일지라도 전체 지불비용의 규모는 상당히 큰 경우가 있으며, 리스계약의 경우 별도의 이자비용이 추가되므로 일시에 해당 설비를 구입하는 것보다 지출 총액은 더 증가하게 됨.

□ 따라서 리스 계약을 이용하여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리스계약의 장·단점 및 도입하려는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기간, 리스종료 후 처리방법 등 최적의 리스계약의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의 리스조건을 검토 할 때 표준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 조건과 다른 리스조건을 정할 수 있다.

[리스계약 세부절차]



*자료: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1185>) 검색일: 2024. 8. 7.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023년 리스계약(계약일: 2023. 11. 29.)을 통하여 교육용PC 및 모니터 각 165대를 도입하였으며, 해당 리스 계약에 대한 2023년 분할지급액 약 4,020만원을 집행하였음¹⁷⁶⁾.

[2023년 체결된 리스계약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계약명	취득 원가	매회 리스료	계약 금액	대상 물품	수량	리스 기간	납부 방식
노후 PC 및 모니터 교체	178	40	201	교육용PC 및 모니터	각 165대	'23. 11. ~ '28. 11. (60개월)	총 5회 분납

* 자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76) 리스계약을 통해 조달된 교육용PC 및 모니터의 소유권은 리스기간 동안은 리스회사가 보유하지만 리스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이전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리스계약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역량교육 필요성의 증대 및 챗GPT, 데이터분석, AI 등을 활용한 전문교육 확대에 따라 자산취득비의 부족분을 고려¹⁷⁷⁾하여 임차료를 통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PC 및 모니터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보임.¹⁷⁸⁾

[2023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내역	금액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1400)	지방자치인재 개발원수입 대체경비 (1433-650)	자산취득비 (430-01)	(430-01) 자산취득비	126
			1. 생활관 및 의무실 운영	6
			가. 건강증진센터 물품구입	6
			2. 시청각, 사이버계 기자재	120
			가. 강의실 LED 영상장비 보강	10
			나. 방송, 음향장비 보강	30
			다. 교육용 컴퓨터·모니터 구입	30
			라.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38.7
			마. 강의실 책상·의자 구입	31.3

* 자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77) 자산취득비(430-01) 3,000만원을 통해 교육용 컴퓨터 및 모니터 각 25대를 구입하였음.

178) 참고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노후PC 및 모니터 교체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사전 감사 절차를 거쳤음.

[내용연수 경과 PC 및 모니터 수량]

(단위: 대)

구분	합계	내용연수경과(교체대상)					미경과	비고
		14년 이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합계	698	411	11	14	47	25	190	
PC	383	166	4	8	47	20	138	노후율64%
모니터	315	245	7	6	0	5	52	노후율83%

* 자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향후에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용 및 업무용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리스계약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리스이자 및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리스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교육용PC의 노후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운영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리스계약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안전예방정책실】

21.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2631-301)

-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선정 기준 적용 유예 기간 종료(2023년 2월 3일)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사업성과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추진상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이는데, 행정안전부는 향후 집행 부진을 개선하고 노후 선박 대체 건조 촉진이라는 사업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국비지원 규모 및 보조금 교부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하여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은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및 안전기준 연구, 유·도선 제도 개선,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76억 9,200만원 중 97.9%인 75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예산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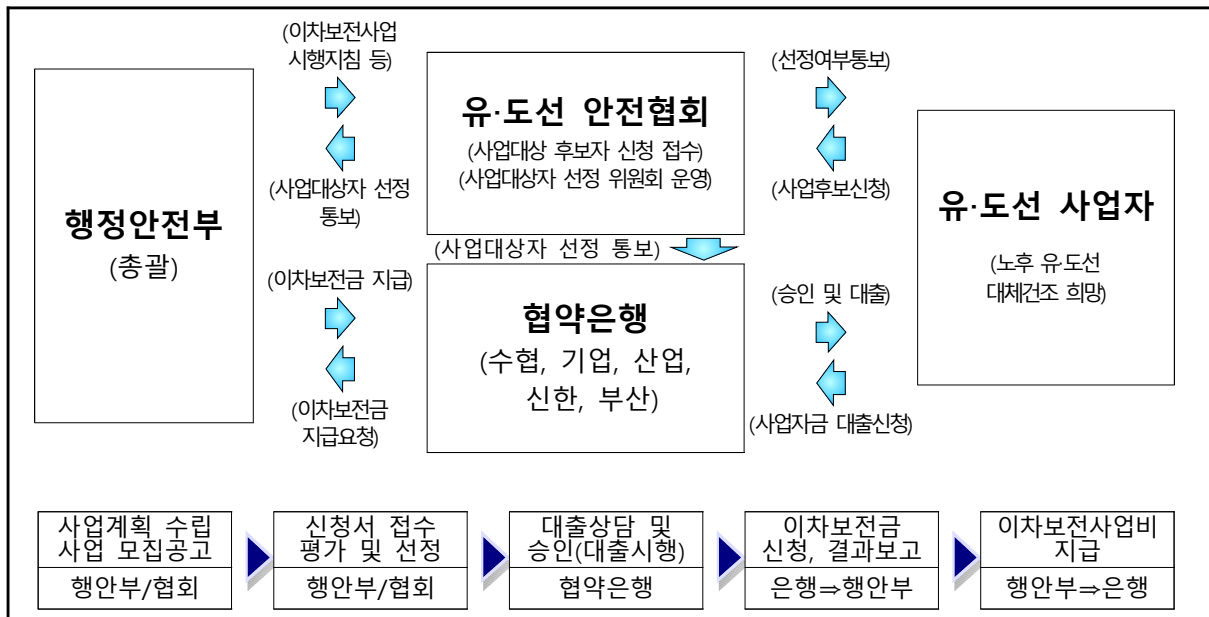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7,692	7,692	-	-	-	7,692	7,531	-	161	2,692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707	707	-	-	-	683	641	-	42	707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1,380	1,380	-	-	-	1,380	1,362	-	18	1,563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94	94	-	-	-	128	123	-	5	94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및 안전기준 연구	203	203	-	-	-	193	169	-	24	33
유·도선제도 개선	31	31	-	-	-	31	24	-	7	31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민간보조)	150	150	-	-	-	150	85	-	65	150
안전반부패협의회 운영	127	127	-	-	-	127	126	-	1	114
다자탈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5,000	5,000	-	-	-	5000	5000	-	-	-

나.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부진 개선 및 사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시행일: 2016. 2. 4.)으로 유·도선의 선정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대체 선박 건조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박 건조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금리 일부(연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56.7%인 8,5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추진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 사업이 신규편성된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연간예산액¹⁷⁹⁾ 대비 집행액이 각각 3.0%, 7.6%, 23.3%, 56.7%로 연례적 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4년간 예산액 총 6억 5,000만원 중 집행액은 1억 4,2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21.8%에 불과한 실정임.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2020년	100	△ 90	10	3	7	3.0
2021년	250	△ 220	30	19	11	7.6
2022년	150	-	150	35	115	23.3
2023년	150	-	150	85	65	56.7
합계	650	△ 310	340	142	198	21.8

자료: 행정안전부

179) 이·전용에 따른 감액(2020년, 2021년 해당)을 제외한 당해연도 배정예산을 말함.

□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 1척, 2021년 2척(계속 1, 신규 1), 2022년 6척(계속 2, 신규 4), 2023년 7척(계속 6, 신규 1)으로 실질적인 지원 선박 수는 총 7척에 불과함.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지원 현황]

(단위: 척)

구분	지원내역			지원대상	
	신규	계속	합계	선명	비고
2020년	1	-	1	도담삼봉호	신규
2021년	1	1	2	도담삼봉호	계속
				서동호	신규
2022년	4	2	6	도담삼봉호	계속
				서동호	
				소양2호	신규
				수운1호	
				충주9호	
				청풍1호(290톤)	
2023년	1	6	7	도담삼봉호	계속
				서동호	
				소양2호	
				수운1호	
				충주9호	
				청풍1호(290톤)	
				청풍1호(100톤)	신규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2023년에는 선령 기준을 도입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 당시 부칙에서 정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용유예 기간이 종료(2023. 2. 3.)됨에 따라¹⁸⁰⁾ 노후 선박의 대체건조 수요가 증가

180) 동 법 개정으로 선령 기준은 유·도선사업 면허 요건에 해당하는바,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 면허의 필요적 취소 대상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

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2022년 7월부터 ‘유·도선업 선박금융 특례 보증 제도’¹⁸¹⁾ 시행하여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원대상 선박은 오히려 2022년 4척에서 2023년 1척으로 감소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위와 같이 연례적인 사업성과 부진으로 인하여 노후 유·도선 대체건조 지원을 통해 운항 안전을 강화하려는 당초의 사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안전부는 향후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하며 노후 선박 대체건조 촉진이라는 사업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81) 신용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경영 부진(매출 30% 이상 감소), 신용도 하락이 일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건조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의 대체 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도입. 행정안전부는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선령 초과로 폐선 예정인 5톤 이상 유·도선 147척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희망한 81척을 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전망.

다.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철저한 집행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노후·위험시설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23년에는 예산액 5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3년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5,000	5,000	-	-	-	5,000	5,000	-	-	-

- 2023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현황을 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평균 실행률이 55.5%로 저조하게 나타났음. 특히 전라북도 전주시에 교부된 6억원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었음.

[2023년 보조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청도군	650	585	65	-	90
서초구	650	504	146	-	78
울주군	650	504	146	-	78
춘천시	600	398	202	-	66
밀양시	600	377	223	-	63
함평군	650	236	414	-	36
구리시	600	174	426	-	29
전주시	600	-	600	-	0
합계	5,000	2,778	2,222	-	55.5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및 부지 확보, 표준공정절차 준수 및 공정률 관리 등 집행에 노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계약체결 절차 지연, 시설물 소유자와 협의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의 지연이 발생하였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¹⁸²⁾,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

18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적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진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2023년 보조사업 이월사유]

구 분	이월 사유
청도군	- 사전규격 의견서 내용을 반영한 제안요청서 수정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서초구	- 시스템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정보화 사전협의 절차 진행에 따른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지연
울주군	- 긴급입찰이 아닌 일반입찰용역으로 추진에 따라 사전규격 및 입찰 공고 기간 증가 등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춘천시	- 입찰공고 변경(공동이행방식을 공동+ 분담이행방식 가능으로 정정)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밀양시	- 입찰공고 후 제안평가 단계에서 입찰참가 업체가 평가관련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률검토 수행 등 진행하여 실제 개찰이 지연
함평군	- IoT센서 설치대상 장소선정시 시설물 소유자 협의시간 증가에 따른 입찰공고 지연 - 시스템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정보화 사전협의 절차 진행에 따른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지연
구리시	- 긴급입찰이 아닌 일반입찰용역으로 추진에 따라 사전규격 및 입찰 공고 기간 증가 등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전주시	- IoT센서 설치대상 장소선정시 시설물 소유자 협의시간 증가에 따른 입찰공고 지연 - 시스템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정보화 사전협의 절차 진행에 따른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지연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동 사업은 과거에도 부지확보 지연, 설계변경 및 추가공정 발생 등 대체로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 부진 및 사업 효과성 미흡 등을 이유로 2024년도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예산이 미반영되었음.

[2021 ~ 2022년 보조사업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년	5,000	3,720	1,280	-	74.4
2022년	5,000	3,973	985	42	79.4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동 사업과 같은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국비 지원 규모 및 보조금 교부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등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국민안전의식선진화(2632-301)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은 실제 집행액보다 높은 금액을 매년 편성함으로써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적정 수준의 1인당 교육단가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사업은 범국민안전의식조사, 안전교육체계 및 인프라구축, 범국민 안전교육 추진 및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63억 3,700만원 중 88.5%인 56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안전의식선진화	6,337	6,337	-	-	-	6,337	5,611	-	726	5,749
범국민 안전의식 조사	152	152	-	-	-	152	152	-	-	152
안전교육 체계 및 인프라 구축	1,070	1,070	-	-	-	1,070	942	-	128	810
범국민 안전교육 추진	3,527	3,527	-	-	-	3,527	2,986	-	541	3,527
범국민 안전문화 행사	529	529	-	-	-	529	489	-	40	310
범국민 안전문화 홍보	1,059	1,059	-	-	-	1,059	1,042	-	17	950

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의 예산편성 근거 개선 필요

□ ‘범국민 안전교육 추진’ (내역)사업 중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일 : 2020. 11. 27.)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안전교육 실시의무가 부과됨¹⁸³⁾에 따라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예산 25억원과 홍보예산 2억원 등 총 예산액 27억원 중 22억원이 집행되었고, 5억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2,700	2,700	-	-	-	2,700	2,200	-	500	2,700

자료: 행정안전부

18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위탁사업자가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교육을 실시하며, 2023년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총 10만 1,187명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음.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 추진절차]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홍보>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위탁용역 실시	행정 안전부	사업 계획 수립 및 위탁용역 실시
↓		
②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위탁 사업자	교육 의무화 홍보 등 교육사업 준비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실시(월별) 교육결과 집계 및 보고
↓		
③ 사업결과 분석	각부처, 지자체	교육결과 공유 및 교육확대 및 발전방안 마련 - 부처별 역할분담, 차년도 계획 수립 및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3개년의 위탁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2021년, 2022년 모두 21억원(1인당 교육단가 3만원 × 교육인원 7만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계약 과정에서 1인당 교육단가가 감소(2021년 2만 5,000원, 2022년 2만 6,000원)하여 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또한 25억원(1인당 교육단가 2만 5,000원 × 교육인원 10만명)의 편성예산 대비 1인당 교육단가가 감소(2만원)하여 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

[2021~2023년 위탁용역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용역 계약액 (B)	낙찰차액 (A-B)	계약자
2021년	2,100 (3만원x7만명)	1,750 (2.5만원x7만명)	350	대한적십자사
2022년	2,100 (3만원x7만명)	1,820 (2.6만원x7만명)	280	한국보육진흥원
2023년	2,500 (2.5만원x10만명)	2,000 (2만원x10만명)	500	한국보육진흥원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2023년에는 연례적 낙찰차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교육단가를 2021년, 2022년과 동일하게 1인당 30,000원으로 산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인원을 확대(7만명 → 10만명)하는 대신 교육단가를 감액(1인당 30,000원 → 25,000원)하여 정부 제출안 대비 4억원이 증액된 총 25억원의 예산액이 확정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최종 용역계약은 1인당 단가 20,000원으로 체결되어 낙찰차액 5억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예산안 편성 근거]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2,100백만원
 - * 70,000명(교육 실시 인원) x **30,000원(1인 교육 비용)** = 2,100백만원
 - * 교육인원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중 학교·유치원(학교보건법 적용 대상과 중복), 국공립 시설·대규모 시설의 종사자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 1인당 교육단가의 집행액이 편성예산 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는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년부터 2년 단위의 장기연속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쟁 입찰 과정에서 2022년에 위탁용역 사업을 기수행한바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기존 시스템 및 교육콘텐츠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낮은 단가로 응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예산의 1인당 교육단가를 25,000원으로 편성한 후, 한국보육진흥원과 1인당 20,000원의 교육단가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성예산과 실제 집행된 예산이 불일치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은 실제 집행액보다 높은 금액을 매년 편성함으로써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기존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안전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 재난안전산업 활성화(2631-303)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자연재난에 관한 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기술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26억 8,100만원 중 94.6%인 25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산업활성화	2,681	2,681	-	-	-	2,681	2,536	49	96	2,98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580	580	-	-	-	580	580	-	-	580
재난안전신기술 평가 위탁	370	370	-	-	-	370	332	-	38	370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400	400	-	-	-	400	398	-	2	400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350	350	-	-	-	350	326	-	24	350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306	306	-	-	-	306	306	-	-	306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지원	310	310	-	-	-	310	300	-	10	560
재난안전산업 수요조사	175	175	-	-	-	175	115	49	11	175
안전기술 개발발굴	40	40	-	-	-	40	40	-	-	40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연구	150	150	-	-	-	150	139	-	11	-

나.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안전신기술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난안전신기술 평가·위탁’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을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하여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¹⁸⁴⁾, 재난산업의 육성 및 신기술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시행일: 2023. 1. 5.)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방재신기술 지정·활용’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것으로, 2023년 총 23건의 기술이 재난안전신기술로 신규지정되었음.

18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019~2023년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현황]

(단위: 개)

연도	신규신청			기술연장신청	기간만료
	계	지정	미지정		
2019년	30	14	16	4	13
2020년	59	30	29	21	7
2021년	91	51	40	17	12
2022년	58	27	31	8	5
2023년	36	23	13	6	11
총계	274	145	129	56	48

※ 2019~2022년은 방재신기술 지정 현황임

자료: 행정안전부

□ 기존의 “방재신기술”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재기술”¹⁸⁵⁾을 지정대상으로 하였으나, “재난안전신기술”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재난안전기술”¹⁸⁶⁾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지정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재난을 철저하게 예방·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2023년에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대응재난별로 살펴보면, 자연재난 대응기술은 총 17건(내수 6건, 하천 4건, 사면지반 3건, 지진 4건)이며, 사회재난 대응기술은 총 6건(안전관리 1건,

185)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규명·저감·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제도·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8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화재 2건, 붕괴 2건, 기타 1건)으로, 자연재난 대응기술이 전체 지정기술 중 약 74%의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안전신기술의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신기술 인증 건수]

(단위: 건)

총 계	자연재난									사회재난					
	계	내 수	하 천	사 면 지 반	지 진	해 안	대 설	낙 뢰	폭 염	계	안 전 관 리	교 통 사 고	화 재	붕 괴	기 타
23	17	6	4	3	5	-	-	-	-	6	1	-	2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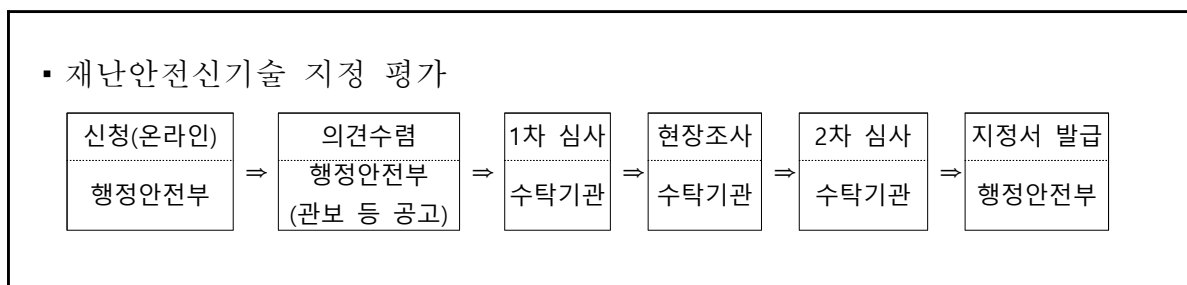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자연재난에 관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사업의 홍보 방안 마련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필요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의 추진절차를 보면, 재난안전기술을 보유한 기업체 등의 신청을 전제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어 재난안전 관련 신기술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수적임.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사업 추진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 관련 경영활동을 영위한 77,810개의 사업체 중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에 참여한 사업체는 3,218개(4.1%)에 불과하였으며, 해당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존재를 몰랐다’(45.2%), ‘참여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26.7%), ‘우리 회사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25.3%),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조건 및 행정절차 등이 복잡하여 참여하지 못했다’(2.9%)의 순서로 나타남.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미참여 사유]

(단위: 개소)

참여 사업체 수	미참여 사업체 수	미참여 사유			
		존재를 몰랐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참여조건 및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참여하지 못했다
3,218	74,592	45.2%	26.7%	25.3%	2.9%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실태조사 결과는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의 홍보가 부족하여 기업체 등이 해당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행정안전부는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 내용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시 인센티브 내용]

	인센티브 내용
신기술 마크 사용	신기술인증(NET) 인증표시 사용
신기술 활용지원	신기술 우선활용 권고
	재난안전신기술 활용 시 담당자 면책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부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심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배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심사 배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배점
신기술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한국방재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신기술 우선 활용을 위한 권고, 상담회, 정보 제공 지원 등 정책 수립·추진을 담당하고, 수탁기관인 한국방재협회에서는 재난안전신기술 평가 업무 등 위탁계약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 동 사업의 홍보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 과업에 포함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24.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2632-305)

- 재난현장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코드가 다른 ‘불우소외계층 격려(7011-296)’ 사업과 혼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한 관련 법령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종사자 지원’ 사업은 재난현장·민생 관련 현장 등에 종사하는 일선 근무자 등을 격려·지원하고, 재난·사고 예방·수습 대책 및 긴급현안 논의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사고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3,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1,700만원 중 96.5%인 6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예산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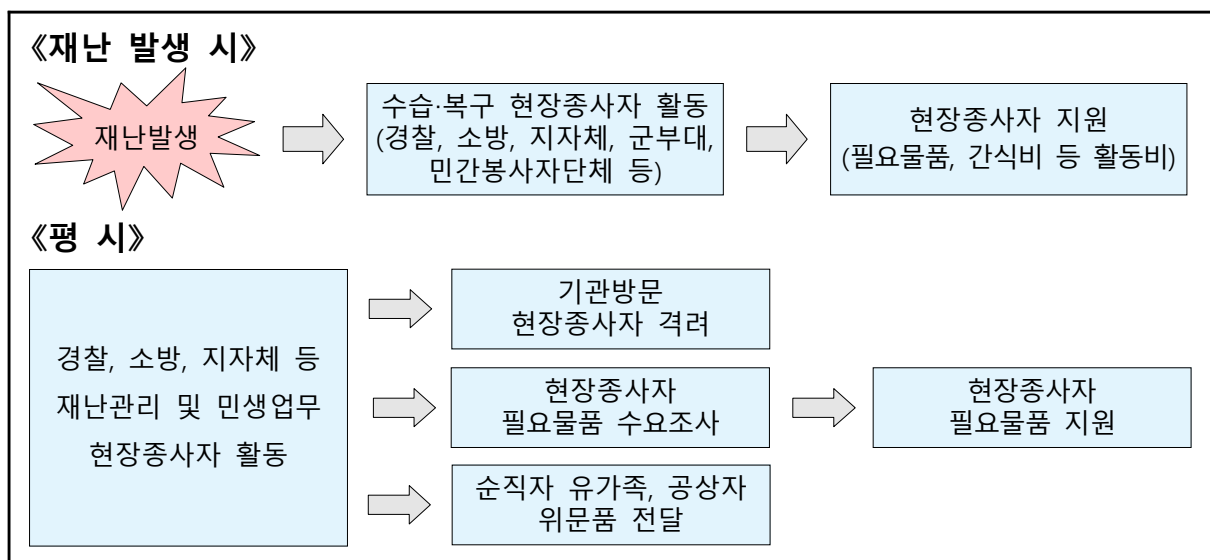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	684	684	33	-	-	717	692	-	25	450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651	651	33	-	-	684	659	-	25	435
안전사고대책 추진	33	33	-	-	-	33	33	-	-	15

나. 다른 사업과 사업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한 문제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은 재난 발생 시 현장 수습활동 및 민생 관련 현장활동 등에 종사하는 일선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에게 위문품 등을 전달하는 사업임.

[범정부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 추진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 2023년에는 재난 현장종사자 등에 대한 물품 지원을 위해 총 2억 8,740만원의 일반수용비(210-01목)를 방한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로 집행하였음.

[2023년 재난 현장종사자 등 물품 지원 내역]

(단위: 천원)

품목	집행액	집행대상 기관 및 인원
생활용품 등	1,348	온양 사회복지시설
간이소화기	2,100	아산소방서
수저세트 등	1,560	창원시, 홍성군, 강릉시
수저세트	900	청양군, 봉화군, 영주시
휴지, 세제, 쌀세트	250	홍성군
산불 진화복	1,000	음성군, 영월군, 삼척시
체인톱, 절단커터	2,000	
담요	2,250	과천시
장갑	750	
휴지, 굴	46	충주시
방한양말	3,000	전주시, 정읍시, 하남시, 음성군, 충주시
햇팩	498	
세면도구 등	98,380	대구 군위 등 41개 시군구
쌀세트	64,800	현장종사자 2,400명
잡곡세트	62,100	현장종사자 2,300명
샤워용품	15,400	현장종사자 700명
멀치세트	9,982	상황실, 경찰·소방 현장근무자 354명
현미세트	7,196	청사 관련 현장근무자 257명
멀치세트	6,902	중앙동 청사 현장근무자 238명
김세트	6,900	상황실, 경찰·소방 현장근무자 345명
합 계	287,401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쌀세트(6,480만원), 잡곡세트(6,210만원) 및 샤워용품(1,540만원) 품목은 불우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연말선물을 지급하는 ‘불우소외계층 격려(7011-296)’ 사업과 동일한 시기에 함께 집행된 것으로, 두 사업 모두 격려 문구 등이 담긴 카드를 동봉하여 격려 물품을 지급하였음.

[2023년 정부연말선물 및 현장종사자 격려품 집행 내역]

(단위: 개)

	수량	정부연말선물				현장종사자 격려품			
		계	햄참치	쌀세트	생활용품	계	쌀세트	잡곡세트	샤워용품
계	87,455	83,556	67,485	6,822	9,249	3,899	969	2,266	664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쌀세트의 경우 동일한 업체에서 두 사업에 사용될 수량 전체(총 7,791개)를 계약하였는데(총 2억 1,060만원, 개당 2만 7,000원),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 6,480만원으로 구입한 쌀세트 2,400개 중 1,422개가 ‘불우소외계층 격려’ 사업에 사용되어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에는 969개만 사용되었음.

[정부연말선물 및 현장종사자격려 사업 쌀세트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개)

사업명	집행액	구매수량	사용수량	세목명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활동 강화 및 지원 (2632-305)	64,800	2,400	969	일반수용비 (210-01)
불우소외계층 격려 (7011-296)	145,800	5,400	6,822	구호및교정비 (320-06)
합 계	210,600	7,800	7,791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과 ‘불우소외계층 격려’ 사업의 목적 및 시기가 유사하고 ‘불우소외계층 격려’ 사업의 대상자가 많아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싹세트 구입비를 두 사업에서 함께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동 사업과 불우소외계층 격려 사업은 예산상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코드가 다른 별개의 세부사업이므로, 별도의 이·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우소외계층 격려 사업과 동 사업의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한 것은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특히, 2021년에도 동 사업과 불우소외계층 격려 사업의 예산을 혼용하여 사용한 문제가 있었음¹⁸⁷⁾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는 각 사업의 사업예산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집행하고 다른 사업 예산과 혼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87) 행정안전위원회,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p. 259~263.

【자연재난실】

25. 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수요 미확보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의 경우에도 6월 말 기준 당해연도 예산 14억 6,7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 사업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진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진방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지진방재 국제교류,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보 및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48억 1,100만원에서 이·전용으로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예산현액 45억 7,900만원 중 82.3%인 37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4,811	4,811	-	△232	-	4,579	3,772	14	793	5,382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	1,250	1,250	-	-	-	1,250	1,175	14	61	1,250
지진방재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95	95	-	-	-	95	94	-	1	95
지진방재 국제교류	63	63	-	-	-	63	47	-	16	24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보	2,467	2,467	-	△232	-	2,235	1,534	-	701	2,717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936	936	-	-	-	936	922	-	14	1,296

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 ‘시설물 지진 안전성 확보’ (내역)사업 중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¹⁸⁸⁾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사업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 포함) 비용의 일부를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기준	○ 국비 10%(상한액: 5억원),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자료: 행정안전부

188)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건축 시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미 건축된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은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동 사업은 2023년 14억 6,700만원의 예산액 중 2억 3,200만원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공요금 재원충당을 위해 이용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현액 12억 3,500만원 중 5억 3,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억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집행내역]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1,467	1,467	-	△232	-	1,235	534	-	701	1,467

- 2022년 신규사업 편성 당시 행정안전부는 경주·포항 지역의 내진 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800개소 중 매년 32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 지원신청이 없어 사업예산 15억 6,500만원 전액을 전용하였음.
- 2023년 또한 지원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대상을 전국의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약 500만 개소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수요를 확보하지 못하여 2개의 민간건축물(서울: KT 광화문west 빌딩, 인천: KT부평사옥)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음.
- 2024년 사업의 경우에도 6월 말 기준 당해연도 예산 14억 6,7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교부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서울	500	500	500	-	-	100
인천	34	34	-	34	-	0
합 계	534	534	500	34	-	93.6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은 사업수요 미확보는 기 건축된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법적 의무가 아닌 환경에서 민간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고,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만을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건축물 소유자 부담: 80%)하도록 한 사업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의 경우 민간건축물의 공사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해당 소유주의 신청이 필수적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전 사업 계획단계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실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 및 적정 지원 비율을 설정하는 등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내진보강 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수요를 확보하고, 보조율 상향 및 건물 중요도 등을 고려한 차등보조를 도입하는 등 사업 설계구조를 변경하여 참여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임.

【사회재난실】

26.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2735-300)

- ‘사회재난 관리제도 마련’ 사업은 용역사업 발주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연례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용역사업과 관련한 연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용역사업의 성격 및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시기를 설정하는 등 용역과제와 관련된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비목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가. 개 요

-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사업은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사회재난 관리제도 마련 및 사회재난 위험성 분석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4억 8,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4,100만원 중 75.6%인 4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회재난교육훈련 및 역량지원강화	488	488	53	-	-	541	409	28	104	263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263	263	-	-	-	263	180	-	83	263
사회재난 관리제도 마련	175	175	53	-	-	228	188	28	12	-
사회재난 위험성 분석 및 컨설팅	50	50	-	-	-	50	41	-	9	-

나. 연례적인 용역 입찰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재난 관리제도 마련’ 사업은 현행 사회재난 관리체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재난 분야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사업임.
- 2023년 동 내역사업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예산현액 총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5,300만원을 제외한 2023년 예산액은 1억 7,500만원인데, 이 중 7,000만원은 ‘사회재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1억 500만원은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확립방안 연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2023년 사회재난 관리제도마련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연구과제명	예산액	용역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3	사회재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70	68	68	-	2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확립방안 연구	105	95	67	28	10

자료: 행정안전부

- ☐ 2020년, 2022년 및 2023년 해당 사업은 각각 3,000만원, 5,300만원, 2,800만원의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2020~2023년 일반연구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대상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0	일반연구비 (260-01)	330	-	330	288	30	12
2022	일반연구비 (260-01)	200	-	200	128	53	19
2023	일반연구비 (260-01)	175	53	228	188	28	12

자료: 행정안전부

- ☐ 이는 용역사업의 입찰공고가 대부분 하반기에 실시되거나 용역계약의 유찰로 인하여 계약 기간이 당해연도를 초과하여 설정되어 있기 때문임.

[2020~2023 이월액 발생 용역의 계약현황]

	용역명	입찰공고일	계약기간
2020	코로나19 시설별 점검리스트 개선 및 발굴	1차 8. 27. 2차 9. 10. 3차 9. 23. 4차 10. 13.	2020. 11. 4. ~ 2021. 2. 12.
2022	코로나19 대응정책 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차 6. 15. 2차 7. 7.	2022. 7. 27. ~ 2023. 2. 24.
	재난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수의계약	2022. 11. 16. ~ 2023. 2. 13.
	현장인파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 마련	11. 30.	2022. 12. 26. ~ 2023. 3. 31.
2023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확립방안 연구	5. 30.	2023. 7. 4. ~ 2024. 5. 3.

자료: 행정안전부

□ 연례적으로 입찰공고가 늦게 실시된 사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또는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과적인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하반기에 입찰공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용역사업의 발주가 지연되는 경우 단독입찰 등에 따른 유찰이나 사업기간 등에 대한 고려로 인해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용역사업 추진 시 연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용역사업의 성격 및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를 시기를 설정하는 등 용역과제와 관련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 연구용역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구용역비(260목)를 일반연구비(260-01목)과 정책연구비(260-02목)로 구분하면서,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는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도록 하며,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는 정책연구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 적용범위]

연구용역비(260목)	
일반연구비(260-01)	정책연구비(260-02)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 받은 자(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포함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 관련 경비 - 정부기관이 기관내 연구·조사 등의 목적으로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인건비성 경비, 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또한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비(260-02)로 수행되는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용역계약체결 내용과 정책연구용역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등 일반연구비(260-01)로 수행되는 연구용역에 비하여 용역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함.

[정책연구비로 수행되는 연구용역의 절차]

정책연구심의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과제·연구자 선정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연구자를 선정함
연구결과의 평가·활용	- 정책연구 종료 후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정책연구의 공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성과점검 등 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재난 관리제도 마련’ 내역사업에서 수행된 15건의 연구용역을 보면, 코로나19, 국가안전대진단, 재난 안전관리,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 및 ‘사회재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같이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

[2019~2023년 연구용역 수행내역]

연도	정책연구용역명
2019	사회재난 위험성분석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시범 적용
2020	지자체 사회재난 대응·예방사업 발굴 및 지자체 지원제도 연구
	2020년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교과목 설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가이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코로나19 시설별 점검리스트 개선 및 발굴
2021	지자체 사회재난 조직·인력 진단 및 해외사례 연구
	사회재난 예방대책업무의 대행기관 관리 연구
	방사능재난 주민보호 분야 행정안전부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기능연속성계획 지자체 유형별 모델(사례) 개발 연구
2022	통합적 사회재난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코로나19 대응정책분석,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재난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 마련 연구용역
2023	사회재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난피해자 지원체계 확립방안 연구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해당 연구용역사업을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해당 연구용역의 내용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연구용역과제의 집행비목을 정책연구비목으로 편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구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연구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비상대비정책국】

27.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2634-304)

- 행정안전부는 지원민방위대 지원대상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간 성공사례의 공유 등을 통해 지원민방위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매년 부지확보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유사한 사유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향후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조사 실시 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지연 요소를 최소화하며, 보조금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함으로써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시·국가적 재난 등에 대비하여 대피·급수·경보시설 및 민방위 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며, 민방위 경보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4억 5,400만원 중 99.6%인 6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6,454	6,454	-	-	-	6,454	6,427	-	27	10,794
민방위 교육훈련	2,525	2,525	-	4	-	2,529	2,529	-	-	2,211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3,157	3,157	-	-	-	3,157	3,157	-	-	6,614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772	772	-	△4	-	768	741	-	27	1,969

나. 지원민방위대원 확충 방안 마련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

- 민방위 교육훈련 내역사업 중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은 지원민방위대원(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 남성 및 여성 중 민방위대 편입을 지원한 자)에게 복제비, 교육여비 및 워크숍 경비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30%)으로, 2023년 예산 1억 8,6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의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보조금 실집행 내역을 보면, 2019년에는 교부액 1억 8,300만원 중 1억 3,500만원이 집행되어 73%의 실집행률을 보였으나, 2020년부터 실집행률이 감소하여 2023년에는 1억 8,600만원의 교부액 중 9,000만원이 집행되고 9,600만원이 불용되어 48%의 실집행률을 보임.

[2019~2023년 실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교부액(A)	실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19년	183	135	48	73%
2020년	186	69	117	37%
2021년	186	75	111	40%
2022년	186	108	78	58%
2023년	186	90	96	48%

자료: 행정안전부

- ☐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의 실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원민방위 제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3년간(2020년~2022년)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제도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시·도별 지원민방위대 운영현황을 보면 2019년, 2020년은 전체 지원민방위대원이 20,000명을 상회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약 6,000명대로 급감하였음.

[2019~2023 지원민방위대 대원 현황]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3,910	24,226	6,384	5,661	6,117
서울	279	575	399	397	406
부산	9	1,193	334	315	293
대구	43	125	12	-	-
인천	99	106	172	85	58
광주	864	1,033	80	80	80
대전	61	19	141	141	124
울산	24	6	20	-	-
세종	71	73	-	-	-
경기	1,805	614	311	402	389
강원	8,153	6,952	89	31	32
충북	554	1,062	-	-	-
충남	582	2,278	30	29	38
전북	768	426	234	186	145
전남	1,090	584	41	68	22
경북	5,231	4,925	-	-	64
경남	2,081	2,222	4,421	3,836	4,375
제주	2,196	2,033	100	91	91

자료: 행정안전부

□ 저출생 및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의무민방위대(20세~40대 남성) 대상자의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시·평시에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지원민방위대의 규모를 다시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 20세 남성 인구 현황]

(단위: 만명)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33.4	29.1	25.9	25.7	24.6

자료: e-나라지표 병역자원 현황

-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원민방위대 지원대상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원민방위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다.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이 월 개선 필요

-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국지도발 등 적의 침공이나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지하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대피시설 신규 구축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2023년 예산 9억 6,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2023년 보조금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교부액 9억 6,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억 8,500만원 중 72.6%인 1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023년 집행액을 보면, 교부액 9억 6,000만원 중 52.6%인 5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부진이 상당한 실정임.

[2023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예산현액 (A)	집행액 (B)			
2023	960	925	1,885	1,369	960	505	496	20	52.6

자료: 행정안전부

□ 구체적으로 2023년 사업대상 3개소의 당해연도 교부액 집행현황을 보면 인천, 경기 각각 74%, 78% 수준의 집행을 보이며, 강원 경우 집행률이 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토지소유자의 높은 보상가 요구에 따른 협의 필요, 오·우수관 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 기간 연장 및 암반층 발견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 등을 이유로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사업대상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대상	교부액(A)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이월사유
인천	320	237	83	-	74	사업부지확보를 위한 협의에 따른 이월
경기	320	251	69	-	78	오·우수관 연장, 장애인 시설물 추가, 마감재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 연장
강원	320	17	303	-	5	암반발견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인증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실집행률이 34.7%~73.9%로 집행이 저조하고 매년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부지확보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2019-2023년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사업 실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대상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11개소 (인천5, 경기2, 강원4)	4,800	2,396	7,196	4,023	2,969	204	55.9
2020	6개소 (인천3, 경기2, 강원1)	2,240	2,969	5,209	3,848	962	399	73.9
2021	5개소 (인천3, 경기2)	1,600	962	2,562	1,954	460	148	76.3
2022	3개소 (인천3)	960	460	1,420	493	925	2	34.7
2023	3개소 (인천1, 경기1, 강원1)	960	925	1,885	1,369	496	20	72.6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적시에 건설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등 사업목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조사 실시 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지연 요소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함으로써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8. 재난안전교육원운영(2633-300)

-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비목별로 실제 소요와 집행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고, 편성 이후에는 세목 조정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사업은 재난안전 및 민방위·비상대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전년도 이월액 15억 5,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8억 6,500만원 중 97.1%인 47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교육원운영	3,312	3,312	1,553	-	-	4,865	4,724	-	141	3,304
교육운영 인건비	496	496	-	-	-	496	408	-	88	512
교육운영비	1,514	1,514	-	-	-	1,508	1,502	-	3	1,514
조사연구 등 용역	268	268	1,553	-	-	1,821	1,780	-	40	268
교육훈련시설유지개선	1,034	1,034	-	-	-	1,040	1,036	-	7	1,010

나. 세목 조정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필요

-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사업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부족분 조정 등을 위해 2023년 예산집행액 15억 200만원의 약 10.58%에 해당하는 1억 5,900만원을 세목 조정하였음.

[2023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명 (목-세목코드)		금 액	조정 후 집행내역		조정 사유
	조정 전	조정 후		집행액	불용액	
2023	관리용역비 (210-15)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0	60	-	시설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조정
	일반수용비 (210-0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7	37	-	시설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조정
	일반수용비 (210-00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	5	-	시설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조정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3	53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조정
	국외교육여비 (220-02)	국내여비 (220-01)	4	4	-	교육업무관련 출장 증가에 따른 조정
	임차료 (210-07)					
	합계		159	159	-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세목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인상, 시설장비 유지비 확보 등의 사유로 2021년 2,200만원, 2022년 2,500만원, 2023년 1억 5,900만원의 세목조정이 있었음.

[2021, 2022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명 (목-세목코드)		금액	조정 후 집행내역		조정 사유
	조정 전	조정 후		집행액	불용액	
2021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7	17	-	교육원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확보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일반수용비 (210-0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	5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직원 관사 축소·조정을 위한 거실 칸막이 설치공사
	합계		22	22	-	
2022	관리용역비 (210-1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2	22	-	전기요금 인상
	관리용역비 (210-15)	일반수용비 (210-01)	3	3	-	추경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부족
	합계		25	25	-	

자료: 행정안전부

□ 예산은 편성목적, 내용 및 비목별 구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세목 조정 등의 예산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세목 조정을 통한 예산집행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동 사업은 집행 당시의 필요에 따라 비목을 서로 조정하여 집행소요액을 수시로 확충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바, 이러한 과도한 세목변경은 집행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초 예산에 실제 소요가 반영되지 못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동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과 시설장비 유지비 비목은 지난 3년간 예산액이 동결·감액되어 연례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액을 충당하고 있는 바, 향후 행정안전부는 예산편성시 동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비목별로 실제 소요와 집행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고, 편성 이후에는 세목 조정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